

부산경남사학회 12월 학술발표회

지역문화와 대중운동의 역사적 재조명

日 時 : 2020. 12. 18 (금) 13시~17시

場 所 : 부산대학교

주최 : 부산경남사학회

주관 : 부산대학교 사학과, 부산경남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12월 학술발표회

主 題 : 지역문화와 대중운동의 역사적 재조명

일시: 2020년 10월 18일 (금) 13:00-17:20

장소: 부산대학교

주최: 부산경남사학회

주관: 부산대학교 사학과, 부산경남사학회

<대회등록> (13:00-13:30)

<개회식> (13:30-13:40)

사회: 김형열 (동의대)

개회사: 부산경남사학회 회장 구산우 (창원대)

축사: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이종봉

<제1부 발표회>(13:40-15:40)

사회: 강정원 (부산대)

1. 이동윤(부산대), 「포항 냉수리 신라비에 보이는 '干支'의 성격 검토」
토론자: 선석열(부경대)
2. 구산우(창원대), 「고려시기 부산·경남 지역 지방제도의 성립과 변동」
토론자: 정은정(부산대)
3. 이소영(창원대), 「고려말 정지의 생애와 군사활동」
토론자: 이은아(창원대)

휴식(15:40-16:00)

<제2부 발표회>(16:00-17:20)

사회: 서영건 (부산대)

4. 배혜정(창원대), 「여성, 바지를 입다: 빅토리아기 합리적 복식개혁운동」
토론자: 김정화(부경대)
5. 정대성(부산대), 「독일의 비상사태법과 의회 외부 저항운동」
토론자: 이용일(대구교대)

폐 회

목 차

1. 「포항 냉수리 신라비」에 보이는 ‘干支’의 성격 검토··이 동 윤	1
1-1. 「「포항 냉수리 신라비」에 보이는 ‘干支’의 성격 검토」 토론문	선 석 열 19
2. 고려시기 부산·경남 지역 지방제도의 성립과 변동구 산 우	22
2-1. 「고려시기 부산·경남 지역 지방제도의 성립과 변동」 토론문	정 은 정 64
3. 고려말 정지의 생애와 군사활동.....이 소 영	67
3-1. 「고려말 정지의 생애와 군사활동」 토론문.....이 은 아	86
4. 여성, 바지를 입다: 빅토리아기 합리주의 복식개혁운동	배 혜 정 88
4-1. 「여성, 바지를 입다: 빅토리아기 합리주의 복식개혁운동」 토론문	김 정 화 105
5. 독일의 비상사태법과 의회 외부 저항운동.....정 대 성	106
5-1. 「독일의 비상사태법과 의회 외부 저항운동」 토론문	이 용 일 127

「포항 냉수리 신라비」에 보이는 '干支'의 성격 검토

이 동 윤 (부산대)

1. 머리말	3. 「포항 냉수리 신라비」의 部 干支와 村 干支의 共存
2. 문헌 속 6세기 이전 신라 '干(支)'의 모습	4. 맺음말

1. 머리말

신라의 관등제는 경위와 외위로 나누어진 二元體制로 운영되었다. 전자는 왕경인의 신분제인 骨品制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6세기 이후 수도 경주 밖의 지방민들에게 수여되어 위계를 구분하도록 하였으나 골품제의 영향 아래 놓여있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곧 지방민들은 신분의 높낮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있었지만 중앙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

또한 주지하다시피 큰 틀에서는 경위와 외위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고 있으며, 금석문이나 문헌 자료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예로 들 수 있는 명칭이 있는데, 바로 '干支'이다. 干支는 기본적으로 신라의 部長(主)들의 수장호로 이해되고 있지만²⁾, 관등이나 아니냐는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연구자들마다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³⁾ 이는

1) 武田幸男, 「新羅의 骨品體制社會」 『歷史學研究』299, 1965, 10쪽. 權惠永, 「新羅 外位制의 成立과 그 機能」 『한국사연구』50-51, 1985. 朱甫暎, 「統一期 新羅 地方統治制度의 整備와 村落構造의 變化」 『대구사학』37, 1989, 39쪽.
2) 全德在, 『新羅六部體制研究』, 일조각, 1996, 44~45쪽. 하일식,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2006, 114쪽. 홍승우, 「浦項中成里新羅碑」를 통해 본 新羅의 部와 지방지배 『한국문화』66, 2014, 222쪽; 「6세기 신라 干群 경위의 구성과 성립과정」 『사학연구』131, 2018, 14쪽.
3) 종래의 연구들은 干支가 관등이 아니라는 견해와 외위 7등급의 하나라는 시각으로서 크게 양분되어 있다. 전자는 전덕재, 「6세기 초반 신라 6부의 성격과 지배구조」 『한국고대사연구』17, 2000, 270쪽;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목간과 문자』5, 2010, 80, 하일식, 위의 책, 114쪽, 홍승우, 위의 논문, 2018, 14쪽 등을 들 수 있고, 후자는 金義滿, 「新羅 金石文의 官等名 檢討」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23, 2002, 57쪽; 『신라의 왕권과 관료제

기본적으로 금석문에 보이는 干支와 『삼국사기』 직관지 외관조에 보이는 외위 7등급 干을⁴⁾ 구별하기 어려움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문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금석문 자료는 「포항 냉수리 신라비」(이하 「냉수리비」)이다. 해당 비문에는 중앙 6部 중 2部の 部長으로 보이는 인물과 村主가 동일하게 ‘干支’로 기록되어 있다.⁵⁾ 이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특히 비문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단순히 중앙의 지배자와 지방의 지배자가 본래 사용하던 수장호로서의 ‘干支’를⁶⁾ 그대로 쓰고 있으며, 이는 유력 2부(탁·사탁부)에 의해 승인·용인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⁷⁾

그러나 6세기 무렵은 신라 사회에서 위계를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여러 수장들이 지위를 잃어 전통적인 명칭을 박탈당하는 시기였다⁸⁾, 이 때 신라 6부 가운데 어느 部의 대표자와 지방 村의 대표자를 이르는 말이 동일하다는 점을 그쳐 중앙의 용인 하에 쓰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⁹⁾ 물론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의 박약함도 지금의 상황에 한몫을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여전히 5~6세기의 신라 관등의 실체를 알려주는 관련 자료에는 훗날 경위 혹은 외위로 성립되는 위계체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이 심하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고¹⁰⁾, 최근에 들어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연구도 제출

』, 경인문화사, 2019, 47~50쪽, 宣石悅,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官等·官職問題」 『한국고대사연구』3, 1990, 203~204쪽, 盧重國, 「迎日冷水里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제2권 신라1·가야편)』,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2, 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일지사, 1993, 이수훈, 「新羅中古期 행정촌·자연촌 문제의 검토 - 城山山城 木簡과 「冷水里碑」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48, 2007, 75쪽 등이 참고된다.

4) 『삼국사기』 권40, 잡지9, 외관. “干視舍知”

5) “本彼 頭腹智干支 斯彼 暮斯智干 … 村主 與支干支” <포항 냉수리 신라비>

6) 金義滿, 앞의 논문, 2002, 57쪽에서 김희만은 干支를 매금왕이나 갈문왕 같은 신라 고유 명칭과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동감한다. 다만 김희만은 干支를 下干支와 동일한 실체로 보고 있지만, 필자는 적어도 냉수리의 村主 干支는 외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7) 權惠永, 앞의 논문, 1985. 金義滿, 「新羅 官等制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新羅金石文의 官等名 檢討」,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3, 2002. 徐毅植, 「6~7세기 新羅 眞骨의 家臣層과 外位制」, 『韓國史研究』 107, 1999. 李鍾旭,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역사학보』 64, 1974. 朱甫暎, 「新羅 中古期 村落構造에 대하여 1」, 『慶北史學』 9, 1986;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1998, 141~144쪽. 河日植, 「6세기 新羅의 地方支配와 外位制」, 『學林』 12:13합집, 1991; 「新羅 官等制의 起源과 性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앞의 책, 2006.

8) 신라 관등의 분화 방향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干郡 관등이 상하로 분화되어 계층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별찬부터 급별찬까지의 경위 干郡과 악간부터 간까지의 외위 干郡이 처음부터 일괄 편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다.

9) 일단은 長이라는 한자어 대신 이전부터 쓰고 있던 일반명사로서 신라어인 干支가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이 같은 의문은 무색해질 수 있고, 이미 村主가 재지세력으로서 중앙과 분리되어 있던 존재라는 전제하에서는 어쩌면 그다지 큰 의문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10)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外位. 文武王十四年, 以六徒眞骨出居於五京九州, 別稱官名. 其位視京位, 嶽干視一吉浪, 述干視沙浪, 高干視級浪, 貴干視大奈麻, 選干【一作撰干】視察麻. 上干視大舍, 干視舍知, 一伐視吉次, 彼日視小鳥, 阿尺視先沮知”

이 기사에서는 분명하게 眞骨이 지방에 파견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외위를 언급하고 있다. 진

된 바 있다.¹¹⁾

따라서 중앙의 수장과 지방의 수장의 실질적 지위를 구분하기 어렵게 하는 명칭(干支)이 왜 존재하였으며, 같은 공간에서 쓰였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강조되어온 신라 신분제의 폐쇄성에 의한다면, 같은 명칭을 가진 部 干支와 村 干支가 공존한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이 요구된다.¹²⁾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라 干(支)의 활동을 알 수 있는 관련 사료들의 검토를 통하여 그 성격을 다시 확인하고, 「냉수리비」에 보이는 干支의 성격과 部 干支와 村 干支의 共存에 대한 이유도 밝혀보고자 한다.

2. 문헌 속 6세기 이전 신라 ‘干(支)’의 모습

신라 금석문인 「냉수리비」에는 신라 6부의 干支와 촌의 干支가 동시에 등장하는 사례가 보인다. 이에 대하여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주목한 바 있다.¹³⁾ 특히 명칭의 기원 문제에서 볼 때 모두 독자적 수장에서 유래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이름만으로는 둘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¹⁴⁾

곧은 분명히 왕경인의 신분이며 경위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을 터인데, 외위와 거론된 점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몇 가지 점을 들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료로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외위제가 진골 출신의 지방장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견해를 참고한다면(徐毅植, 앞의 논문, 1999), 기본적으로 외위의 성립도 경위 체제의 성립 주체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干支’ 호칭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중앙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가정 속에서 본고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11) 나은주, 「신라 문무왕대 外位制의 폐지와 지방민 동향」, 『新羅史學報』 34, 2015.

12) 이에 대하여 전미희는 村主 干支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이며, 그에 부여된 직함이 곧 干支가 아닐까 추측하였다(田美姬, 「新羅 骨品制의 成立과 運營」,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88~89쪽). 하지만 「냉수리비」의 村 干支와 部 干支가 하나의 이름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밝혔음에도, 촌주 干支와 함께 등장하는 2개 部의 干支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또한 그 결론이 「냉수리비」의 干支가 아닌 「신라 봉평리 신라비」에 한정하여 내리고 있다는 점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13) 하일식, 앞의 책, 2006, 231쪽. 홍승우, 앞의 논문, 2018, 30쪽.

하일식은 마립간 시기 이후 지방의 유력자들이 칭한 ‘村干’이나, 냉수리 신라비의 촌주가 가지는 ‘干支’는 그 퇴화된 흔적이고, 본피부나 사피부의 部主가 지닌 ‘干支’역시, 탁부·사탁부 중심의 지배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소외된 部의 대표자에게 인정된 퇴화된 칭호였다고 생각하였다.

홍승우는 기본적으로 6부 干支와 촌의 干支 간의 지위와 위상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두고 있고, 촌 干支의 경우 신라에 복속된 독자세력의 지역을 촌으로 편성한 후에 그 수장을 이르는 말로 생각하였다. 특히 두 종류의 干支가 구분되지 않게 보이는 점은 독자적 위계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여타 4부에 2부의 경위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압박의 의도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추측도 내놓았다.

14) 홍승우, 위의 논문, 30쪽. 특히 홍승우는 干支의 위호가 촌주들에게 적용된 바를 두고, 해당 지역이 신라에 복속된 후 村으로 편제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도 중앙에서 干支 칭호를 용인 받은 것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하일식 역시 냉수리 신라비에서 촌주인 叟支가 칭한 干支는 외

또한 대체적으로 중앙과 촌의 干支는 이전부터 사용했던 유력자의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었을 뿐임을 지적하였다.¹⁵⁾ 또한 이미 王과 같은 명칭들이 2부(탁·사탁부)로부터 사용되는 가운데, 여타 세력과 구별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시간동안 용인된 것으로 보였다. 한편으로는 干의 용례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는데,¹⁶⁾ 이는 사료 상에서 다양한 계층이 干의 호칭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수리비」에서 본피·사피부의 干支가 신라 6부의 동등한 敎示 주체로 기록된 만큼 干支라는 명칭이 상당한 권력을 가진 존재에 해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래의 연구는 敎示의 주체와 그 일의 받들어 집행하는 인물의 공식적인 호칭이 같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다시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부의 한 部長 干支와 村主 干支가 함께 등장하는 「냉수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계미년 9월 25일에 사탁의 至都盧 葛文王, 斯德智 阿干支, 子宿智 居伐干支와 탁의 尔夫智 壹干支, 只心智 거벌干支와 본피의 頭腹智 干支와 사피의 暮斯智 干支 등, 이 일곱 왕들이 함께 논의하여 교를 내리셨다. … 典事人은 사탁의 壹夫智 奈麻, 到盧弗, 須仇休와 탁의 旣須 道使 心訾公과 탁의 沙夫那와 斯利, 사탁의 蘇那支이다. 이 7인이 무릎을 꿇고 보고한 일을 마치고 소를 잡아 널리 알리었기에 이에 기록한다. … 村主인 유지 干支와 須支 壹今智, 이 두 사람이 세상에 일을 마쳤으므로 이에 기록한다.¹⁷⁾

위의 기록은 지도로갈문왕(지증왕)을 비롯한 탁·사탁부 및 본피·사피부의 유력자들이 敎를 내린 일과 이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 기록에서 눈여겨 볼 만한 점은, 본피부와 사피부의 유력자들을 干支라는 호칭으로 표현하고 있고, 더불어 村主 또한 干支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앙의 부장과 지방의 촌주가 동일한 ‘干支’ 칭호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⁸⁾ 이러한 점은 마립간시기

위계가 정비되기 이전에 중앙정부의 묵인하에 지방사회의 유력자가 사용하던 일반적인 칭호였다고 생각하였다(하일식, 위의 책, 223쪽). 이러한 설명들은 아무리 위상이 낮아진 部(본피·사비)라고 하여도, 村과 비교하여 동급을 취급될 수 있었느냐는 물음에 시원스런 대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15) 하일식은 구체적으로 지방인 干支는 사로국의 영향 아래 성장과 분화를 멈춘 상태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것이며, 외위의 원형이 아니라 외위 생성의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하일식, 「포항중성리신라비와 신라 관등제」 『한국고대사연구』56, 2009, 208쪽.
- 16) 徐毅植, 「新羅 ‘上古’期 ‘干’의 編制와 分化」 『역사교육』53, 1993, 79~96쪽. 이부오, 「上古末新羅의 外位 편성과 干支」 『신라사학보』34, 2015. 하일식, 앞의 책, 2006.
- 17) 「포항 냉수리 신라비」(503). “癸未年九月廿五日 沙喙 至都盧葛文王 斯德智 阿干支 子宿智 居伐干支 喙尔夫智壹干支只心智居伐干支 本彼 頭腹智 干支 斯彼 暮斯智 干支 此七王等 共論 敎. … 典事人 沙喙 壹夫智 奈麻 到盧弗 須仇 休 喙 旣須道使 心訾公 喙 沙夫那 斯利 沙喙 蘇那支 此七人 跟踪所白了事 煞牛拔誥 故記. … 村主 與支 支干 支須支 壹今智 此二人世中了事故記”
- 18) 이에 대하여 노태돈은 部主 干支와 部內部(村)의 干支는 칭호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위세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노태돈, 「포항중성리신라비와 外位」 『한국고대사연구』59, 2010, 48쪽). 하지만 신라의 관등이 지속적으로 분화하여 성립해 가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위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있는 가운데 과연 동일한 명칭을 가진 존재를 동급으로 보지 않

탁부와 사탁부 중심의 지배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소외된 部の 대표자에게 인정된 퇴화된 칭호이기 때문으로 파악되어 왔다.¹⁹⁾

하지만 신라는 6부 연합체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희미해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냉수리비」 단계 이후임이 명확한 「울진 봉평리 신라비」(이하 「봉평리비」)에 여전히 '新羅六部'라는 표현이 모즉지 매금왕(법흥왕)의 등장에도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탁부와 사탁부 2부 중심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는 가운데에서도 나머지 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냉수리비」의 본피부의 두복지 干支와 사피부의 모사지 干支는 분명하게 신라 6부의 부장으로 충분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이며, 이는 역시 '七王等' 중 하나로 교를 내린 주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지금까지의 이해와도 통한다.

사탁부의 갈문왕 혹은 탁부의 매금왕과 같은 신라의 王者들의 아래에 귀속되어 있지 않은 독자적인 존재이지만, 점차 정치적인 권한이 대폭 축소된 인물들에게 이전에 사용되어 오던 지배자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케 하였을 따름이다. 다시 말해서, 본피·사피부의 '干支'는 독자성을 띄고 있는 지배자호를 지니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탁·사탁부에 대부분의 권한들을 이양한 상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干支' 호칭은 수여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냉수리비」의 비문을 살피기에 앞서 干(支)이 등장하는 문헌 자료들을 먼저 검토해보고자 한다.

- B. 개벽 이후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의 이름이 없었고 또한 군신(君臣)의 칭호도 없었다. 이때에 我刀干·汝刀干·彼刀干·五刀干·留水干·留天干·神天干·五天干·神鬼干 등 아홉 干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는 酋長으로 백성들을 통솔했으니 모두 100호, 7만 5,000명이었다. 대부분은 산과 들에 스스로 모여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곡식을 먹었다. … 어느 날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구간(九干)들은 모두 여러 관리의 으뜸인데, 그 직위와 명칭이 모두 宵人·野夫들의 칭호이고 고관 직위의 칭호가 아니다. 만약 외국에 전해진다면 반드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마침내 아도(我刀)를 고쳐서 아궁(我躬)이라 하고 … 신귀(神鬼)의 음(音)은 바꾸지 않고 그 훈(訓)을 고쳐 신귀(臣貴)라고 하였다.²⁰⁾
- C. 23년 가을 8월 音汁伐國과 悉直谷國이 강역을 다투다가 왕에게 와서 그에 대한 결정을 요청했다. 왕은 이를 곤란하게 여겨 “金官國의 首露王이 연로하고 지식이 많다.”라고

을 이유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나 5세기 말 6세기 초의 금석문에서 部主 干支의 6부 내 실질적 권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干支’를 대하는 신라의 용법이 질적으로 달라졌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19) 하일식, 앞의 책, 2006, 231쪽. 이러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干支’라는 호칭이 지배자의 의미를 가진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호칭이었다는 이해에서 비롯된다.
- 20)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開闢之後，此地未有邦國之號，亦無君臣之稱。越有我刀干·汝刀干·彼刀干·五刀干·留水干·留天干·神天干·五天干·神鬼干等九干者，是酋長領總百姓九一百戶七萬五千人。多以自都山野鑿井而飲耕田而食。一日上語臣下曰，“九干等俱為庶僚之長，其位與名皆是宵人野夫之號，頓非簪履職位之稱。儻化外傳聞必有嗤笑之耻。”遂改我刀為我躬 … 神鬼之音不易改訓為臣貴”

하고서 그를 불러 물었다. 수로왕이 논의를 일으켜 다투던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했다. 이에 왕은 6부에 명해 함께 모여 수로왕에게 향연을 베풀도록 했다. 5부는 모두 伊滄으로 접대를 주관하게 했으나, 漢祗部만은 지위가 낮은 자로 이를 주관하게 했다. 수로왕은 노하여 奴 耽下里에게 명해 한기부의 우두머리 保齊를 죽이고 돌아갔다. 그 종은 음즙벌의 우두머리 陀鄒干의 집으로 도망해 의탁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그 종을 찾았으나 타추는 보내지 않았다. 왕이 노하여 군사로 음즙벌국을 정벌하니, 그 우두머리와 무리가 스스로 항복했다. 悉直·押督의 두 국왕이 항복해 왔다.²¹⁾

사료B는 가야의 村 지역 대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干'이라는 명칭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九干의 이름이 소인 혹은 농부의 이름이라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미 지적되었듯이 '干'이라는 명칭이 그 당시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붙여졌으리라는 추론의²²⁾ 근거가 된다. 그리고 '干'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 시점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 바뀐 때라고 생각되며, B 사료는 그 '干'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연원을 밝힌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결국 수로왕이라는 우두머리들의 대표자로부터 '干'의 호칭을 쓰도록(干이 이전부터 대표자의 호칭으로 널리 쓰인 것이 분명하다면) 인정받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료C의 기사에서는 6부의 하나인 한기부의 우두머리는 '主'로 표현한 반면에, 소국인 음즙벌국의 대표자는 '干'으로 기록된 사실이 주목된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생각해보게끔 한다.

첫째는, 신라 6부임에도 불구하고 '主'라고 표현된 점과 수로왕이라는 외부세력의 대표자를 대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6부 내에서도 중앙의 이사금 세력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느슨함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음즙벌국은 분쟁의 조정이나 결정을 사로국 이사금에게 부탁할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였으리라는 점이다. 셋째는, '干'과 '主'가 대등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한기부의 우두머리는 한기부+ 主+ 보제이며, 음즙벌국의 우두머리는 음즙벌+ 主+ 타추+ 干인 점도 주목된다. 전자는 干의 칭호를 가지지 않았지만, 후자는 干의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 한기부는 사료C만 보아도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견지하려고 하였는데, 그의 우두머리인 보제가 干과 같은 지배자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음즙벌 이외의 실직·압독의 2개 國의 우두머리는 王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王이라는 호칭을 쓰거나 혹은 인물에 대한 호칭이 없는 것은 사로국 중심 세력(탁·사탁)의 호칭 체계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결국 干의 호칭은

2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파사이사금 23년. “二十三年, 秋八月,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 王難之謂, “金官國首露王, 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議,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 王命六部, 會饗首露王. 五部皆以伊滄爲主, 唯漢祗部以位卑者主之. 首露怒, 命奴耽下里, 殺漢祗部主保齊而歸. 奴逃依音汁伐主陀鄒干家. 王使人索其奴, 陀鄒不送. 王怒, 以兵伐音汁伐國, 其主與衆自降. 悉直·押督二國王來降.”

22) 전덕재, 앞의 논문, 2000, 268쪽. 이부오, 「신라의 非干 外位 편성 과정과 壹金知」 『한국고대사탐구』21, 2015, 21쪽.

사로국 중심 세력의 인사 체계 안에서만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짐작컨대, 기록되는 지배자 명칭은 해당 지역과 사로국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干'과 '主'로 명확히 나뉘었다기보다는, '干'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거나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던 분명한 원인 중에 하나를 신라 중앙권력과의 친소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싶다.²³⁾

이러한 점은 특히 사료B에서 보이듯이 소위 干群 京位가 '~干'으로 만들어졌고, '干'과 같은 지위로 인정될 수 있었음을 알게끔 한다. 왜냐하면 '~+干'의 전체 명칭이 소인이나 농부의 명칭이라면 한꺼번에 고칠 만도 한데, '간'이라는 명칭은 제외된 채로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즉 대표자의 호칭에 '干'이 붙지 않은 채로 쓰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이해와 같이 본래 '干'이었던 존재들을 이사금 혹은 마립간 아래로 편성을 하면서 그대로 '干'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보거나, 본래 저마다 다른 호칭(농부나 소인으로 보이는 고유어)으로 대표를 칭하다가 사로국이나 이후 신라에 의해서 '干'이라는 명칭을 얻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이다.²⁴⁾

이처럼 '干' 호칭은 신라6부의 대표자인 이사금이나 마립간으로부터 수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생각을 조금 더 뒷받침해줄 만한 기록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D. 朴堤上[혹은 毛末이라고 한다]은 始祖赫居世의 후손이고 婆娑尼師今의 5세손이다. 할아버지는 阿道葛文王이고, 아버지는 波珍滄勿品이다. 제상은 敵良州干으로 임금을 섬겼다. … 곧 訥祗王이 즉위하자 말 잘하는 사람을 얻어, 가서 맞이해 올 것을 생각하였다. 水酒村干 伐寶靺 一利村干 仇里酒, 利伊村干 波老 세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 신들은 삼랑주간 제상이 강직하고 용감하며 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하의 근심을 풀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²⁵⁾

23) 전덕재, 위의 논문, 270쪽. 전덕재는 520년을 전후한 무렵 외위가 정비되었고, 그 때 촌주들은 그들의 세력크기나 신라국왕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干支級의 외위 가운데 어느 하나를 수여 받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필자도 동의를 표하며, 외위의 수여 시점은 「냉수리비」 이후 단계임을 확실히 해두고 싶다.

24) 이부오, 위의 논문, 21쪽.

이와 관련하여 이후에 신라의 직제를 가져와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고(『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取雞林職儀置角干·阿叱干·級干之秩…”), 가락국의 거질미왕 왕비가 我躬(我刀의 고친 이름) 아간의 손녀라고 되어 있는 점(『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거질미왕, “王妃阿躬阿干孫女阿志”)이 주목된다. 여기서 아도 干이 아도 阿干로 그 호칭이 변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干’의 등급이 왕으로부터 매겨졌다고 볼 수 있고, ‘干’이라는 명칭은 고유·불변한 것이 아니라 보다 강한 권력으로부터 쉽게 변질될 수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강한 권력이 스스로 거서간·이사금·마립간 등으로 자신의 명칭을 좌지우지한 것과 다르지 않다.

25) 『삼국사기』 권45, 열전5, 박제상. “朴堤上 或云毛末, 始祖赫居世之後, 婆娑尼師今五世孫. 祖阿道葛文王, 父勿品波珍滄. 堤上仕爲良州干. … 及訥祗王即位, 思得辯士, 往迎之. 聞水酒村干 伐寶靺 一利村干仇里酒 利伊村干波老 三人有賢智. … 臣等聞敵良州干堤上, 剛勇而有謀, 可得解殿下之憂”

E. 脫解尼師今 때에 벼슬하여 干이 되었다. 그때,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이 국경의 인근에 끼어 있어서 매우 심하게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거도가 변경의 지방관이 되어, 몰래 병탄할 생각을 품었다. 매년 한 번씩 많은 말들을 張吐의 들판에 모아놓고, 병사들로 하여금 말을 타고 달리면서 재미있게 놀게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馬技라 불렀다. 두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익숙히 보아 왔으므로, 신라의 평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여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에 전쟁을 일으켜 그곳을 갑작스럽게 쳐서 두 나라를 멸망시켰다.²⁶⁾

위의 기록들은 6세기 이전에 干이라는 명칭이 존재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州나 小國과 같은 지역을 통솔하는 수장이나 변경의 지방관이 ‘干’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⁷⁾ 특히 중앙의 王(尼師今)으로부터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지방으로 옮겨간 이들을 이르는 명칭으로서 干이 사용되었던 점이 주목된다.²⁸⁾ 이는 기존 재지 수장층에 대신하여, 신라 6부가 새로운 인물을 그 지역의 수장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²⁹⁾ 특히 사료E에 등장하는 인물 '거도'의 경우에는 중앙권력에 의하여 '干'이 되었음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자료이다. 두 사료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사료D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사료'國' 마립간이 '村' 干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해 얻은 인물이 '州' 干이라는 점이다. 가장 우두머리가 기초 지역의 장에게 보다 큰 지역의 장을 소개받는다라는 점이 다소 의아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사료국의 전통을 비추어본다면 오히려 그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남해차차웅의 후계 이사금 경쟁에 있어서 이가 많은 자가 지혜롭다고 한 점³⁰⁾ 기본적으로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지도자를 결정할 정도였으니, 놀지마립간이 자신의 형제들을 구출하려는 중대한 사항에 수많은 신하들보다도 村 干에게 자문을 구한 것 역시 경험이 많은 이들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같은 점은 아마도 놀지마립간 대에 남당에서 노인들에게 대접을 하였다는 기록과도 무관하지 않다.³¹⁾

26)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도. “仕脫解尼師今爲干。時于尸山國·居柒山國，介居鄰境，頗爲國患。居道爲邊官，潛懷并吞之志。每年一度，集羣馬於張吐之野，使兵士騎之馳走，以爲戲樂。時人稱爲馬叔。兩國人習見之，以爲新羅常事，不以爲怪。於是，起兵馬，擊其不意，以滅二國”

27) 박제상의 경우에서 볼 때 州干은 국읍과 읍락에 대한 통제를 위해 파견된 거점성주로 볼 수 있다(이부오, 앞의 논문, 2015, 195쪽).

28) 田美姬, 앞의 논문, 1998, 89쪽.

29) 홍승우, 앞의 논문, 2014, 226쪽.

30)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1년. “初南解薨，儒理當立，以大輔脫解素有德望，推讓其位，脫解曰，神器大寶，非庸人所堪。吾聞聖智人多齒，試以餅噉之。儒理齒理多，乃與左右奉立之，號尼師今。古傳如此，金大問則云，“尼師今方言也，謂齒理。昔南解將死，謂男儒理·婿脫解曰，吾死後，汝朴·昔二姓，以年長而嗣位焉。其後金姓亦興，三姓以齒長相嗣，故稱尼師今”

31)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놀지마립간 7년. “七年，夏四月，養老於南堂，王親執食，賜穀帛有

그렇다면 사료D에 등장하는 촌의 우두머리들이 중앙의 마립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아무개 촌이 아니라 명확한 촌명까지 밝혀져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을 가능성마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촌의 '干'들이 본래부터 '干'이라는 호칭을 썼다기보다는 중앙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이 아닐까? 특히나 마립간이라든가 이사금과 같은 지역명칭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지배자 호칭과 달리 村干은 村의 干이기 때문에 '촌'이라는 명칭이 생기기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명칭이며, '촌'을 편성한 주체에 의해서 '干'으로 인정되었다고밖에 생각할 여지가 없다.³²⁾

또한 박제상이 삼량주의 干으로 임금을 섬겼다는 기록 역시 干이 신라 중앙(왕실)로부터 수여받은 호칭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게다가 박제상은 奈麻 관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꾸어 말하면 경위를 가진 중앙의 인물이었다. 그의 가계 역시 왕족임을 알려주는 만큼, 박제상은 경주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인물이 삼량주라는 지방을 관할하였다는 점에서 干이 중앙에서 파견된 인물에게 주어진 호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료E는 보다 더 명확하게 '干'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거도의 경우 변경에서 활약한 존재로 보이며, 어떤 촌이나 주의 '干'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는 村과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떤 임무나 특정한 영역을 주관하는 경우에 '干'의 호칭이 사용되었던 사실을 말해준다. 이 역시 한 임무를 부여한 주체, 한 영역을 설정한 주체가 없으면 '干'의 명칭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³³⁾

그런데 거도는 어떠한 지역을 관할하였는지도 분명치 않고, 마치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타 소국을 정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 '干'이었을 가능성은 없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료에서 탈해이사금대에 '干'의 벼슬을 했다는 점, 변경의 지방관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보건대, 거도가 재지세력으로서의 干일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된다.

3. 「포항 냉수리 신라비」의 部 干支와 村 干支의 共存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6세기의 '干'은 기본적으로 자생적인 존재에게 붙여

差”

32) 촌간이 본래 그 지역에서 존재하던 재지세력이라는 전제하에서, 단위 지역 내에서 간지는 6부의 승인을 전제로 존속할 수 있었다고 파악한 견해도 있다(이부오, 「6세기 초중엽 新羅의 干群 外位 재편과 村民 동원」 『신라사학보』36, 2016, 11쪽). 재지세력이건 아니건 간에 6부의 승인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면, 결국 '독자'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3) 이와 관련하여 '村干'이라는 명호 자체가 촌이라는 일정 지역의 干임을 의미하며, 그 명호에는 그들의 지배 영역을 국내 행정구역으로 파악하면서 그들을 그곳의 지배자로 인정한다는 인식이 투영되었고, 따라서 신라 왕이 인정한 '職位'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 견해가 있어 참고가 된다(徐毅植. 앞의 논문, 1993, 89~90쪽).

진 명칭이라기보다는 이사금 혹은 마립간이라는 신라의 대표 지배자로부터 ‘인정’된 자를 부르는 명칭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해로부터 「냉수리비」의 村主 유지가 가진 ‘干支’ 호칭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종래의 연구자들은 ‘干支’ 호칭을 가진 자들이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를 중앙에서 용인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까지도 중앙의 권력이 지방을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 장에서 살펴본 바로는 신라의 중앙 권력이 이미 5세기 말 경에 ‘干’의 명칭을 수여할 정도로 상당한 권위를 확고히 하였음을 알려준다. 앞서 살핀 박제상이나 거도는 영토가 확장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목을 받는 새로운 공간의 관할 인물로 볼 수 있다. 중앙으로부터 새로운 공간을 지배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은 물론이다.

이미 탈해이사금 때에도 중앙의 사람들을 외부로 옮긴 사실이³⁴⁾ 확인되고, 지증왕이 주·군·현을 정하고, 실직주를 설치하여 이사부를 軍主로 삼은 사실³⁵⁾ 등으로 볼 때, 이미 중앙으로부터 많은 자들이 확장된 영토들에 신분이 높은 자들을 이주시켜 그곳을 책임지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공간에 파견되거나 옮겨진 중앙의 인물들은 필시 왕의 측근이나 믿을만한 자들로 보이며, 역시 선왕의 후손으로 기록된 점이³⁶⁾ 확인된다. 다시 말해서, 중앙에서 주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내어 그곳을 관할하는 책임자가 干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금석문에 등장하는 村主인 干支들이 유력 2部가 아닌 4部의 부장인 干支와 같은 명칭을 가지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干支가 수장을 뜻하는 말이며, 신라 6부의 부장들이 모두 干支를 칭해왔으리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³⁷⁾ 그리고 유력 부에서 거서간, 이사금, 마립간 등을 사용하다가 왕의 칭호도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 보아 신라에서는 유력 층이 干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을 따름이며, 다른 부의 우두머리들은 전통적인 수장호를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6세기에 이르러서 수장호 ‘干(支)’는 본래의 의미인 自在적인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피상적인 용어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마립간이라는 유력자로부터 ‘인정’받은 객체적 성격으로서의 ‘干(支)’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自在하지 않으며, 마립간으로부터 他者화된 존재라 하겠다.³⁸⁾

34)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11년. “十一年, 春正月, 以朴氏貴戚, 分理國內州郡, 號爲州主·郡主”

35)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6년. “六年, 春二月, 王親定國內州郡縣. 置悉直州, 以異斯夫爲軍主. 軍主之名始於此.”

이사부는 軍主이며, 변경의 지방관(邊官)으로 기록되어있으나 ‘干’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삼국사기』 권44, 열전4, 이사부). 다만 거도의 경우에 干과 邊官이라는 표현이 함께 보이므로, 이와 동일선상에서 볼 때, 이사부 역시 干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아마도 아슬라주의 州干이 아닐까 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

36) 박제상이 혁거세의 후손이라거나(『삼국사기』 권45, 열전5, 박제상), 이사부가 나물왕(나물마립간)의 4대손이라는 기록(『삼국사기』 권44, 열전4, 이사부)은 파견된 干이나 지방관이 왕의 측근임을 잘 보여준다.

37) 全德在, 『新羅六部體制研究』, 일조각, 1996, 44~45쪽.

38) 이는 외위 관등의 성립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경주 남산신성비」의 기록에 따르면 더 이상

이러한 과정이 권력층에서 거쳐 가는 가운데 신라 6부는 전통적인 연합체의 모습을 잃어가고, 점차 유력 2부가 신라를 이끌어 가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유력 2부 이외의 4부는 중앙으로서의 성격이 탈락되면서, 실제로는 탁부·사탁부와 그 외의 지역은 구심점과 주변부로서의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가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소국 정복과 통합, 영토 확장의 과정 속에서 관리해야할 영역이 늘어나면서, 중앙의 지위를 잃은 중앙과, 새로이 관리의 대상으로 주목받거나 혹은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되는 지방의 위계가 구별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³⁹⁾

또한 기본적으로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자들은 '干'으로 손색이 없는 높은 신분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⁴⁰⁾, 州로 파견된 인물과 村으로 파견된 인물들이⁴¹⁾ 같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干支라는 명칭 자체가 州와 村의 행정상 高下를 떠나서 동일한 점도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모든 村主들이 중앙으로부터 파견되었다고는 보기 힘들고, 기본적으로는 지방사회의 유력자들을 村主로 대우하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村主이면서 干支의 칭호를 사용한 자들은 중앙에 의하여 이주한 왕경인 출신으로 여겨진다.⁴²⁾ 이는 干支가 사실상 경위 관등에도 속하지 않을⁴³⁾ 뿐만 아니라, 앞서 외위제가 성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干'의 명칭이 수여되었던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외위 관등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⁴⁴⁾ 게다가 결정적으로 소위 干支-壹今智 체제로 보이는 세트 구성에 있어서⁴⁵⁾, 일금지라는 명칭도 문헌기록 상 경위와 외위 그 어

村主로 보이는 인물들이 干(支)의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는 干이라는 관등명은 보이는데, 이때의 干은 외위의 干이다. 왜냐하면 같은 비에 撰干이나 上干, 阿尺 등의 외위 명칭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더 이상 중앙에서 특수하게 임무를 띠는 干(支)의 파견이 필요가 없고, 도사와 같이 중앙에서 파견되는 순회 지방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39) 이미 금석문에 등장하는 新羅六部와 같은 명칭은 명목뿐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래도 명목상의 중앙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 종래의 干支를 이해하는 데에 방해 요소였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냉수리비」 단계는 탁부와 사탁부를 제외한 4부는 중앙의 지위를 잃어 가는 중이었다.

40) 거도의 경우 왕족이거나, 유력 가문의 인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干의 '벼슬'을 했다는 점에서 왕경인이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41) 이부오는 村干은 마립간의 통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선택된 세력집단의 대표자로 보고, 마립간이 여러 간 중에 1명의 간지를 승인하여 통치 사안에 대한 협조를 받았을 것으로 보면서 옛 국읍에 근거를 둔 간층의 대표로 보았다(이부오, 앞의 논문, 2015, 194쪽).

42) 田美姬, 앞의 논문, 1998, 89쪽. 姜鍾薰, 「新羅 三姓 族團과 上古期의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45쪽. 한편 전덕재, 앞의 논문, 2000, 271쪽에서는 干支를 部主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위제를 이해할 때, 신라 6부의 干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 오던 村干과 그 吏屬을 진골 출신의 지방장관이 直轄하기 위한 제도이자 장치로 보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徐毅植, 앞의 논문, 1999, 74~75쪽). 특히 지방장관으로 나간 진골(異斯夫)은 그들의 家臣 혹은 側近者를 관할 지역의 주요 거점에 파견하면서 이들에게 독자적으로 官位를 부여할 수 있었고, 그 관위가 곧 외위였다고 보았다. 여기서 서의식은 軍主와 같은 존재가 기존의 村干을 직접 장악한다고 보고 있어 중앙과 지방을 분리시켜 보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냉수리비」의 村主 干支는 그 자체로 왕경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하겠다.

43) 徐毅植, 앞의 논문, 1993, 91쪽.

44) 田美姬, 앞의 논문, 1998, 88쪽.

45) 여호규, 「신라 냉수리비와 봉평리비의 단락구성과 서사구조」 『역사문화연구』69, 15쪽.

는 범주에도 들지 않는 사실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⁴⁶⁾ 결국 「냉수리비」의 干支나 壹今智는 관등이 아니며, 해당 인물은 신라 관등체계에 속할 수 없는 탁·사탁부의 왕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앞서 탈해이사금대의 박씨 귀척들이 외부로 옮겨간 사실, 왕족인 박제상과⁴⁷⁾ 이사부의 예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된다.

이 같이 村主 干支가 중앙에서 파견된 인물이라면, 같은 비에 등장하는 旆須 道使 처럼⁴⁸⁾ 중앙에서 파견되었다고 보이는 명백한 인물이 같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道使가 있는데, 굳이 村主까지 파견할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탐수도사는 진이마촌의 일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위하여 파견된 인물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도사 이외에 村主까지 파견된 존재가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냉수리비」단계의 도사는 평소에는 중앙에 머무르다가 지방에 행정사무가 발생할 때마다 파견된 순회 지방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⁴⁹⁾ 따라서 실질적으로 진이마촌에 중앙의 의지가 관철되려면 그와 마땅한 직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진이마촌의 문제를 「냉수리비」를 세우기 이미 오래 전부터 왕실이 관여를 했다는 점이 ‘前世 二王’이라는 부분에서도 확인되고, 또다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왕실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村主 與支 干支는 자신의 출신 村名이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喙 혹은 沙喙과 같은 부명이 없다는 점은 與支 干支가 중앙에서 파견된 존재로 보는 데에 의문을 품게 한다. 일단 비문에 유일하게 보이는 진이마촌이 유지 간지의 관할 촌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진이마촌이 유지 간지의 출신 촌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름 앞에는 출신지를 밝히는데, 유지 간지는 출신 촌을 밝히고 있지 않다. 나아가 ‘村主 與支 支干 支須支 壹今智 此二人世中了事 故記’ 부분은 내용상 가장 마지막 부

한편 간지-일금지의 체제가 일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국가 통제 하의 통일된 체제 속에서 각 지역이 편제되어 존재한다고 보고, 신라의 영토 내 편입된 지역은 간지-일금지라는 체제에 편입되어 통제된다고 본 견해가 있어 대단히 주목된다(이성호, 「6세기 新羅 外位制의 성립과정」,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9~30쪽).

46) 田美姬, 앞의 논문, 1998, 88쪽 주 23.

47) 宣石悅, 「朴堤上의 出自와 관등 奈麻」 『경대사론』10, 1997, 59~71쪽;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 해안, 2001, 254~264쪽. 선석열은 박제상의 관등을 당시의 상황에 의해 강등과 복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찬-나마-대아찬(추중)의 과정 속에서 파악하였다. 이처럼 박제상과 같이 파견된 ‘干’에게 관등이 있었다는 점은 필자의 논증과 언뜻 배치되어 보이지만, 박제상의나마 관등은 실질적으로 왕족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었다고 본다면 잘못이 아니지 않을까 싶다. 어쩌면 중앙에서는 경위로서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지방의 ‘干’이 된 이상 최고지위자로서 어떠한 관등으로 분식할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48) ‘旆須’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道使의 인명이라는 주장을 따른다(李鍾旭, 「迎日冷水里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政治體制」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115쪽; 李銖勳, 『新羅 中古期 村落支配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57쪽; 앞의 논문, 2007, 73쪽. 曹凡煥, 「迎日冷水里碑를 통하여 본 신라 村과 村主」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7쪽.

49) 이수훈, 앞의 논문, 2007, 75쪽; 「6세기 신라 촌락지배의 변화 - 금석문의 使人과 道使를 중심으로 -」 『역사와 경계』97, 2015, 17쪽. 이수훈은 「냉수리비」를 검토하면서 촌주가 가진 명칭인 干支를 외위로 보았다는 점에서 필자와 견해를 달리한다.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각석된 위치는 上面으로 전면과 후면과 구별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⁵⁰⁾ 즉, 비문의 내용상 실제 판결 내용과 이후 조치사항과는 구별되는 부분임에도 출신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진이마촌의 문제에 대하여 해당 촌주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만약 진이마촌의 촌주가 유지 干支이고, 본래 재지세력이었다면 「냉수리비」와 같은 판결문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前世의 두 왕부터 지도로갈문왕까지 村의 재물과 관련하여 教를 내리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유지 干支는 독자적인 세력으로서의 村主가 아니었다고 보는 편이 옳지 않을까 한다. 중앙에서 지방의 개인 재물에 대한 판결까지 했다는 사실로 볼 때, 최소한 진이마촌 지역만큼은 중앙의 영향력이 강력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⁵¹⁾

위 같은 점들에서 유지 干支가 재지세력이기보다는 중앙에서 파견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⁵²⁾ 그리고 중앙에서 파견되었지만 해당 村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을 관할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신 부명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출신지 이름이 기록된 인물들은 그곳을 본거지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밝힐 필요가 있겠지만, 본거지를 떠나 거주지를 완전히 변경한 인물의 경우에는 이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다.⁵³⁾

또 한편으로 위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는 촌주가 아닌 部 干支 들은 교의 주체로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 볼 때 이들이 여전히 중앙의 유력 세력으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사료A의 일부를 다시 살펴보면 이를 검

50) 추기 여부는 확신할 수 없지만, '故記'로 마무리 지은 점에서 의도적인 구분임이 분명하다는 견해가 참고되었다(윤진석, 「금석문을 통해 본 6세기 신라 법제와 지방민 인식 변화」 『한국고대사연구』93, 2019, 158쪽).

51) 필자에 입장에서 볼 때, 「냉수리비」의 村主가 干支로서 파견된 상주 지방관일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진이마촌은 행정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진이마촌이 당해 지역을 지배하는 거점으로 행정촌의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견해가 참고된다(이수훈, 앞의 논문, 2007, 73~77쪽, 73쪽의 주 32). 다만 이수훈의 견해는 지증왕 6년의 주군제 시행 이전인 「냉수리비」 단계에 상주 지방관이 파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 위에 있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과는 배치된다. 이에 대하여 필자의 경우 모든 제도가 '시작'되었다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상주 지방관의 부분적인 파견이 없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생각이다.

52) 본고에서 제시한 사료D나 사료E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당 기록에 등장하는 干을 지방의 촌주와 같은 존재라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지배와 관련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아닌 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田美姬, 앞의 논문, 1998, 89쪽). 또한 지방 지배와 관련된 임무를 맡고 있던 관리에게 부여된 직함이 아닐까하고 추측하였는데, 필자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

村干을 신라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라 볼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하였지만, 본고의 사료D에 등장하는 利伊村干 波老가 소지마립간 시기의 날이군 사람 波路의 선조로 보고 利伊村干 역시 토착지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전덕재, 앞의 논문, 2000, 270~271쪽).

53) 이 같은 이해가 받아들여진다면 村名+人名+干支(혹은 村名+干+人名)으로 표기된 ①水酒村干 伐寶靺, 一利村干 仇里酒, 利伊村干 波老(『삼국사기』 권45, 열전5, 박계상)과 ②蘇豆古利村 仇鄒列支 干支, 那音支村 卜岳 干支(「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村干은 재지세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토해보겠다.

A'. 계미년 9월 25일에 사탁의 至都盧 葛文王, 斯德智 阿干支, 子宿智 居伐干支와 탁의 介夫智 壹干支, 只心智 거벌干支와 본피의 頭腹智 干支와 사피의 暮斯智 干支 등, 이 일곱 왕들이 함께 논의하여 교를 내리셨다.

위의 자료를 보면, 먼저 사탁부에는 갈문왕 1명, 아간지 1명, 거벌간지 1명이 등장하고, 탁부에 일간지 1명, 거벌간지 1명이 등장한다.⁵⁴⁾ 다음으로 본피부의 干支 1명과 사피부 干支 1명이 등장한다.⁵⁵⁾ 정리를 하자면 본피부와 사피부의 수장이 사탁부와 탁부의 수장 휘하인들보다 나중에 등장하여 부의 우열관계를 기준으로 인물이 나열되어 있음을⁵⁶⁾ 알 수 있다.⁵⁷⁾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비문에 등장하는 순서에 따라 部の 지위 고하를 판단하고, 관등의 고하를 판단하고 있으며, 본피부나 사피부의 수장은 이미 예전과 같은 지위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래의 지위는 잃었지만 명목상의 지위가 인정되어 교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공식적인 지위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명예직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들이 더 이상 중앙으로부터 중앙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기본적으로 자기 部の 군사권이나 수취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당시의 실질적인 중앙이라 할 수 있는 2부(탁부, 사탁부)로 그러한 권한

54) 本波部와 岑喙部の 干支는 신라 경위의 제1관등인 伊伐滄으로부터 제4관등인 波珍滄에 이르는 지위9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尹善泰, 「新羅 骨品制의 構造와 基盤」 『한국사론』30, 1993, 33쪽, 박남수, 「『浦項 中城里新羅碑』에 나타난 新羅 六部和 官等制」 『사학연구』100, 2010, 467쪽). 또, 干支를 왕경 여타 4부 諸干을 일반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고 6부체제하에 관습화된 예우거나 실제로 참석한 干支의 정치사회적 지위 때문이라고 보거나(서의식, 「新羅上代 干層의 形成.分化와 重位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35~36쪽), 그들의 실질적인 지위가 격상된 것이 아니라 기존 部主로서의 전통적인 지위를 명목상으로 인정받을 뿐, 경위제를 확립시켜가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로부터는 소외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하일식, 2006, 앞의 책, 2006, 116쪽. 노태돈, 앞의 논문, 2010 51쪽). 이에 비주류 4부가 本波部를 필두로 하여 점차 주류 2부의 경위체제에 편입되어 가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고(이용현, 「중성리비의 기초적 검토 -냉수리비·봉평비와의 비교적 시점-」 『고고학지』17, 2011, 430쪽), 이들 여타 4부의 관등 호칭이 외위로 轉移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武田幸男, 「新羅六部和 그 展開」, 『碧史李佑成教授 停年退職紀念論叢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上, 1990, 118쪽).

55) 「냉수리비」의 干支를 외위의 干과 동일하게 파악하여, 탁·사탁부에는 경위를 주고 이외의 부에는 외위를 수여했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李仁哲, 앞의 책, 1993). 필자는 「干支」의 칭호가 외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수여」되었다는 점에 한해서는 동의한다.

56) 宣石悅, 앞의 논문, 1990, 193쪽.

57) 이들이 전부 7왕으로서 共論 교시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들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① 일곱 왕(盧重國, 앞의 논문, 1992) ② 일곱 갈문왕과 기타 등등(김태식, 「냉수리비로 구축한 신라 'Seven kings론'-차질왕등, 그 괴이한 해석을 구축하며-」 『신라사학보』 창간호, 2004) ③ 일곱 님(文暉鉉,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部の 性格과 政治運營問題」 『한국고대사연구』3, 1990, 노중국, 「금석문·목간 자료를 활용한 한국고대사 연구 과제와 몇 가지 해석」 『한국고대사연구』57, 2010. 윤진석, 「한국고대 「부체제(部體制)」의 기초적 이해와 과제」 『계명사학』21, 2011; 「「포항냉수리신라비」의 「七王等」 재론」 『한국고대사탐구』31, 2019)

들이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⁵⁸⁾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명예직'으로서 어떠한 부장으로서의 전통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재판에 있어서 원로로서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⁵⁹⁾

다시 말해서 部의 '干支'는 名譽號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에 이르러서의 이러한 명예호는 자신들이 스스로 존재하여 자칭하던 표현이 아니라, 초월적 권력자로 부상하고 있는 보다 강한 존재로부터 '인정'된 것이라 하겠다. 피상적으로는 이전의 지배자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 지배자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전통적인 지배자보다 더 강한 지배자로부터 호칭을 수여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인정'이나 '용인'과 같은 행위에는 반드시 그 주체와 객체가 함께 존재해야한다. 자기 스스로 용인한다거나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7명의 왕 중에 엄밀히 말해서 왕이라고 부를만한 사람이 갈문왕 한 명뿐이라는 점에서 유효하리라 생각된다. 지도로갈문왕은 지증왕과 동일 인물이고, 나머지 관등을 가진 휘하의 사람들은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곱 명의 왕과 같이 표현된 점은 오히려 유력부의 주장보다 지위가 낮은 인물에 비해 순서상 뒤로 밀려나버린 본피부와 사피부의 干支들을 대우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표현으로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⁶⁰⁾

결국 「냉수리비」에서 보이는 部의 干支와 村의 干支가 공존하였던 사실에서 두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력부(탁·사탁부) 이외 部의 권위가 떨어졌음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村主가 외위가 아닌 干支 칭호를 가진 이상 토착인이 아닌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존재라는 점이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5, 6세기에 존재한 干支의 성격에 대하여 되짚어보았다. 이에 대하여 위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58) 박남수도 지방 수장급들은 탁부와 사탁에 귀속되면서 저들 본래 근거지에 대한 권리를 食品의 형태로 보장받고, 第宅과 田莊을 받았을 것으로 파악하였다(박남수, 앞의 논문, 2010. 465쪽).

59) 『삼국사기』 유리 이사금 즉위조에 보이는 이사금의 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가 많은 연장자가 수장으로서 대우를 받았다는 점도 이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사람으로서의 연장자가 수장의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전통적인 신라 6부 연합체의 구성원으로서 유서 깊은 부의 어른으로서 대우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60) 이를 연장자로서 대우를 해주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본피·사피부 干支는 놀지마립간기 남당에 모인 노인들이나, 3명의 村干과 동급의 존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干支의 지위를 굳이 설명하자면 이제 막 거서간시기보다 강한 존재로 거듭났던 당시의 초기 이사금 지위 정도라 하겠다. 이에 더하여 일금지가 이사금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고, 간지가 同氣에게 수여한 명칭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크게 참고가 된다(전덕재,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목간과문자』5, 2010, 87~88쪽). 전덕재의 견해를 참고하면, 결국 간지-일금지는 서로 同氣 간이며, 이사금의 지위를 가진 존재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문헌 사료에 보이는 干은 왕이 수여한 벼슬로까지 보이며, 중앙과 대비되는 지방 중에서도 특히 변경 지방이나 관심이 필요한 지역을 관할하는 인물이 가진 명칭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해와 같이 干은 기본적으로 수장호임은 분명하지만, 전통적으로 한 지역의 수장을 일컫는 말이면서도 신라의 왕이 자신의 휘하인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냉수리비」 단계는 이미 탁부와 사탁부의 2부가 신라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으며, 여타 4부는 그 부장이 干支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존속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촌주의 干支를 외위로 보거나, 전통적인 수장호에 불과하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여전히 부의 長과 촌주가 같은 干支의 명칭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재검토해본 결과 「냉수리비」의 村主가 가진 干支라는 명칭도 역시 중앙에서 파견된 인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다. 干支는 다른 부장도 역시 쓰고 있는 명칭으로 외위로 보기 어렵고, 이미 밝혔듯이 왕의 휘하인으로서 충분히 干이라는 일종의 벼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냉수리비」를 통하여 진이마 촌이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만, 신라의 중앙세력이 6세기 초에 이미 지방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를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포항 냉수리 신라비」

宣石悅,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 혜안, 2001.

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일지사, 1993.

全德在, 『新羅六部體制研究』, 일조각, 1996.

朱甫墩,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1998.

하일식,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2006.

姜鍾薰, 「新羅 三姓 族團과 上古期의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權惠永, 「新羅 外位制의 成立과 그 機能」 『한국사연구』50·51, 1985.

金杜珍, 「三韓 別邑社會의 蘇塗信仰」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일조각, 1985.

김태식, 「냉수리비로 구축한 신라 ‘Seven kings론’- 차칠왕등, 그 괴이한 해석을 구축하며 -」 『신라사학보』 창간호, 2004.

金義滿, 「新羅 官等制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_____, 「新羅 金石文의 官等名 檢討」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23, 2002.

_____,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과 新羅의 外位制」, 『慶州史學』 26, 2007.

나은주, 「신라 문무왕대 外位制의 폐지와 지방민 동향」 『新羅史學報』 34, 2015.

盧重國, 「迎日 冷水里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제2권 신라1·가야 편)』,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2.

_____, 「금석문·목간 자료를 활용한 한국고대사 연구 과제와 몇 가지 해석」 『한국고대사연구』57, 2010.

노태돈, 「포항중성리신라비와 外位」 『한국고대사연구』59, 2010.

文暉鉉,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部의 性格과 政治運營問題」 『한국고대사연구』3, 1990.

박남수, 「「浦項 中城里新羅碑」에 나타난 新羅 六部와 官等制」 『사학연구』100, 2010.

徐毅植, 「新羅 ‘上古’期 ‘干’의 編制와 分化」 『역사교육』53, 1993.

_____, 「新羅上代 干層의 形成.分化和 重位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_____, 「6~7세기 新羅 眞骨의 家臣層과 外位制」, 『韓國史研究』 107, 1999.

宣石悅, 「朴堤上의 出自와 관등 奈麻」 『경대사론』10, 1997.

尹善泰, 「新羅 骨品制의 構造와 基盤」 『한국사론』30, 1993.

윤진석, 「한국고대 ‘부체제(部體制)’의 기초적 이해와 과제」 『계명사학』21, 2011.

- _____, 「「포항냉수리신라비」의 ‘七王等’ 재론」 『한국고대사탐구』31, 2019.
- 李基東, 「新羅 上古의 戰爭과 遊戱-‘風流’의 源流를 찾아서」 『新羅社會史研究』, 일조각, 1997.
- 이부오, 「上古末 新羅의 外位 편성과 干支」 『신라사학보』34, 2015.
- _____, 「신라의 非干 外位 편성 과정과 壹金知」 『한국고대사탐구』21, 2015.
- _____, 「6세기 초중엽 新羅의 干群 外位 재편과 村民 동원」 『신라사학보』36, 2016.
- 이성호, 「6세기 新羅 外位制의 성립과정」,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수훈, 「新羅 中古期 행정촌 · 자연촌 문제의 검토 - 城山山城 木簡과 「冷水里碑」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48, 2007.
- _____, 「6세기 신라 촌락지배의 변화 - 금석문의 使人과 道使를 중심으로 -」 『역사와 경계』97, 2015.
- 이용현, 「중성리비의 기초적 검토 - 냉수리비·봉평비와의 비교적 시점-」 『고고학지』 17, 2011.
- 李鍾旭,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역사학보』 64, 1974.
- 田美姬, 「新羅 骨品制의 成立과 運營」,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전덕재, 「6세기 초반 신라 6부의 성격과 지배구조」 『한국고대사연구』17, 2000.
- _____,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목간과문자』5, 2010.
- 朱甫暉, 「新羅 中古期 村落構造에 대하여 1」, 『慶北史學』 9, 1986.
- _____, 「統一期 新羅 地方統治制度의 整備와 村落構造의 變化」 『대구사학』37, 1989.
- 河日植, 「6세기 新羅의 地方支配와 外位制」, 『學林』 12·13합집, 1991
- _____, 「新羅 官等制의 起源과 性格」, 延世大 博士學位論文, 1998.
- _____, 「포항중성리신라비와 신라 관등제」 『한국고대사연구』56, 2009.
- 홍승우, 「浦項中成里新羅碑」를 통해 본 新羅의 部와 지방지배」 『한국문화』66, 2014.
- _____, 「6세기 신라 干群 경위의 구성과 성립과정」 『사학연구』131, 2018.
- _____, 「新羅 金石文의 官等名 檢討」,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3, 2002.
- 武田幸男, 「新羅の骨品體制社會」 『歴史學研究』299, 1965.
- _____, 「新羅六部와 그 展開」, 『碧史李佑成教授 停年退職紀念論叢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上, 1990.

「「포항 냉수리 신라비」에 보이는 '干支'의 성격 검토」 토론문

선 석 열 (부경대)

본 발표에서 발표자는 ‘간지(干支)’의 성격에 대해, 첫째 유력부(탁·사탁부) 이외 部の 권위가 떨어졌음이 명백하며, 둘째 村主가 외위가 아닌 干支 칭호를 가진 이상 토착인이 아닌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존 학회의 여러 견해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고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국가 발달의 최종 단계가 지방의 군현제 시행과 지방관의 파견이라고 보는 통설과도 전혀 다른 시각이다. 토론자는 이에 대한 의문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1. 근거 사료에 대한 신빙성의 부분이다. 기존 연구자들의 삼국사기 초기기록 긍정론에서 야기되는 문제이다.

(1) 삼국사기 거도열전에 “脫解尼師今 때에 벼슬하여 干이 되었다. 그때,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이 국경의 인근에 끼어 있어서 매우 심하게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①거도가 변경의 지방관이 되어, 몰래 병탄할 생각을 품었다. *매년 한 번씩 많은 말들을 張吐의 들판에 모아놓고, 병사들로 하여금 말을 타고 달리면서 재미있게 놀게 하였다. ②당시 사람들은 馬技라 불렀다. 두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익숙히 보아 왔으므로, 신라의 평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여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에 전쟁을 일으켜 그곳을 갑작스럽게 쳐서 두 나라를 멸망시켰다.”

(2) 이와 관련된 이사부열전에 “지도로왕(智度路王) 때 ①연해 변경 지역의 지방관(干)이 되었다. ②거도(居道)의 임기응변의 꾀를 답습하여 마희(馬戲)로써 가야국(加耶國)을 미혹시켜 그것을 빼앗았다”

두 열전의 ①②는 같은 표현의 내용이다.

탈해이사금대(57~80)에 이러한 기마전술로써 전쟁을 수행하였는가이다. 3세기 전반의 상황을 전하는 <위서동이전> 한전에도 ‘소나 말을 탈줄 모른다’고 한 점, 일반적으로 고고학에서 기마전술은 4세기 이후부터 가능한 것으로서 6세기 전반 이사부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한 전술이다. 위의 두 기록은 이사부 때의 기마전술을 마치 거도 때에 구사한 것처럼 도치시킨 것에 불과하다.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각주 34)에서 탈해이사금 11년. “十一年, 春正月, 以朴氏

貴戚, 分理國內州郡, 號爲州主·郡主”에 대해 “중앙의 사람들을 외부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고, 지증왕이 주·군·현을 정하고, 실직주를 설치하여 이사부를 軍主로 삼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이미 중앙으로부터 많은 자들이 확장된 영토들에 신분이 높은 자들을 이주시켜 그곳을 책임지게 했음을 알 수 있다.”라 하였다. 1세기와 6세기에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할 수 있을까? 발표문의 내용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사금시기나 6세기 초까지의 기록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탈해왕 때에는 사로국이라는 소국이 다른 소국을 정복하여 ‘國內州郡’이라 할 만한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조치일까? 이 기록은 마치 지증왕 6년의 주군제 시행 때에나 가능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2. 거도의 ‘干’에 대한 것만 강조하고 있으나, 이사금시기의 실상에 가까운 것은 파사이사금 23년조의 소국쟁강기사에 보이는 ‘이찬[실제로는 一尺]과 位卑者’라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部의 干支[部主]와 그 예하의 조직으로 해석하는 편이 보다 그 시대의 실상에 가까울 것이 아닐까? 신라는 마립간 즉 干支 중의 干支를 뜻하는 마립간시기에 干支가 위계로 분화되었는데, 그 대상은 탁부와 사탁부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권력구조는 3세기 고구려의 경우와 같이 왕의 가신[상가 대로 패자 등등]과 제가의 가신[사자 조의 선인]의 구조가 참조될 것이다.

3. 냉수리비에는 탁부 사탁부 외의 4부의 경우 干支가 1명이 등장하였다. 반면에, 중성리비에는 간지가 2명이 등장하였던 이유와 그 차이는 무엇이며, 아울러 干支 외에 壹伐이 존재한 것은 새로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냉수리비나 봉평비에는 지방의 경우 촌주 干支 외에 일금지 등이 존재한 것과 유사하다.

4. 村의 干支의 경우이다. 여기서 村은 신라에 복속 편입되기 이전의 國에 해당된다. 干支는 소국의 왕의 명칭이었던 臣智[훈기] 牟岐와 같은 명칭이다. 또 1번의 두 열전에서 ‘干’에 대한 기록은 실재와 다르다. 이사부가 지방관 실직주 군주로 되었는데, 울진봉평비에도 干급이 아니라 실지군주는 관동이 奈麻에 불과하다. <일본서기> 계체기에도 이사부의 관동이 내마로 되어 있던 사실도 참조된다. 과연 거도가 ‘干’이었을까도 의심스럽다. 파사이사금 23년조의 경우가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읍읍벌주 타추의 경우 ‘干’이라 한 것은 그 자체가 소국의 왕임을 나타내는 것이지 신라가 수여한 것은 아니다.

5. 발표자는 村主가 외위가 아닌 干支 칭호를 가진 이상 토착인이 아닌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신라 금석문의 인명표기의 원칙에 의하면, 왕경인과 지방민은 그 출신을 엄격히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함은 신분제인 골품제로서도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 왕경인 관직道使+ 출신지喙[部]+ 이름念牟智[중성리비]
출신지喙[部]+ 관직耽須道使+ 이름心誓公[냉수리비]*관등없음
출신지喙[部]+ 관직居伐牟羅道使+ 이름卒次+ 관등小舍帝智[봉평비]
- 지방민 출신지奈音支村+ 이름卜岳+ 관명干支[중성리비]
출신지珍而麻村+ 이름節居利[냉수리비]
출신지 葛尸條村+ 관직使人+ 이름奈尔利+ 관등阿尺[봉평비]

고려시기 부산·경남 지역 지방제도의 성립과 변동

구 산 우 (창원대)

1. 머리말	4. 부산·경남 지역의 部曲制 편제와 분포
2. 부산·경남 지역의 郡縣 편제	5. 맺음말
3. 부산·경남 지역 군현의 변동	

1. 머리말

우리 역사에서 慶尙道라는 명칭이 광역 지방단위의 공식 지명으로 확립된 시기는 고려 忠肅王 원년(1314)이다.¹⁾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명칭인 嶺南道, 嶺東道, 慶尙 晉州道, 慶尙州道 등이 경상도 일대를 포괄하는 광역 지방단위의 지명으로 사용되었으나, 경상도라는 명칭은 이때 처음 제정되었다. 따라서 2014년이 경상도 탄생 700주년 이 되는 해였다.

경상도의 관할 범위는 오늘날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오늘날 시군 등의 기초 자치단체는 부산 지역에 16개, 경남 지역에 17개가 있다. 이를 합하면 33개가 된다. 고려시기 부산·경남에는 郡縣 이상의 지방행정단위가 44개가 있었다. 오늘날과 비교하면 고려시기 부산·경남에는 군현 이상의 지방행정단위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고려시기 부산·경남 지역의 지방제도의 성립과 변동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지금까지의 고려시기 지방제도에 관한 학계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특정 시기에 전국적 차원으로 이루어진 지방제도 개편을 다룬 것과 고려 전시기에 처서 전개된 개별 지방단위의 개편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²⁾ 따라서 오늘날

1) 『高麗史』 권57, 地理2 慶尙道.

2) 고려시기 지방제도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蔡雄錫, 「군현제와 향촌사회」 『한국역사입문②』, 풀빛, 1995 ; 尹京鎭, 「연구동향과 문제제기」 『高麗 郡縣制의 構造와 運營』,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0; 박종기, 「군현제 연구론」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具山祐, 「연구현황」 『高麗前期 鄉村支配體制 研究』, 혜안, 2003 ; 박종진, 「고려시기 지방제도 연구 성과 정리」 『고려시기 지방제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참조.

의 광역 지방행정단위에 해당하는 특정의

광역권역에서 전개되는 지방제도의 문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은 일차적으로 이런 학계의 연구 경향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감안하여 작성하였다.

광역 지방행정단위에 포함되는 군현 등의 개별 지방행정단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총합적으로 정리하면, 개별 지방제도 단위의 변화 양상에서 잘 파악하기 어려운 광역 단위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광역 지방행정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지방행정단위의 변화 양상에 대한 검토는 그 나름의 연구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지방행정단위의 대상은 고려시기 郡縣 이상의 지방단위와 고려시기 지방제도의 가장 큰 특성을 이루는 부분이자 동시에 고려 사회에서 필요한 특정 생산물의 생산 체계와 수취 과정의 한 단면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특수행정구역인 部曲制 지역이다.

고려시기 경남 지역의 郡縣 편제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있어서 참조된다.³⁾ 이 글은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술된다. 먼저 고려시기 부산·경남 지역의 郡縣 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고려시기 界首官-主縣-屬縣의 3층 구조로 짜여진 지방제도의 기본 틀과 이 틀에 맞추어 구조화된 부산·경남 지역의 군현 편제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어서 3층 구조로 형성된 부산·경남 지역의 각급 지방단위가 고려초부터 고려말까지 어떤 변동을 겪었는지를 검토한다. 끝으로 부산·경남 지역의 部曲制 지역의 편제와 분포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高麗史』 地理志에 나타난 고려시기 부산·경남 지역 지방제도의 성립과 변동을 검토하였다. 종전에 『고려사』 지리지의 사료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고려시기 지방제도의 연구에 크게 활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려사』 지리지는 기본 사료로서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많이 활용되는 추세이다.⁴⁾ 필자도 『고려사』 지리지의 가치를 높게 인정하는 입장에 서서 지금까지 지방제도 연구를 진행하였다.⁵⁾ 이 글도 그 연장선상에서 『고려사』 지리지의 내용을 통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고려시기 부산·경남 지역의 몇몇 지방단위에서는 치소성이 발굴되어 지방단위 치소성의 존재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동반 출토된 유물과 유적 및 기와 명문을 통해 지방단위의 존재 형태와 특히 치소성 건설에 참여한 주민들의 동원 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것도 아울러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고려시기 부산·경남이라는 광역 지방단위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개별 지방단위의 변동 양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김광철, 「고려시대 경남지역의 군현 편제와 지역문화」 『한국중세사연구』 34, 2012.

4) 조복동, 「『고려사』 지리지의 편찬시기」 『역사과학』 1987년 1호 ; 조복동, 「『고려사』 지리지 연구」 『역사과학논문집』 13, 1988 ; 배중도, 「『고려사』 지리지의 일고찰」 『역사와 현실』 6, 1991 ; 윤경진, 『高麗史 地理志의 分析과 補正』, 여유당, 2012 ; 박종기, 『고려사 지리지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5) 具山祐, 앞의 책.

2. 부산·경남 지역의 郡縣 편제

『高麗史』 地理志의 서술 방식은 수도인 王京開城府를 첫머리에 두고, 그 다음에 5道兩界를 배치하였다. 5도양계의 서술 순서는 楊廣道, 慶尙道, 全羅道, 交州道, 西海道, 東界, 北界이다. 왕경개성부와 5도양계 아래에는 각각에 소속된 界首官과 계수관의 직접·간접 지배를 받는 여러 郡縣들을 하나의 독자적 영역으로 편성하여 서술하였다.

왕경개성부와 5도양계를 광역 지방단위라고 한다면, 일반 군현은 기초 지방단위인 셈인데, 그 중간에 있는 계수관은 중간 지방단위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계수관은 기초 지방단위인 여러 군현과 광역 지방단위를 중간에서 연결하면서 특정 행정 업무를 관리, 매개하는 중간 기능을 수행하였다.⁶⁾

『高麗史』 地理志에서는 광역 지방단위와 계수관의 지배를 받는 기초 지방단위를 領郡, 領縣과 屬縣의 두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영군, 영현은 계수관의 지배와 관리를 받으나 독자적인 지방관이 파견되었으며,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계수관이나 영군, 영현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다. 영군, 영현은 그 아래에 屬郡, 屬縣을 지배하고 있다. 계수관과 영군, 영현은 모두 지방관이 파견되었고, 그 아래에 속군, 속현을 거느린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主縣으로서의 공통 속성을 가진다. 이때의 주현은 오늘날 연구자들이 광의의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한 용어이다. 속현도 역시 오늘날 연구자들이 광의의 의미로 정의한 용어로서 여기에는 屬郡이 포함된다. 영군, 영현의 범주에는 領府도 포함되며, 영부, 영군, 영현, 속군, 속현 등은 『고려사』 지리지에 사용된 당시의 용어이다.

고려시기 부산·경남 지역의 지방단위의 편제를 『高麗史』 地理志를 토대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고려시대 부산·경남 지역의 지방단위 편제(『高麗史』 地理志)

6) 고려시기 계수관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서는 具山祐, 「고려시기 계수관의 지방행정 기능과 위상」 『역사와 현실』 43, 2002 ; 윤경진, 「고려전기 界首官의 운영체계와 기능」 『東方學志』 126,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 박종진, 「계수관의 기능과 위상」, 앞의 책 참조.

界首官	領郡·領縣	屬郡·屬縣	현재 지명
晋州牧 [경상남도 진주시]		江城郡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河東郡	경상남도 하동군
		泗州	경상남도 사천시
		岳陽縣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永善縣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鎭海縣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昆明縣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班城縣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宜寧縣	경상남도 의령군
晋州牧	陝州 [경상남도 합천군]	嘉樹縣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三岐縣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山陰縣	경상남도 산청군
		丹溪縣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加祚縣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感陰縣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利安縣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新繁縣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冶爐縣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草溪縣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居昌縣	경상남도 거창군
		含陽縣	경상남도 함양군
	固城縣		경상남도 고성군
	南海縣 [경상남도 남해군]	蘭浦縣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平山縣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巨濟縣 [경상남도 거제시]	鵝洲縣	경상남도 거제시
		松邊縣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溟珍縣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東京 [경상북도 경주시]	蔚州 [울산광역시]	東萊縣	부산광역시 동래군
		嶽陽縣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金州 [경상남도 김해시]	義安郡	경상남도 창원시
		咸安郡	경상남도 함안군
		漆園縣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熊神縣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合浦縣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 회원구
	梁州 [경상남도 양산시]	東平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機張縣	부산광역시 기장군
	密城郡 [경상남도 밀양시]	昌寧郡	경상남도 창녕군
		淸道郡	경상북도 청도군
		玄豊縣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桂城縣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靈山縣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豊角縣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1(2)	7(8)	37(41)	

* []은 현재 지명임

*현재 지명의 합계 중 () 밖의 숫자가 부산·경남 지역 군현의 총계임.

<표 1>에서 보듯이, 고려시기 부산·경남 지역은 5도양계 중의 慶尙道에 속하고, 오늘날 부산·경남 지역의 지방단위는 晋州牧과 東京 예하에 편제되어 있었다. 『高麗史』 地理志에 나타난 지방단위의 편성은 顯宗 9년에 시행된 지방제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진주목에 직접 소속된 9개의 속군과 속현, 그리고 진주목의 관할을 받는 4개의 領郡과 여기에 소속된 속군 속현은 모두 현재의 부산·경남 지역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다. 동경은 오늘날의 경주시로서 경북에 속하지만, 동경 아래의 領郡인 蔚州, 金州, 梁州, 密城郡과 여기에 소속된 여러 屬郡과 屬縣 중에는 오늘날 경남 지역에 속하는 곳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기초 자치단체는 부산 지역이 16개, 경남 지역의 17개로써 이를 합하면 33개이다. <표 1>에는 界首官이 2곳, 領郡·領縣이 8곳, 屬郡·屬縣이 41곳이 나타나는데, 이들을 모두 합하면 51개의 지방단위이다. <표 1>에 나타나는 51개의 지방단위 중에

서 현재 부산·경남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계수관 1곳(東京), 영군 1곳(蔚州), 속현 4곳(鹹陽縣, 淸道郡, 玄豐縣, 豐角縣)의 6곳이다. 따라서 고려시대 부산·경남 지역에는 縣 이상의 지방단위가 45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 비하면 고려시대에는 현 이상의 지방행정 단위가 매우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계수관 아래에 있는 지방단위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高麗史』 권57, 地理2 晋州牧조에 따르면, 晋州牧은 2개의 속군과 7개의 속현을 지배하면서, 1개의 領知事郡, 3개의 縣令官을 총괄 관리하는 界首官으로 나타난다. 진주목이 지배, 관장하는 군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屬郡 2개 : 江城郡 河東郡
- ② 屬縣 7개 : 泗州 岳陽縣 永善縣 鎭海縣 昆明縣 班城縣 宜寧縣
- ③ 領知事郡 1개 : 陝州
- ④ 縣令官 3개 : 固城縣 南海縣 巨濟縣

여기서 ① 항목에 있는 2개의 屬郡과 ② 항목의 7개 屬縣은 모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界首官인 진주목에 직속되어 지배를 받는 곳이다. 이들은 모두 이른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된 속현에 포함된다. ③과 ④ 항목에 속한 領知事郡과 縣令官은 각각 領郡, 領縣으로서, 행정적 사안에 따라 계수관인 진주목의 통제와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수관인 진주목처럼 각자 별도의 독자 지방관이 파견되어 그 아래의 속군과 속현을 지배하였다. 이들은 모두 이른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된 주현에 속한다. <표 1>에서 경남 지역의 지방단위인 陝州 固城縣 南海縣 巨濟縣은 모두 晋州牧에 소속된 영군, 영현이었다.

陝州는 嘉樹縣부터 淸陽縣까지의 12개 속현을 거느렸으며, 固城縣은 지배하는 속현이 없고, 南海縣은 蘭浦縣과 平山縣의 2개 속현, 巨濟縣은 鵝洲縣 松邊縣 溟珍縣의 3개 속현을 지배하였다. 東京의 영군, 영현인 蔚州, 金州, 梁州, 密城郡도 각각 복수의 속군, 속현을 거느리고 있다.

이처럼 고려시기의 지방제도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主縣 지역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屬縣 지역으로 대별된다. 주현은 여기에 파견되는 지방관의 격에 따라 界首官과 일반 主縣으로 다시 나뉘며, 일반 주현 속에는 지방단위의 명칭에 따라 牧, 府, 州, 郡, 縣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표 1>에 나타나는 영군은 일반 주현의 하나이며, 일반 주현 속에는 領郡이 아닌 領府과 領縣도 있다. 예컨대 <표 1>에서 晋州牧에 소속된 일반 주현의 하나인 陝州는 知事郡으로서 領郡이며, 固城縣 南海縣 巨濟縣은 모두 領縣이다.

3. 부산·경남 지역 군현의 변동

고려시대 부산·경남 지역의 45개 군현의 변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에 있는 고려시대 부산·경남 지역의 군현은 모두 『高麗史』 권57, 地理2 慶尙道の 해당 군현조에 수록되어 있으며, 고려시대의 변화에 대한 서술은 모두 여기에 의거하여 서술하되 전거는 모두 생략한다. 서술의 대상 시기는 기본적으로 현종 9년 이후로 한정하기로 한다.

지방단위의 명칭은 시기별 변화가 있으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표 1>에서 보듯이, 『高麗史』 地理志의 標題 邑號, 즉 『高麗史』 地理志에 기록된 지방단위의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서술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경남 지역에 소속된 界首官, 領郡과 領縣을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할 것이다. 그리고 계수관과 영군 및 영현 등의 주현에 각각 소속된 속군과 속현을 주현을 기준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설정하여 <표 1>의 기재 순서대로 서술할 것이다.

1) 界首官과 領郡·領縣의 변동

부산·경남 지역의 유일한 界首官인 晋州牧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晋州牧은 顯宗 9년(1018)에 8牧의 하나로 설치되어 계수관이 되었다.⁷⁾ 진주목은 이후 고려말까지 界首官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2개의 속군과 7개의 속현을 직접 지배하고 있다.

<표 2> 晋州牧이 界首官이 된 시점과 전후의 변동

명칭	界首官이 된 시기	이전 이후의 상황	관리 군현	
晋州牧	현종 9년	태조 때 지명이 康州였음, 성종 2년 12牧의 하나로 설치, 성종 14년 12州 節度使의 하나로 설치, 이때 晋州라는 명칭을 얻고 山南道에 소속됨, 현종 3년 安撫使가 됨, 현종 9년에 8목의 하나로 설치됨, 이후 변동이 없음	직속 군현	屬郡 2개 屬縣 7개
			領郡·領縣	영군 1개 영현 3개

고려시기 진주목의 治所城은 현재 남강 변에 있는 羸石城과 다른 위치에 만들어진 별개의 성곽이었다.⁸⁾ 고려시기 진주목의 치소성은 축석성의 북쪽에 있었는데, 진주목

7) 고려시기 晋州牧의 지방제도 연혁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57, 地理2 晋州牧 ; 심혜영·김준형, 「진주의 강역과 하부조직의 시기별 변화」 『南冥學研究』 39,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3 참조.

8) 고려시기 晋州牧의 治所城과 거기서 출토된 유물과 기와 명문에 대해서는 구산우, 「晋州 平安洞에서 출토된 高麗朝鮮前期의 기와 명문」 『역사와 경계』 101, 2016 참조.

의 鎭山인 飛鳳山 아래에 있었다. 비봉산 아래에 있는 진주목 치소성의 위치는 통일신라시기부터 조선전기에 축석성으로 治所가 옮겨갈 때까지 장기간 진주의 치소가 있었던 곳이었다. 고려시기 진주목은 禡王 3년과 5년에 두 차례 축조되었으며, 고려시기 진주목의 치소성이 있었던 곳에는 鳳鳴樓와 客舍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객사 터로 알려져 왔던 平安洞 유적이 최근 발굴되었는데, 여기서 고려에서 조선전기에 이르는 시기의 유물과 方位面과 面戶 등을 새긴 명문 기와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다음은 이에 관한 것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9) 통일신라~조선전기의 진주 治所, 진주성, 발굴 지점

9) <그림 1>에 제시된 진주성을 제외한 건물 위치는 상대적 의미에서 방향과 거리만을 표시할 뿐이다.

진주목은 예하에 4개의 영군과 영현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영군은 陝州 1개이며, 영현은 固城縣 南海縣 巨濟縣의 3개였는데, 이들은 모두 부산·경남 지역에 속한다. 그리고 동경 소속의 영군, 영현으로서 부산·경남에 있는 것은 金州, 梁州, 密城郡의 3개였다. 이들 7개 영군, 영현의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陝州는 顯宗 때에 知州事가 파견되어 주현으로 승격되었는데, 그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¹⁰⁾ 합주는 고려말까지 주현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② 固城縣은 成宗 14년(995)에 명칭이 固州로서 刺史가 파견된 주현이었다.¹¹⁾ 뒤에 현으로 강등되었는데, 그 정확한 시기와 그때의 이름은 알 수 없다. 顯宗 9년(1018)에는 巨濟縣의 속현이 되었다가, 뒤에 현령이 파견되어 주현으로 승격하였으나, 그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元宗 7년(1266)에 郡을 州로 승격했다고 했으나, 원종 7년 이전에 고성현이 郡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忠烈王 때 南海縣에 병합되었다가, 얼마 후에 예전대로 복구하였다. 남해현에 병합되었다가 예전대로 복구된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다.

③ 南海縣은 顯宗 9년에 縣令이 파견되어 주현이 되었다.¹²⁾ 恭愍王 7년에 왜구의 침략을 받아 일시적으로 晋州牧의 大也川部曲(현재의 경남 진주시 대평면)으로 治所를 옮겨 僑郡이 되었다.

④ 巨濟縣은 顯宗 9년(1018)에 縣令이 파견되어 주현이 되었다.¹³⁾ 元宗 12년(1271)에 왜구의 침략을 받아 加祚縣으로 治所를 옮겨 僑郡이 되었다. 충렬왕 때 管城縣(현재의 충청북도 옥천군)에 병합되었다가 얼마 후에 다시 예전처럼 복구되었다. 관성현에 병합되고, 다시 주현의 지위를 회복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

⑤ 고려초기에 金州는 몇 차례의 지방단위의 승격과 강격을 겪었다.¹⁴⁾ 成宗 14년에 安東都護府가 되면서 김해는 主縣으로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顯宗 9년에 세 현을 屬縣으로 거느리던 咸安郡이 김해의 屬郡으로 來屬함으로써, 금주는 2개의 속군(咸安郡 義安郡)과 함안군이 거느리던 3개의 속현(漆園縣 熊神縣 合浦縣)을 지배하는 큰 주현으로 바뀌었다.

고려시기 금주에는 女眞과 倭寇 등의 해적을 물리치고, 일본과의 외교와 교역을 담당하는 官司인 東南海都部署가 설치되었다.¹⁵⁾ 동남해도부서의 관사는 금주와 경주에 세 차례나 번갈아가면서 설치되었다. 금주에 관사가 설치된 시기는 213년간이었고, 나머지는 경주에 설치되었다. 왜구의 침략이 격심해지는 고려말기에 금주에 설치된 동

10) 『高麗史』 권57, 地理2 陝州

11) 『高麗史』 권57, 地理2 固城縣.

12) 『高麗史』 권57, 地理2 南海縣.

13) 고려시기 巨濟縣의 지방제도 연혁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57, 地理2 巨濟縣 ; 김광철, 「고려 후기 거제 지역사회의 변동과 巨濟縣의 이동」, 『石堂論叢』 46, 동아대 석당연구소, 2010 참조.

14) 고려시기 金州의 지방제도 연혁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57, 地理2 金州 ; 구산우, 「고려시기 김해의 지방행정구조」 『한국중세사연구』 54, 2018 참조.

15) 金南奎, 「都部署의 성격」, 앞의 책 ; 金好鍾, 「東南海都部署使의 設置와 그 機能」 『民族文化論叢』 20,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9.

남해도부서는 왜구의 격퇴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군과는 별개로 동남해도부서에 소속된 병력이 금주에 주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金州 鄉校는 靖宗 12년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고려전기에 특정 지역에서 설치된 지방 향교의 사례로 매우 드물게 확인되는 경우이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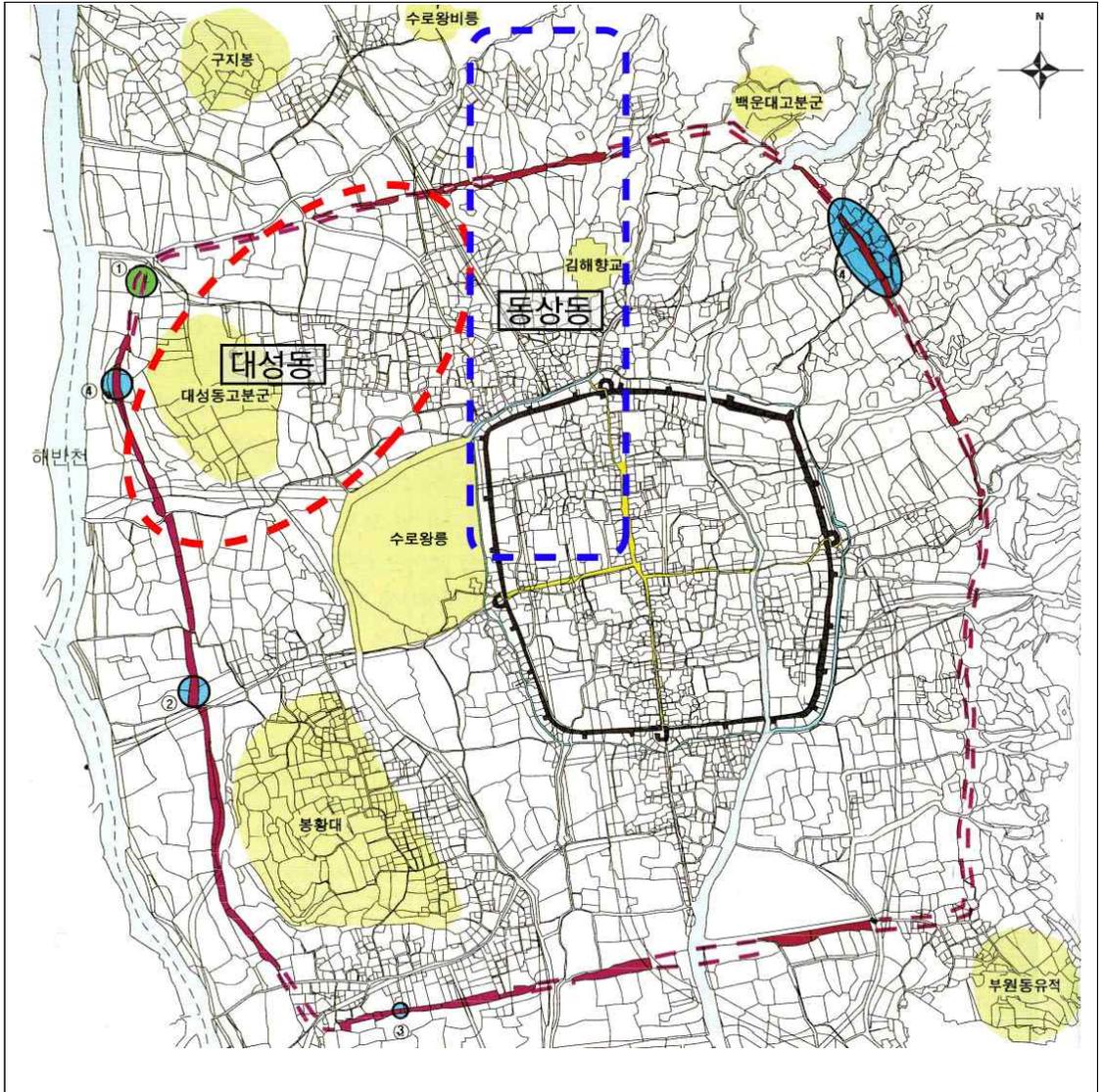
고려시기 금주의 治所城은 禡王 원년에 축조되었음이 확인된다.¹⁷⁾ 금주의 치소성은 우왕 원년 이전에도 있었을 것인데, 그에 관해서는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우왕 원년에 축조된 금주의 치소성과 그 이전의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전기에 만들어진 관한 여러 종류의 지리지에서 古跡조나 城廓조에서 그 지리지 편찬 이전에 존재했던 금주의 고읍성에 관한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왕 원년 이후의 금주 치소성은 이전의 치소성을 이어 받아 수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왕 원년 이래의 금주 치소성을 현재의 盆山城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으나, 관련 기록을 고증한 결과 분산성은 금주 치소성과는 별개의 성곽이었다.

우왕 원년 이래의 금주 치소성은 현재 김해시의 중심부인 大成洞과 鳳凰洞, 東上洞 등을 포함한 곳에 건설되었으며, 최근에 여러 곳에서 발굴이 이루어져서 고려시기 치소성의 구성을 알려주는 유물들과 方位面 등의 銘文들이 새겨진 기와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다음은 고려시기 金州의 治所城과 최근 발굴된 김해 대성동 동상동의 고려시기 유적, 금주 치소성 복문의 甕城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16) 구산우, 앞의 논문, 2018.

17) 고려시기 金州의 治所城과 거기서 출토된 유물과 기와 명문에 대해서는 구산우, 「고려시기 金海의 治所城과 새로운 面 자료의 소개」 『역사와 경계』 85, 2012 ; 구산우, 「金海 鳳凰洞에서 출토된 高麗 治所城의 기와 명문」 『한국중세사연구』 40, 2014 ; 구산우, 「金海 大成洞 東上洞에서 출토된 高麗 治所城의 기와 명문」 『한국중세사연구』 45, 2016 참조.



<그림 2> 고려시 金州의 治所城과 大成洞 東上洞 遺蹟群(1/10,000)



옹성 및 성벽 노출 후 광경

<사진 1> 김해 동상동 314번지의 금주 치소성 북문의 甕城 구조와 성벽

⑥ 梁州는 현종 9년(1018)에 防禦使가 파견된 주현이 되었다.¹⁸⁾ 원 간섭기에 밀성군에 병합되어 주현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忠烈王 30년(1304)에 다시 주현의 지위를 회복하여 고려말까지 그 위상을 유지하였다.

⑦ 密城郡은 成宗 14년(995)에 명칭이 密州로서 刺史가 파견된 주현이었다.¹⁹⁾ 현종 9년(1018)에는 知郡事가 파견되어 주현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충렬왕 원년(1275)에 이 고을 사람인 趙任이 밀성군 군수를 죽이고 三別抄 珍島정부에 호응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歸化部曲으로 강등시켜 東京에 소속시켰다. 뒤에 밀성현으로 승격되었는데,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또 충렬왕 11년(1285)에 밀성군으로 승격하여 예전의 지위를 회복했다가, 뒤에 다시 密城縣으로 강등되었다. 밀성군에서 밀성현으로 강등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 공양왕 2년(1390)에 密陽府로 승격하였다.

이상으로 부산·경남 지역의 7개 영군, 영현의 변동 상황을 살펴보았다. 계수관과 영

18) 『高麗史』 권57, 地理2 梁州.

19) 고려시기 密城郡의 지방제도 연혁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57, 地理2 密城郡; 김광철, 「고려 후기 밀양 지역사회의 변동과 治所 이동」 『石堂論叢』 41, 동아대 석당연구소, 2008; 박종진, 「‘밀성군지역’의 성립과 지리적 특징」, 앞의 책 참조.

군·영현의 領屬관계 형성과 그 이후의 변동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부산·경남 지역 領郡·領縣의 領屬관계 형성 시점과 이후의 변동

界首官	領郡·領縣	영속관계 형성 시점과 단위	이전 이후의 변동 상황
晉州牧	陝州	현종 때 知州事	
	固城縣	성종 14년 固州 刺史	뒤에 縣으로 강등, 현종 9년 巨濟縣의 속현이 됨, 뒤에 현령관 파견, 원종 3년 州로 승격, 충렬 때 南海縣에 병합, 얼마 후에 복구
	南海縣	현종 9년 縣令官	공민 7년 治所를 진주목 大也川部曲으로 옮김 [僑郡]
	巨濟縣	현종 9년 현령관	원종 12년 치소를 加祚縣으로 옮김 [僑郡], 얼마 후 복구
東京	金州	성종 14년 安東都護府	현종 9년 咸安郡을 속순으로 예속시킴, 東南海都部署 설치
	梁州	현종 9년 防禦使	원간섭기 密城郡에 병합, 충렬 30년 다시 주현이 됨
	密城郡	성종 14년 密州 刺史	현종 9년 知郡事, 충렬 원년 歸化部曲으로 강등되어 東京에 소속, 충렬 11년 密城郡으로 승격, 뒤에 다시 密城縣으로 강등, 공양 원년 密陽府로 승격

<표 3>을 바탕으로 부산·경남 지역 영군·영현의 지방단위 승격, 강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부산·경남 지역 領郡·領縣의 변동과 그 시점

변동 내용	명칭	시점과 비고
주현→주현	密城郡	현종 9년 刺史에서 知郡事로 승격
縣→郡	"	충렬 11년 郡으로 승격
縣→府	密城郡	공양 원년 密陽府로 승격
部曲→郡	"	충렬 11년 歸化部曲에서 密城郡으로 승격
속현→주현	梁州	충렬 30년 주현으로 복귀
	固城縣	현종 9년 이후 현령관
	"	원종 7년 州로 승격
	"	충렬 이후 주현으로 승격
	巨濟縣	충렬 이후 주현으로 승격
군→현	密城郡	충렬 11년 이후
주현→부곡	密城郡	충렬 원년 歸化部曲으로 강등
주현→속현	梁州	충렬 30년 이전, 密城郡에 병합
	固城縣	성종 14년 이후에 縣으로 강등, 현종 9년 巨濟縣의 속현이 됨
	"	충렬 南海縣에 병합
	巨濟縣	충렬 管城縣에 병합

2) 晋州牧 속군·속현의 변동

<표 1>에서 보듯이 진주목에 직접 소속된 2개 속군은 江城郡과 河東郡이며, 泗州에서 宜寧縣까지의 7개 속현도 진주목에 직접 소속되었다. 진주목에 직속된 속군, 속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江城郡은 顯宗 9년(1018)에 진주목의 속군이 되었다.²⁰⁾ 恭讓王 원년(1389)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② 河東郡은 현종 9년에 진주목의 속군이 되었다.²¹⁾ 明宗 2년(1172)에 監務가 파견되었다.

③ 泗州는 高麗初에 진주목의 속현이 되었다.²²⁾ 高麗初는 太祖대로 추정된다. 명종 2년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④ 岳陽縣은 현종 9년에 진주목의 속현이 되었다.²³⁾ 이후 고려말까지 감무도 파견되지 않았고, 진주목의 속현으로 남아 있었다.

⑤ 永善縣은 현종 9년에 진주목의 속현이 되었다.²⁴⁾ 이후 고려말까지 감무도 파견되지 않았고, 진주목의 속현으로 남아 있었다.

⑥ 鎭海縣은 현종 9년에 진주목의 속현이 되었다.²⁵⁾ 공양왕 2년(1390)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20) 『高麗史』 권57, 地理2 江城郡.

21) 『高麗史』 권57, 地理2 河東郡.

22) 『高麗史』 권57, 地理2 泗州.

23) 『高麗史』 권57, 地理2 岳陽縣.

24) 『高麗史』 권57, 地理2 永善縣.

25) 『高麗史』 권57, 地理2 鎭海縣.

⑦ 昆明縣은 현종 9년에 진주목의 속현이 되었다.²⁶⁾ 이후 고려말까지 감무도 파견되지 않았고, 진주목의 속현으로 남아 있었다.

⑧ 班城縣은 현종 9년에 진주목의 속현이 되었다.²⁷⁾ 이후 고려말까지 감무도 파견되지 않았고, 진주목의 속현으로 남아 있었다.

⑨ 宜寧縣은 현종 9년에 진주목의 속현이 되었다.²⁸⁾ 공양왕 원년(1389)에 감무가 파견되었으며, 이때 陝州의 속현이었던 新繁縣을 예속시켰다.

이상으로 晋州牧에 직접 소속된 9개의 속군 속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主縣으로 승격한 곳은 없으며, 다른 군현을 병합한 곳은 1개(宜寧縣)이고, 監務가 파견된 곳은 5개(江城郡 河東郡 泗州 鎭海縣 宜寧縣)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晋州牧 속군·속현의 主屬관계 형성 시점과 이후의 변동

명칭	주속관계 형성 시점과 단위	이전 이후의 변동 상황
江城郡	현종 9년 속군	공양 원년 監務 파견
河東郡	"	명종 2년 감무 파견
泗州	高麗初 속현	"
岳陽縣	현종 9년 속현	
永善縣	"	
鎭海縣	"	공양 2년 감무 파견
昆明縣	"	
班城縣	"	
宜寧縣	"	공양 원년 감무 파견, 이때 陝州의 속현인 新繁縣을 예속시킴

<표 5>에서 보듯이 진주목에 직속된 속군 속현 중에서 監務가 파견된 곳이 5곳이 있는데, 宜寧縣의 경우는 감무가 파견되면서 동시에 新繁縣을 속현으로 거느리는 주현으로 승격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晋州牧 속군 속현의 변동과 그 시점

26) 『高麗史』 권57, 地理2 昆明縣.

27) 『高麗史』 권57, 地理2 班城縣.

28) 『高麗史』 권57, 地理2 宜寧縣.

변동 내용	명칭	시점과 비고
속현→監務현 ²⁹ +속현 예속	宜寧縣	공양 원년 감무 파견+新繁縣을 예속시킴
속군→監務현	江城郡	공양 원년 감무 파견
	河東郡	명종 2년 감무 파견
속현→監務현	泗州	명종 2년 감무 파견
	鎭海縣	공양 2년 감무 파견

<표 5>에서도 보듯이 현종 9년에 진주목의 속군 속현이 된 이래로 고려말까지 감무를 비롯한 어떤 지방관도 파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진주목의 속현으로 남아 있었던 곳은 4개(岳陽縣 永善縣 昆明縣 班城縣)였다.

3) 陝州 속현들의 변동

합주는 12개의 속현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嘉樹縣은 현종 9년(1018)에 합주의 속현이 되었다.³⁰ 이후 고려말까지 감무도 파견되지 않았고, 합주의 속현으로 남아 있었다.

② 三岐縣은 현종 9년에 합주의 속현이 되었다.³¹ 恭愍王 22년(1373)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③ 山陰縣은 현종 9년에 합주의 속현이 되었다.³² 恭讓王 2년(1390)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④ 丹溪縣은 현종 9년에 합주의 속현이 되었다.³³ 공양왕 원년에 영속 관계가 바뀌어 江城縣의 속현이 되었다.

⑤ 加祚縣은 현종 9년에 합주의 속현이 되었다.³⁴ 뒤에 居昌縣에 소속되었는데,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元宗 12년(1271)에 다시 巨濟縣의 속현으로 바뀌었다.

⑥ 感陰縣은 현종 9년에 합주의 속현이 되었다.³⁵ 毅宗 15년(1161)에 이 고을 사람인 子和 등이 鄭絃의 처와 감음현의 鄕吏가 임금을 저주했다고 무고하여 部曲으로 강등되었다. 공양왕 2년(1390)에 감무가 파견되었고, 利安縣을 감음현에 소속시켰다.

⑦ 利安縣은 현종 9년에 합주의 속현이 되었다.³⁶ 공양왕 2년에 感陰縣에 移屬되

29) 본고에서 사용하는 監務현은 監務가 파견된 縣을 지칭하는데, 이는 현령관 이상의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주현 속에는 감무가 파견된 현은 제외된다. 감무가 파견되는 현을 主縣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屬縣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차후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런 문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監務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0) 『高麗史』 권57, 地理2 嘉樹縣.

31) 『高麗史』 권57, 地理2 三岐縣.

32) 『高麗史』 권57, 地理2 山陰縣.

33) 『高麗史』 권57, 地理2 丹溪縣.

34) 『高麗史』 권57, 地理2 加祚縣.

35) 『高麗史』 권57, 地理2 感陰縣.

었다. 여기서 이속이란 군현 영역이 병합되어 이안현이 감음현에 합쳐지거나, 아니면 감음현의 감무에게 행정적 관리를 받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⑧ 新繁縣은 현종 9년에 합주의 속현이 되었다.³⁷⁾ 이후 고려말까지 감무도 파견되지 않았고, 합주의 속현으로 남아 있었다.

⑨ 治爐縣은 현종 9년에 합주의 속현이 되었다.³⁸⁾ 이후 고려말까지 감무도 파견되지 않았고, 합주의 속현으로 남아 있었다.

⑩ 草溪縣은 신라 景德王대 이래로 합주의 속현이었으며, 그런 지위는 현종 9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³⁹⁾ 명종 2년(1172)에 감무가 파견되었으며, 忠肅王 3년(1316)에 知郡事가 파견되어 주현으로 승격하였다.

⑪ 居昌縣은 현종 9년에 합주의 속현이 되었다.⁴⁰⁾ 명종 2년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⑫ 舍陽縣은 성종 14년(995) 이후에는 都團鍊使가 파견된 주현이었으며 지방단위 명칭은 許州였다.⁴¹⁾ 현종 3년(1012)에 舍陽郡으로 이름을 바꾸고 합주의 속군이 되었다. 명종 2년(1172)에 舍陽縣으로 강등되었으며, 감무가 파견되었다.

이상으로 陝州 속현의 주속관계 형성 시기와 이전 이후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陝州 속현의 主屬관계 형성 시점과 이후의 변동

36) 『高麗史』 권57, 地理2 利安縣.

37) 『高麗史』 권57, 地理2 新繁縣.

38) 『高麗史』 권57, 地理2 治爐縣.

39) 『高麗史』 권57, 地理2 草溪縣.

40) 『高麗史』 권57, 地理2 居昌縣.

41) 『高麗史』 권57, 地理2 舍陽縣.

명칭	주속관계 형성 시점과 단위	이전 이후의 변동 상황
嘉樹縣	현종 9년 속현	
三岐縣	"	공민 22년 監務 파견
山陰縣	"	공양 2년 감무 파견
丹溪縣	"	공양 원년 江城縣의 속현이 됨
加祚縣	"	뒤에 居昌縣의 속현이 됨, 원종 12년에 巨濟縣의 속현이 됨
感陰縣	"	의종 15년 部曲으로 강등됨, 공양 2년 감무 파견, 利安縣을 속현으로 소속시킴
利安縣	"	공양 2년에 感陰縣에 移屬됨
新繁縣	"	
冶爐縣	"	
草溪縣	신라 景德王 이후	명종 2년 감무 파견, 충숙 3년 知郡事가 파견되어 주현으로 승격
居昌縣	현종 9년 속현	명종 2년 감무 파견
含陽縣	현종 3년 속군	성종 14년 都團練使가 파견된 주현으로서 명칭은 許州, 현종 3년에 含陽郡으로 바꾸어 함주의 속군이 됨, 명종 2년에 含陽縣으로 강등되면서 감무가 파견됨

<표 7>에서 보듯이 主縣으로 승격한 곳은 1개(草溪縣)이고, 部曲으로 일시 강등된 곳이 1개(感陰縣)이다. 그리고 영속 관계가 바뀐 곳은 2개(丹溪縣 加祚縣)이며, 移屬된 곳은 1개(利安縣)이며, 監務가 파견된 곳은 6개(三岐縣 山陰縣 感陰縣 草溪縣 居昌縣 含陽縣)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陝州 속현의 변동과 그 시점

변동 내용	명칭	시점과 비고
部曲→監務현+ 속현 예속	感陰縣	공양 2년 감무 파견+ 利安縣을 예속시킴
속현→監務현	三岐縣	공민 22년 감무 파견
	山陰縣	공양 2년 감무 파견
	草溪縣	명종 2년 감무 파견
	居昌縣	"
	含陽縣	"

감무현→주현	草溪縣	충숙 3년 지군사 파견
속현→부곡	感陰縣	의종 15년 部曲으로 강등됨
주속관계 변화	丹溪縣	공양 원년 江城縣의 속현이 됨
	加祚縣	현종 9년 居昌縣의 속현이 됨
	"	원종 12년 巨濟縣의 속현이 됨
	利安縣	의종 15년 感陰縣에 移屬됨

이상에서 합주에 속한 속현은 다른 지역보다 지방제도상의 변동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현종 9년에 합주의 속현이 된 이래로 고려말까지 감무를 비롯한 어떤 지방관도 파견되지 않은 채, 그대로 합주의 속현으로 남아 있었던 곳은 3개(冶爐縣 新繁縣 嘉樹縣)였다.

4) 固城縣의 변화

고성현은 그 예하에 거느린 속현이 없다.

5) 南海縣 속현들의 변동

南海縣 속현은 2개인데, 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蘭浦縣은 고려초부터 고려말까지 남해현의 속현이었으며, 감무를 비롯한 어떤 지방관도 파견되지 않았다.⁴²⁾ 왜구의 침략을 받아 주민들이 살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

② 平山縣은 고려초부터 고려말까지 남해현의 속현이었으며, 감무를 비롯한 어떤 지방관도 파견되지 않았다.⁴³⁾ 왜구의 침략을 받아 주민들이 살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

南海縣은 현종 9년 이래로 주현의 지위를 유지했으며, 2개 속현은 고려초부터 고려말까지 남해의 속현이었다. 현종 9년 이후 남해현과 그 속현은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南海縣 속현의 主屬관계 형성 시점과 이후의 변동

42) 『高麗史』 권57, 地理2 蘭浦縣.

43) 『高麗史』 권57, 地理2 平山縣.

명칭	주속관계 형성 시점과 단위	이전 이후의 변동 상황
蘭浦縣	高麗初 속현	
平山縣	"	

6) 巨濟縣 속현들의 변동

거제현 속현은 3개인데, 그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鵝洲縣은 고려초부터 고려말까지 거제현의 속현이었으며, 감무를 비롯한 어떤 지방관도 파견되지 않았다.⁴⁴⁾

② 松邊縣은 고려초부터 고려말까지 거제현의 속현이었으며, 감무를 비롯한 어떤 지방관도 파견되지 않았다.⁴⁵⁾

③ 溟珍縣은 고려초부터 고려말까지 거제현의 속현이었으며, 감무를 비롯한 어떤 지방관도 파견되지 않았다.⁴⁶⁾

巨濟縣은 일시 다른 군현과 병합된 적이 있으나, 고려시대 대부분의 기간에 주현으로 존속하였다. 예하의 3개 속현은 모두 거제현의 속현으로 남아있었으므로, 현종 9년 이후 거제현과 그 속현은 큰 변동 없이 주속 관계가 유지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巨濟縣 속현의 主屬관계 형성 시점과 이후의 변동

명칭	주속관계 형성 시점과 단위	이후의 변동 상황
鵝洲縣	高麗 속현	
松邊縣	"	‘高麗’에 南垂縣에서 松邊縣으로 개명함
溟珍縣	"	

7) 蔚州 속현의 변동

蔚州는 오늘날 울산광역시이므로, 본고의 서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울주의 2개 속현 중 東萊縣은 오늘날 부산광역시에 속하므로, 여기서 그 변화를 서술하기로 한다.

東萊縣은 고려 태조대를 거쳐 성종대까지는 領郡의 위상을 유지했으나, 현종 9년에蔚州의 속현으로 강등되었다.⁴⁷⁾ 동래현이 영군이었을 때의 속현이었던 機張縣은 高麗

44) 『高麗史』 권57, 地理2 鵝洲縣.

45) 『高麗史』 권57, 地理2 松邊縣.

46) 『高麗史』 권57, 地理2 溟珍縣.

47) 고려시기 東萊縣의 지방제도 연혁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57, 地理2 東萊縣; 구산우,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지방행정구조」 『港都釜山』 20,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4, 4~5쪽 참조.

初에 梁州의 속현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동래현은 그 이후에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현령이 파견되는 주현으로 다시 승격되었다. 仁宗대에 제정된 外官祿 규정에 동래현의 현령이 26石 10斗의 녹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⁴⁸⁾ 인종대 이전에 동래현에 현령이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 地理志에서 아무런 기록이 없으므로, 그 이후 고려말까지 동래현은 주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蔚州 속현의 主屬관계 형성 시점과 이후의 변동

명칭	주속관계 형성 시점과 단위	이후의 변동 상황
東萊縣	현종 9년 속현	인종대 이전 현령관 파견, 이후 고려말까지 주현 지위를 유지

<표 12> 蔚州 속현의 변동과 그 시점

변동 내용	명칭	시점과 비고
속현→주현	東萊縣	인종대 이전 현령관 파견

동래현 치소성의 위치는 禡王 13년을 전후하여 변화가 있었다.⁴⁹⁾ 우왕 13년 이전에는 동래현 치소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望美洞에 있었으나, 우왕 13년부터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壽安洞으로 이동했다. 해안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내륙으로 더 들어갔는데, 이는 이 무렵에 격심해진 왜구 침략에 대비한 고려 정부의 성곽 축조 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우왕 13년에 朴葦가 주도하여 건설한 동래현 치소성은 石築이었으며, 조선시대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문헌 기록에서 고려전기의 동래현 치소성은 顯宗 12년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된다.⁵⁰⁾ 수영구 망미동에 있었던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현 치소성의 일부가 최근에 발굴되었으며, 여기서는 간지 壬申을 새긴 상감 청자를 비롯한 유물과 方位面, 癸丑, 客舍, 戶長 혹은 副戶長의 최상층 향리직과 同正의 관직을 동시에 가진 鄭子赫과 鄭譜라는 두 명의 인명을 새긴 명문 기와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8) 金州 속현들의 변동

48) 『高麗史』 권82, 兵2 城堡 顯宗 12년.

49) 고려시기 東萊縣 治所城 및 禡王 13년 이전의 치소성 유적과 여기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구산우, 「고려시기 面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분석」 『한국중세사연구』 30, 2011, 531~541쪽 참조.

50) 『高麗史』 권57, 地理2 溟珍縣.

金州의 속군, 속현은 모두 5개인데, 이들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① 義安郡은 顯宗 9년(1018)에 금주의 속군이 되었으며, 뒤에 監務가 파견되었다.⁵¹⁾ 일본 원정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忠烈王 8년(1282)에 義昌縣으로 개명하고 縣丞을 두어 주현으로 승격하였다.

② 咸安郡은 成宗 14년(995)에 명칭이 咸州였으며 刺史가 파견된 주현이었는데, 현종 9년에 함안군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주의 속군이 되었다.⁵²⁾ 明宗 2년(1172)에 감무가 파견되었으며, 恭愍王 22년(1373)에 知郡事가 파견되어 주현으로 승격하였다.

③ 漆園縣은 현종 9년에 금주의 속현이 되었다. 恭讓王 2년(1390)에 감무가 파견되었다.⁵³⁾

④ 熊神縣은 현종 9년에 금주의 속현이 되었다.⁵⁴⁾ 이후 고려말까지 감무도 파견되지 않았고, 금주의 속현으로 남아 있었다.

⑤ 合浦縣은 현종 9년에 금주의 속현이 되었다.⁵⁵⁾ 뒤에 감무가 파견되었는데,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충렬왕 8년(1282)에 會原縣으로 개명하고 현령이 파견되어 주현으로 승격하였다.

이상으로 금주 속현들의 변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金州 속현의 主屬관계 형성 시점과 이후의 변동

명칭	주속관계 형성 시점과 단위	이전 이후의 변동 상황
義安郡	현종 9년 속군	뒤에 감무 파견, 충렬 8년 義昌縣으로 개명하고 현령관 파견
咸安郡	"	성종 14년 咸州 刺史가 파견된 주현이었음, 현종 9년 咸安郡으로 개명하고 金州의 속군이 됨, 명종 2년 監務 파견, 공민 22년 知郡事 파견
漆原縣	현종 9년 속현	공양 2년 감무 파견
熊神縣	"	
合浦縣	"	뒤에 감무가 파견됨, 충렬 8년 會原縣으로 개명하고 현령관 파견

<표 13>에서 보듯이 金州에 소속된 5개 속현의 변화를 정리하면, 主縣으로 승격한 곳은 3개(義安郡 咸安郡 合浦縣)이고, 監務가 파견된 곳은 4개(義安郡 咸安郡 漆園縣 合浦縣)이다. 금주에 소속된 속현 5개 중에서 현종 9년 이후 주현으로 승격한 곳이 3

51) 『高麗史』 권57, 地理2 義安郡.

52) 『高麗史』 권57, 地理2 咸安郡.

53) 『高麗史』 권57, 地理2 漆園縣 참조.

54) 『高麗史』 권57, 地理2 熊神縣 참조.

55) 고려시기 合浦縣의 지방제도 연혁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57, 地理2 合浦縣 ; 김광철, 「고려시대 합포 지역사회」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참조.

개이므로, 영속 관계의 변화가 많았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종 9년에 금주의 속현이 된 이래로 고려말까지 감무를 비롯한 어떤 지방관도 파견되지 않은 채, 그대로 금주의 속현으로 남아 있었던 곳은 1개(熊神縣)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金州 속현의 변동과 그 시점

변동 내용	명칭	시점과 비고
감무현→주현	義安郡	충렬 2년 義昌縣으로 개명하고 현령관 파견
	咸安郡	공민 2년 지군사 파견
	合浦縣	충렬 2년 會原縣으로 개명하고 현령관 파견
속현→監務현	義安郡	현종 9년 이후 감무 파견
	咸安郡	명종 2년 감무 파견
	漆原縣	공양 2년 감무 파견
	合浦縣	현종 9년 이후 감무 파견
주현→속군	咸安郡	현종 9년 咸州 刺史에서 咸安郡으로 개명하고 金州의 속군이 됨

9) 梁州 속현들의 변동

梁州 속현은 東平縣과 機張縣의 2개인데, 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東平縣은 顯宗 9년에 양주의 속현이 되었다.⁵⁶⁾ 이후 고려말까지 監務도 파견되지 않았고, 양주의 속현으로 남아 있었다.

② 機張縣은 신라 경덕왕 때에 東萊郡에 소속되었다가, 高麗初에 梁州의 속현이 되었다.⁵⁷⁾ 기록에서 기장현이 양주의 속현이 된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양주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면 그 시점은 태조 23년으로 추정된다. 현종 9년에 蔚州의 속현이 되었으며, 뒤에 監務를 파견하였다. 기장현에 감무가 파견된 시점은 睿宗 3년으로 추정된다.⁵⁸⁾ 『高麗史』 地理志에서는 기장현이 울주의 속현이었다가 다시 양주의 속현으로 복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종 9년 이후 고려말까지, 즉 고려시기 대부분의 기간에 기장현은 울주의 속현이었으므로, 기장현은 울주의 속현으로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高麗史』 地理志에서는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기장현이 양주의 속현으로 기록되었다.

梁州 속현인 東平縣은 현종 9년 이후 고려말까지 감무도 파견되지 않았고, 양주의

56) 고려시기 東平縣의 지방제도 연혁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57, 地理2 東平縣 ; 구산우, 앞의 논문, 2004, 8쪽 참조.

57) 고려시기 機張縣의 지방제도 연혁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57, 地理2 機張縣 ; 鄭容淑, 「新羅-高麗時代 지방제도의 정비와 機張」 『韓國民族文化』 8,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6 ; 金琪燮, 「機張郡의 歷史와 文化遺産」 『韓國民族文化』 8,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6 ; 구산우, 앞의 논문, 2004, 5~8쪽 참조.

58) 金東洙, 「고려 중·후기의 監務 파견」 『全南史學』 3, 1987, 7~9쪽.

속현으로 남아 있었다. 다른 속현인 機張縣은 고려시대 대부분의 기간에 蔚州 소속이었으나, 양주의 속현으로 기록되어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梁州 속현의 主屬관계 형성 시점과 이후의 변동

명칭	주속관계 형성 시점과 단위	이전 이후의 변동 상황
東平縣	현종 9년 속현	
機張縣	현종 9년 이전 속현	신라 경덕왕 때 東萊郡의 속현이 됨, 이후 梁州의 속현이 됨, 현종 9년 蔚州 속현이 됨,睿宗 3년에 감무 파견

<표 16> 梁州 속현의 변동과 그 시점

변동 내용	명칭	시점과 비고
주속관계 변화	機張縣	현종 9년 蔚州 속현이 됨

東平縣과 機張縣의 치소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에 東平縣 치소성이 발굴되었다.⁵⁹⁾ 동평현 치소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堂甘3동, 당감4동에 건설되었고, 平山城으로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둘레가 3,508척이며 土石 混築으로 쌓았다. 동평현 치소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당시에 이미 폐성이 되었으며, 첫 건립 연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발굴된 동평현 치소성에서는 고려시기의 청자, 녹청자, 상감청자 등과 함께 東萊郡과 方位面을 아울러 새긴 명문 기와가 7점 출토되었다.

2000~2001년에 기장현 치소성이 발굴되었는데, 발굴 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校里이다.⁶⁰⁾ 기장현 치소성의 위치는 공양왕 3년을 전후하여 변동되었다. 공양왕 3년 이전에 만들어진 치소성의 위치는 기장군 교리에 있었으며, 공양왕 3년 이후에는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와 서부리 일대에 있었다. 기장군 교리 유적에서 발견된 치소성이 고려시기 대부분의 시기에 치소성으로 사용되었는데, 土城으로 지어진 平山城이었다. 공양왕 3년 이후에 축조된 기장현 치소성은 石築으로 건설되었으며, 왜구 방어를 위해 해안에서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어진 것이었다. 발굴된 공양왕 3년 이전의 치소성에서는 건물지 등의 유구, 宋대 동전 등의 유물과 함께 東萊郡과 方位面, 방위면, 右徒 등을 새긴 명문 기와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59) 고려시기 東平縣 治所城과 여기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구산우, 앞의 논문, 2011, 521~526쪽 참조.

60) 고려시기 機張縣 治所城과 여기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구산우, 앞의 논문, 2011, 541~549쪽 참조.

10) 密城郡 속현들의 변동

密城郡은 예하에 창녕군, 청도군의 2개 속군과 현풍현, 계성현, 영산현, 풍각현의 4개 속현을 거느리고 있다. 이 중에서 청도군, 현풍현, 풍각현은 부산경남 지역이 아니므로 본고의 서술에서 제외된다. 밀성군이 部曲으로 강등된 이후 다시 군으로 복구될 때까지, 예하의 6개 속군 속현도 동경에 소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高麗史』 地理志에서는 이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확인되지 않는다.

밀성군의 속군 속현은 6개인데, 그 중 경남에 속하는 것은 3개이다. 이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昌寧郡은 顯宗 9년(1018)에 밀성군의 속현이 되었다.⁶¹⁾ 明宗 2년(1172)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② 桂城縣은 현종 9년에 밀성군의 속현이 되었다.⁶²⁾ 恭愍王 15년(1366)에 靈山縣으로 소속을 옮겼다가, 공양왕 원년에 다시 밀성군에 소속되었다.

③ 靈山縣은 신라 景德王 때부터 고려말까지 밀성군의 속현이었다.⁶³⁾ 元宗 15년(1274)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密城郡에 소속된 3개 속군 속현의 변화를 정리하면, 주속 관계가 일시 바뀐 곳은 1개(桂城縣)이며, 監務가 파견된 곳은 2개(昌寧郡 靈山縣)이다.

밀성군의 속군 속현 3개 중에서 현종 9년 이후 주현으로 승격된 곳과 고려말까지는 감무를 비롯한 어떤 지방관도 파견되지 않은 채, 그대로 금주의 속현으로 남아 있었던 곳은 없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密城郡 속현의 主屬관계 형성 시점과 이후의 변동

명칭	주속관계 형성 시점과 단위	이전 이후의 변동 상황
昌寧郡	현종 9년 속군	명종 2년 감무 파견
桂城縣	현종 9년 속현	공민 15년 靈山縣에 소속, 공양 원년 密城郡 속현으로 복귀
靈山縣	"	원종 15년 감무 파견

<표 18> 密城郡 속현의 변동과 그 시점

61) 『高麗史』 권57, 地理2 昌寧郡.

62) 『高麗史』 권57, 地理2 桂城縣.

63) 『高麗史』 권57, 地理2 靈山縣.

변동 내용	명칭	시점과 비교
속군→감무현	昌寧郡	명종 2년 감무 파견
속현→감무현	靈山縣	원종 15년 감무 파견
주속관계 변화	桂城縣	공민 15년 靈山縣의 속현이 됨
	"	공양 원년 靈山縣 속현에서 密城郡 속현으로 복귀

이상으로 『高麗史』 地理志를 중심으로 고려 현종 9년 이전과 이후 고려말까지 부산·경남 지역의 군현 변동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이를 총괄 정리하는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19> 부산·경남 지역 속군·속현의 승격과 그 시점

변동 내용	명칭	시점과 비교
속현→주현(1)	東萊縣	인종대 이전 현령관 파견
속현→주현+ 개명(2)	義安郡	충렬 2년 義昌縣으로 개명하고 현령관 파견
	合浦縣	충렬 2년 會原縣으로 개명하고 현령관 파견
監務현→주현(4)	義安郡	충렬 2년 義昌縣으로 개명하고 현령관 파견
	咸安郡	공민 2년 지군사 파견
	合浦縣	충렬 2년 會原縣으로 개명하고 현령관 파견
	草溪縣	충숙 3년 지군사 파견
속현→監務현(9)	三岐縣	공민 22년 감무 파견
	山陰縣	공양 2년 감무 파견
	草溪縣	명종 2년 감무 파견
	居昌縣	"
	舍陽縣	"
	漆原縣	공양 2년 감무 파견
	合浦縣	현종 9년 이후 감무 파견
	靈山縣	원종 15년 감무 파견
속군→감무현(3)	機張縣	예종 3년 감무 파견
	昌寧郡	명종 2년 감무 파견
	義安郡	현종 9년 이후 감무 파견
속현→監務현+ 속현 예측(1)	咸安郡	명종 2년 감무 파견
	宜寧縣	공양 원년 감무 파견+ 新繁縣을 예측시킴
部曲→監務현+ 속현 예측(1)	感陰縣	공양 2년 감무 파견+ 利安縣을 예측시킴

*()속의 숫자는 해당 항목의 합계임. 총계는 21곳임.

<표 20> 부산·경남 지역 속군·속현의 강등과 그 시점

변동 내용	명칭	시점과 비교
속현→부곡(1)	感陰縣	의종 15년 部曲으로 강등됨

* ()속의 숫자는 해당 항목의 합계임. 총계는 1곳임.

<표 21> 부산·경남 지역 속군·속현의 主屬관계 변화와 그 시점

명칭	시점과 비고
機張縣	현종 9년 梁州의 속현에서 蔚州 속현이 됨
桂城縣	공민 15년 密城郡의 속현에서 靈山縣의 속현이 됨
"	공양 원년 靈山縣 속현에서 密城郡 속현으로 복귀
丹溪縣	공양 원년 陝州의 속현에서 江城縣의 속현이 됨
加祚縣	현종 9년 陝州의 속현에서 居昌縣의 속현이 됨
"	원종 12년 居昌縣의 속현에서 巨濟縣의 속현이 됨
利安縣	의종 15년 陝州의 속현에서 感陰縣에 移屬됨

*총계는 5곳 7회임.

<표 22> 부산·경남 지역 속군·속현의 개명+속군으로 소속 변경과 그 시점

명칭	시점과 비고
威安郡	현종 9년 威州 刺史에서 威安郡으로 개명하고 金州의 속군이 됨

*총계는 1곳임.

<표 23> 부산·경남 지역 속군·속현의 단순 개명과 그 시점

명칭	시점과 비고
松邊縣	'高麗'에 南垂縣에서 松邊縣으로 개명함

*총계는 1곳임.

<표 23>의 단순 개명은 주현으로의 승격, 감무 파견, 소속 변화도 없이 단순히 지명만 바뀐 경우를 말한다.

부산·경남 속군·속현의 변동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단위의 위상이 승격한 경우는 21곳이었다. 속현→주현이 1곳, 속현→주현과 동시에 개명이 있었던 경우가 2곳이 있었다. 그리고 監務현→주현이 4곳, 속현→감무현이 9곳, 속군→감무현이 3곳, 속현이나 부곡에서 감무현으로 승격하면서 속현을 예속시킨 경우가 각각 1곳씩이었다.

지방단위의 위상이 강등된 곳은 1곳이었다. 주현에서 속군으로 강등되면서 개명되었던 경우가 1곳이었다. 主屬관계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는 5곳 7회, 단순 개명이 되었던 경우가 1곳이었다.

한편 부산·경남 지역의 속군·속현 중에는 주현에 내속한 이후 고려말까지 아무런 변동도 없이 속현으로 그대로 존속한 경우도 여러 지역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변동의 내용에는 승격과 강등, 주속관계의 변화, 개명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부산·경남 지역의 속군·속현

주현 명칭	속군 속현 명칭
晉州牧	岳陽縣 永善縣 昆明縣 班城縣 (4)
陝州	嘉樹縣 新繁縣 冶爐縣 (3)
南海縣	蘭浦縣 平山縣 (2)
巨濟縣	鵝洲縣 溟珍縣 (2)
金州	熊神縣 (1)
梁州	東平縣 (1)

*총계는 13곳임.

<표 24>에서 보듯이, 고려시기 부산·경남의 37개 속군·속현 중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고려말까지 원래 주현의 속현으로 그대로 존속한 경우도 13곳이었다.

고려말에 추진된 속현의 혁파는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더 가속화되는데, 조선시기에는 군현 병합을 비롯한 지방제도 개편으로 고려시대에 형성된 군현 사이의 영속 관계가 크게 변화하였다.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추진된 부산·경남 지역의 군현 개편의 결과를 『高麗史』 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고려·조선시기 부산·경남 지역 군현의 명칭과 주속 관계 변화

고려시기 군현 명칭 (『高麗史』 地理志)	조선시기 군현 명칭 (『新增東國輿地勝覽』)	고려시기 군현 명칭 (『高麗史』 地理志)	조선시기 군현 명칭 (『新增東國輿地勝覽』)
金州	金海都護府	宜寧縣	宜寧縣
義安郡	昌原都護府	新繁縣	新繁縣(宜寧縣 屬縣)
合浦縣		陝州	陝川郡
漆園縣	漆原縣	冶爐縣	冶爐縣(陝川郡 屬縣)
熊神縣	熊川縣	嘉樹縣	三嘉縣
咸安郡	咸安郡	三岐縣	
梁州	梁山郡	山陰縣	山陰縣
密城郡	密陽都護府	感陰縣	安陰縣
昌寧郡	昌寧縣	利安縣	
桂城縣	靈山縣	草溪縣	草溪郡
靈山縣		居昌縣	居昌郡
晉州牧	晉州牧	加祚縣	加祚縣(居昌郡 屬縣)
岳陽縣	岳陽縣(晉州牧 屬縣)	含陽縣	咸陽郡

永善縣	永善縣(晉州牧 屬縣)	固城縣	固城縣
班城縣	班城縣(晉州牧 屬縣)	南海縣	南海縣
江城郡	丹城縣	蘭浦縣	
丹溪縣		平山縣	
河東郡	河東縣	巨濟縣	巨濟縣
泗州	泗川縣	鵝洲縣	
鎭海縣	鎭海縣	松邊縣	
昆明縣	昆陽郡	溟珍縣	
東萊縣	東萊縣	機張縣	
東平縣	東平縣(東萊縣 屬縣)		

<표 25>에서 고려시대 부산·경남 지역 군현 가운데 조선시대에 지방단위의 격이 바뀐 곳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군현이 하나로 합쳐진 곳은 4곳(義安郡 + 合浦縣 ⇒ 昌原都護府, 丹溪縣 + 江城郡 ⇒ 丹城縣, 三岐縣 + 嘉樹縣 ⇒ 三嘉縣, 利安縣 + 感陰縣 ⇒ 安陰縣)이다.

고려시대 속현이었던 지역이 영군, 영현에 병합된 곳이 있다. 南海縣의 속현이었던 蘭浦縣과 平山縣이 남해현에 병합되었고, 巨濟縣의 속현이었던 鵝洲縣 松邊縣 溟珍縣은 거제현에 병합되어 독립된 현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고려시대 속현이 조선시대에 다른 속현에 병합된 경우도 있다. 密城郡의 속현이었던 桂城縣은 동일한 밀성군의 속현이었던 靈山縣에 병합되어 현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고려시대에 계수관이나 영군으로서 많은 속현을 거느렸다가 조선시대에 적은 수의 속군 속현을 지배하는 형태로 지방제도의 개편이 추진되었는데,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에 9개의 속군 속현을 거느렸던 晉州牧은 조선시대에 岳陽縣 永善縣 班城縣의 3개 속현만을 거느리게 되었고, 고려시대에 12개의 속현을 지배했던 陝州도 조선시대에 陝川郡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冶爐縣만을 거느리게 되었다.

한편 속현이 주현으로 승격하면서 다른 속현을 지배하게 된 사례도 있다. 고려시대에 합주의 속현이었던 宜寧縣은 조선시대에 주현으로 승격하면서 고려시대에 같은 합주의 속현이었던 新繁縣을 속현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居昌縣과 加祚縣의 사례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고려시기에서 조선시기로 넘어가면서 일어난 부산·경남 지역 군현의 변동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고려→조선시기 부산·경남 지역 군현의 변동 양상

변동 내용	군현 명칭	합계
都護府로의 승격	金州 密城郡	2
두 군현 병합+도호부로의 승격	義安郡+合浦縣	1
縣→郡 승격	草溪縣 居昌縣	2
속현→주현 승격	江城郡 河東郡 泗州 鎭海縣 昆明縣 宜寧縣 嘉樹縣 三岐縣 山陰縣 丹溪縣 感陰縣 利安縣 草溪縣 居昌縣 含陽縣 東萊縣 義安郡 合浦縣 咸安郡 漆園縣 熊神縣 機張縣 昌寧郡 桂城縣 靈山縣	25
州→郡 강등	梁州 陝州	2
郡→縣 강등	昌寧郡 河東郡	2
州←縣 강등	泗州	1
두 군현 병합+개명	義安郡+合浦縣 丹溪縣+江城郡 三岐縣+嘉樹縣 利安縣+感陰縣	4
소멸+병합	蘭浦縣 平山縣 鵝洲縣 松邊縣 溟珍縣	5
주속관계 변화	加祚縣 新繁縣 東平縣	3
개명	漆園縣 熊神縣 梁州 昆明縣 含陽縣	5
변동 없음	晋州牧 岳陽縣 永善縣 班城縣 鎭海縣 宜寧縣 新繁縣 冶爐縣 山陰縣 加祚縣 固城縣 東萊縣 機張縣	13

4. 부산·경남 지역의 部曲制 편제와 분포

고려시대에는 일반 郡縣制 지역과는 달리 특수한 기능을 갖는 행정구역이 많이 존재하였다. 특수 행정구역은 鄉 部曲 所 莊 處 驛 津 江 浦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향 부곡 소 장 처는 다른 구역들과는 구분되는 분포와 규모를 갖고 있고, 기능의 측면에서도 다른 구역에 비해 훨씬 중요한 생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향 부곡 소 장 처를 묶어서 부를 때 部曲制 지역이라 한다.

조선초기 地理志들에서 나타나는 부곡제 지역은 향이 431개, 부곡이 145개, 소가 275개, 장이 14개, 처가 34개로서 모두 899개로 집계된다.⁶⁴⁾ 지역별 분포를 보면, 향과 부곡은 경상도 지역에, 소는 전라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이처럼 많이 존재한 부곡제 지역은 속현의 존재와 함께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가장 큰 특성으로 꼽힌다.

부곡제 지역은 그 기원이나 존재시기에서 다소의 편차는 있으나 그 전형적인 형태가 고려시대, 특히 高麗前期에 발현되고, 국가 지배의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 동질성을 지닌다고 보고 그 역사적 기능을 해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⁶⁵⁾ 그러나 최근에

64) 朴宗基, 「部曲制의 概念과 存在形態」 『高麗時代 部曲制 研究』, 서울대 출판부, 1990, 6~8쪽.

는 이러한 시각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었다.⁶⁶⁾ 부곡제의 주민은 모두 雜尺層으로서 최하층 良人이라는 신분적 동질성은 확인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특히 수취제도상의 동질성이 있었다는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부곡제 지역의 존재 시기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부곡제의 존재 시기에 대한 여러 견해⁶⁷⁾

구분	鄉 部曲	所	莊	處	근거
『新增東國輿地勝覽』 李佑成 朴宗基	신라	고려	고려	고려	①
림건상	삼국	통일신라	삼국 말기	고려	②
旗田巍	삼국(추정)		고려 이전	고려중기	③
李相瑄			고려 이전	무인집권기	④
北村秀人	고려 이전	고려			⑤
金炫榮 김난옥		고려(*)			⑥
이정신		고려(**)			⑦
木村誠	8세기 중엽 제도화				⑧

*김현영, 김난옥은 所가 지방 행정단위로서 확립된 시기를 고려중기 이후로 비정

**이정신은 所가 지방 행정단위로서 확립된 시기를 고려 顯宗대 이후로 비정

<표 27>에서 보듯이, 대체적으로 향 부곡은 신라시대부터, 그 밖의 지역은 빨라도 고려시대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의 존재 시기에 대해서는 일찍이 1960년대에 北村秀人和 림건상이 각각 상반된 견해를 발표하였다. 北村秀人은 소가 고려시대에 존재했다고 보았으나, 림건상은 소가 통일신라기에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 北村秀人의 입장을 보완하는 金炫榮의 견해가 발표되었다.

65) 具山祐, 「고려시기 부곡제의 연구성과와 과제」 『釜大史學』 12, 1988 ; 박종기, 앞의 책, 1990.

66) 朴鍾進,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출판부, 2000 ; 안병우, 『高麗前期의 財政構造』, 서울대출판부, 2002 ; 윤경진, 「고려시기 所의 존재양태에 관한 試論」 『한국중세사연구』 13, 2002.

67) <표 27>의 근거 자료와 논문은 다음과 같다.

① 『新增東國輿地勝覽』 권7, 驪州牧 古跡 登神莊 ; 李佑成, 「高麗時代의 部曲과 그 住民」 『韓國中世社會研究』, 일조각, 1991 ; 朴宗基, 앞의 책, 1990.

② 림건상, 『조선의 부곡제에 관한 연구』, 1963 ; 『임건상전집』, 해안, 2001.

③ 旗田巍, 「高麗時代의 賤民制度 「部曲」 について」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법정대학출판국, 1972 ; 旗田巍, 「高麗時代의 王室莊園-莊處」, 앞의 책.

④ 李相瑄, 「高麗時代의 莊處에 대한 再考」 『震檀學報』 64, 1987.

⑤ 北村秀人, 「高麗時代의 「所」 制度について」 『朝鮮學報』 50, 1969.

⑥ 金炫榮, 「고려시기의 所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論』 15, 서울대 국사학과, 1986 ; 김난옥, 「고려시대 소의 편제양식과 소민의 사회적 지위」 『歷史教育』 120, 2011.

⑦ 이정신,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 所 연구』, 해안, 2013.

⑧ 木村誠, 「新羅時代의 鄉」 『歷史評論』 403, 1980.

김현영은 소가 지방 행정단위로서 확립된 시기는 고려중기 이후라고 보았는데, 이런 견해는 김난옥도 수용하였다. 이정신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려 이전에 소의 장인은 권세가에 사적으로 예속되어 존재했다. 특수물자를 생산하는 소로 편성하게 된 것은 태조대부터지만, 소가 특수집단이 아닌 지방제도에 처음 편입된 것은 현종대의 지방제도 개편 때라고 한다. 최근에는 소가 고려시대부터 존재한 것이라는 견해가 정설이 되었다.

소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존재 시기에 대해서도 연구자에 따라서 이견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新增東國輿地勝覽』 권7, 驪州牧 古跡 登神莊조의 견해를 타당한 것으로 믿고 수용하는 추세인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新羅가 州郡을 설치할 때, 그 田丁과 戶口가 縣에 미달하는 곳은 혹은 鄉을 두고 혹은 部曲을 두어 소재하는 邑에 소속시켰다. 고려 때에는 또한 所라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金所 銀所 鐵所 絲所 紬所 紙所 瓦所 炭所 鹽所 墨所 藿所 瓷器所 魚梁所 薑所의 구별이 있어 각기 그 물품을 바쳤다. 또한 處와 莊으로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각기 宮殿과 寺院 및 內庄宅에 소속되어 세를 바쳤다. 이 여러 곳에는 모두 土姓吏民이 있었다.⁶⁸⁾

부곡제의 기원에 관해서는 위의 기록에서 향 부곡의 설치 기준을 언급한 대목이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향 부곡은 신라시대에 설치될 때에 田丁과 戶口가 縣에 미달하는 곳을 편제하였다고 하였다. 이 대목이 과연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둘러싼 학계의 동향은 찬성과 반대의 양론으로 나뉜다.

이 기록의 사료적 가치를 부정하는 대표적 연구자는 립건상이다.⁶⁹⁾ 그는 부곡제 지역에 대한 표기가 混記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아, 고려시대 부곡제의 여러 지역은 그 이전 시기에 형성된 동일한 시원적 형태에서 각각 분화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가 제시한 표기상의 혼기란 특정 부곡제의 촌락 명칭이 향 부곡, 소, 장 처 가운데 둘 이상의 명칭으로 동시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鄉’이 다른 자료에서는 ‘△△部曲’이나 ‘△△所’로 기록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기록된 경우를 일컫는다. 립건상은 부곡제의 여러 지역이 동일한 형태에 기원을 두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분화되었던 시대적 배경으로서 고대 국가의 성립기를 들고 있으며, 이때에 일어난 촌락적 예속 형태의 변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고대 국가 성립기에는 공동체간의 지배 예속관계가 발생하는데, 그 중 가장 강력한 지배 공동체를 중심으로 고대 국가가 성립된다고 한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촌락적 예속 형태도 國邑-別邑체제에서 郡縣制=城邑制로 이행된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방토호 세력에 대한 국왕이 정복의 산물이 부곡제의 설치

6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7, 驪州牧 古跡 登神莊.

69) 립건상, 앞의 책.

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표 27>에서 보듯이 립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실증적 자료에 입각하여, 소장 처가 고려시대에 처음 나타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7, 驪州牧 古跡 登神莊조의 사료적 가치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논지를 편 대표적 연구자는 李佑成이다.⁷⁰⁾ 그는 향 부곡의 설치 기준에 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고 보고, 부곡제의 기원이 새로운 토지의 개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토지를 새로이 개간한 결과 생기게 된 新村이 越境地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부곡제의 기원은 월경지의 형태로 개척된 새로운 촌락의 처리 방침에서 비롯된다는 독특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의 가설은 부곡제의 형성 시기에 관해서는 하나의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부곡제에 속하는 지역의 고유 기능은 다음과 같다. 향 부곡의 주민은 일반 군현민처럼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향 부곡의 주민은 집단적으로 노동력이 징발된다는 측면에서 일반 군현민보다 훨씬 강한 신분적, 영역적 통제를 받고 있었다. 소의 주민은 금은동철의 광산물, 생강과 茶의 특수 작물, 미역과 소금, 魚梁 등의 해산물, 종이와 기와 및 도자기, 견직물, 떡 등의 수공업 물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였다. 장 처의 주민은 宮院과 寺院에 소속된 토지인 莊·處田을 경작하였다.

고려시대의 소와 유사한 기능을 지닌 통일신라의 수공업장으로는 成⁷¹⁾이 있다. 아울러 신라말 고려초에 호족들이 수공업장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⁷²⁾ 이 두 가지의 사실은 고려시대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소의 기원과 관련하여 크게 참조된다. 1980년대 이후 개별 소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어 소의 생산 기능과 과정에 대하여서 많은 정보가 축적되었다.⁷³⁾

『新增東國輿地勝覽』 권7, 驪州牧 古跡 登神莊조에 따르면, 부곡제의 지역에는 모두 土姓吏民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들 지역이 군현의 하부단위로 편제되었고 여기에는 吏가 있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 지역에 모두 吏屬層이 존재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⁷⁴⁾ 향 부곡은 邑司가 설치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公廩田이 국가로부터 지급되었다.⁷⁵⁾ 그런데 소, 장, 처에는 읍사가 설치되지 않았고 공해전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⁷⁶⁾

이 견해는 도자기소의 존재를 나타내는 청자 벼루에 새겨진 명문을 바탕으로 한 연

70) 李佑成, 「李朝時代 密陽古買部曲에 대하여」, 앞의 책.

71) 『三國史記』 권37, 地理4 三國有名未詳地分.

72) 金炫榮, 앞의 논문.

73) 徐明禧, 「高麗時代 ‘鐵所’에 대한 研究」 『韓國史研究』 69, 1990 ; 田炳武, 「高麗時代 銀流通과 銀所」 『韓國史研究』 78, 1992 ; 具山祐, 「羅末麗初의 蔚山地域과 朴潤雄-麓所의 기원과 관련하여」 『韓國文化研究』 5,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 宋聖安, 「高麗前期 瓷器手工業」 『慶大史論』 8, 1995 ; 이희관, 「고려시대의 도자소와 그 전개」 『史學研究』 77, 2004 ; 박종기, 「고려시대 종이 생산과 所 생산체제」 『韓國學論叢』 35, 2011 ; 이정신, 앞의 책.

74)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祿科田 辛昌 즉위년 7월.

75)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公廩田柴 성종 2년 6월.

76) 安秉佑, 앞의 책, 235쪽, 298쪽.

구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그 명문은 다음과 같다.

(1행) 辛丑五月十日造 爲大口前戶正徐取(?)夫

(2행) 淸沙硯一隻黃何寺⁷⁷⁾

이 명문의 해석은 ‘大口所의 前戶正 徐取(?)夫를 위하여 辛丑年 오월 십일에 淸沙 硯 1개를 만들었다. 黃何寺에 바친다.’이다. 여기서 신축년은 明宗 11년(1181)으로 추정되고, 이 청자벼루는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명문 속의 大口는 陶瓷器所로 유명한 전남 강진군의 大口所를 의미하며, 이 명문은 대구소의 전직 戶正이었던 徐取(?)夫가 이 벼루를 만들어서 黃何寺에 기부하였음을 나타낸다.⁷⁸⁾ 대구소에 호정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읍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⁷⁹⁾ 소에 읍사가 설치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소에는 읍사의 운영에 필요한 공해전도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장 처의 경우는 읍사와 공해전이 설치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없으나, 위의 도자기소(대구소)의 사례로 보면, 장 처에도 읍사와 공해전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 부곡 가운데는 1000丁 이상의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대규모의 촌락도 있었다.⁸⁰⁾ 소 장 처의 경우는 1000정 이상의 대규모 촌락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는 부곡제에 준하는 특수행정구역의 하나인 驛의 丁數가 겨우 7~75丁에 지나지 않는다⁸¹⁾는 것을 염두에 두면 쉽게 이해된다. 이는 향 부곡과 소 장 처에 대한 국가의 영역 지배방식이 서로 달랐음을 말해준다.

수취체계에 있어서도 향 부곡 소는 군현제를 거쳐 수취가 이루어지는 반면, 장 처는 이와는 차이가 있다. 수취체계상으로 장 처는 군현과 왕실의 이중 지배를 받았음이 확인된다.⁸²⁾ 그러나 향 부곡 소는 군현을 통해 수취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⁸³⁾

향 부곡 소 장 처의 주민이 부담하는 부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⁴⁾ 향 부곡의 주민은 일반 군현민이 기본적으로 내어야 하는 租 布 役의 3세는 물론이고 거기에 더하여 稅 布, 雜物, 徭 貢 등도 부담했다. 그리고 향 부곡의 주민은 집단적으로

77) 국립중앙박물관, 『高麗靑磁名品特別展』, 1989, 246쪽; 鄭良謨·秦華秀, 『高麗陶磁銘文』, 국립중앙박물관, 1992, 156쪽.

78) 具山祐, 「部曲制의 편제와 지배형태」, 앞의 책, 247~248쪽. 한편 벼루를 바치는 주체가 黃何寺이고 받는 사람은 徐取(?)夫로 보아 이 명문의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견해도 있다. 서성호, 「고려 특수행정구역 사람들의 문화경제적 면모」 『고려 역사상의 탐색』, 집문당, 2017, 238~239쪽.

79) 徐聖鎬, 「高麗 수공업소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韓國史論』 41:42, 서울대 국사학과, 1999, 288~289쪽; 具山祐, 앞의 책, 247~248쪽; 이희관, 앞의 논문. 소에 읍사와 長史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윤경진, 앞의 논문, 2002.

80)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公廩田柴 成宗 2년 6월.

81) 『高麗史』 권82, 兵2 站驛.

82) 安秉佑, 앞의 책, 235쪽.

83) 具山祐, 앞의 논문, 1988, 27~32쪽.

84) 具山祐, 앞의 책, 249~257쪽.

특정 지역에 徙民되어 屯田 경작에 동원되기도 하였다.⁸⁵⁾

소의 주민은 향 부곡의 주민처럼 조 포 역의 3세를 부담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고유한 전업적 기능과 관련하여 常貢과 別貢의 형태로 구성되는 貢物을 중점적으로 부담했음을 알 수 있다.

장의 주민인 莊戶는 요역을 부담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공물도 바쳤다. 처의 주민인 처간은 조는 전부에게, 용과 조는 관에 납부하였다. 따라서 처의 주민은 일반 군현민처럼 조 포 역의 3세를 부담하였다.

부곡제의 각 지역은 그 고유 기능이나 부세 부담의 내용, 국가의 영역 지배방식과 관련된 제반 측면에서 일정한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그 존재형태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국가로부터 같은 신분층 즉 잡척층으로 파악되어 법제적으로 일반 군현민에 비하여 훨씬 강력한 신분적, 지역적 귀속성을 적용받았다. 그리고 이들의 신분은 모두 기본적으로 良人이었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동질성을 공유하였다. 이들이 일반 군현민처럼 양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부곡제 지역은 일반 군현에 비해 집단적 예속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부세 부담이 더 무거웠다.

고려시대 부산·경남 지역에 설치된 부곡제 지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8>⁸⁶⁾ 고려시대 부산·경남 지역의 部曲制 분포

85) 『高麗史節要』 권3, 顯宗 15년 정월.

86) <표 28>은 朴宗基, 앞의 책, 1990, 235~261쪽의 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朴宗基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바탕 자료로 삼고, 이에 더하여 『慶尙道地理誌』 『世宗實錄地理誌』의 내용을 참작하여 표를 만들었다. 필자도 같은 방식으로 <표 28>을 만들었는데,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尙道地理誌』 『世宗實錄地理誌』의 내용을 직접 모두 찾아서 확인하고 보충한 것으로서, 박종기가 정리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所의 항목이 그러하다. 所 항목에 있는 ()의 내용은 『世宗實錄地理誌』의 내용으로서, 여기서는 소의 고유 지명은 나타나지 않는데, 朴宗基는 표를 만들면서 () 속에 있는 『世宗實錄地理誌』의 기록을 반영하지 않았다. () 속의 所가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尙道地理誌』에 나타나는 고유 지명을 가진 () 밖의 소와 일치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표 28>의 所 항목 숫자는 고유 지명을 가진 소와 고유 지명이 없는 소를 합한 것이다.

고려시대 군현 명칭 (『高麗史』 地理志)	조선시대 군현 명칭 (『新增東國輿地勝覽』)	소속 部曲制 명칭
東萊縣	東萊縣	部曲 4곳 : 古知道 ⁸⁷⁾ 調井 兄邊 富山 鄉 1곳 : 生川 所 3곳 : (鹽所 3)
金州	金海都護府	部曲 3곳 : 太山 ⁸⁸⁾ 水多 川邑 ⁸⁹⁾ 鄉 4곳 : 齊乙彌 省火禮 達音浦 甘勿也 所 3곳 : (鹽所 2 磁器所 1)
義安郡	昌原都護府	部曲 1곳 : 丐北只
合浦縣		鄉 3곳 : 車衣上 新所 內浦 所 6곳 : 安城 銅泉 ⁹⁰⁾ (鹽所 3 磁器所 1)
漆園縣	漆原縣	部曲 2곳 : 釜谷 省法 鄉 1곳 : 丐叱浦 所 2곳 : (魚梁所 1 鹽所 1)
熊神縣	熊川縣	部曲 1곳 : 寺法 鄉 1곳 : 莞浦
咸安郡	咸安郡	部曲 3곳 : 召多 ⁹¹⁾ 本山 甘勿谷 所 6곳 : 杆曲 知谷 楸子谷 比史谷 損村 (磁器所 1)
梁州	梁山郡	部曲 4곳 : 瓦谷 凡魚 源浦 凡谷 所 2곳 : 於谷 (磁器所 1)
機張縣	機張縣	部曲 4곳 : 古村 沙良村 沙也 結紮 ⁹²⁾ 所 1곳 : (鹽所 1)

87) 古知道部曲은 古智島라는 섬에 있었고, 『慶尙道地理誌』 東萊縣조에서는 古智邊部曲으로 기록되어 있다.

88) 太山部曲은 『世宗實錄地理誌』 金海都護府조에서는 大山部曲으로 기록되어 있다.

89) 川邑部曲은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2, 熊川縣 古跡조에는 熊川縣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世宗實錄地理誌』 金海都護府조, 『慶尙道地理誌』 金海都護府조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 金海都護府 소속으로 파악했다.

90) 銅泉은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2, 昌原都護府 古跡조에는 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世宗實錄地理誌』 昌原都護府조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 所로 간주했다.

91) 召多部曲은 『慶尙道地理誌』 咸安郡조에서는 召三部曲으로 기록되어 있다.

92) 結紮部曲은 『大東地志』 권7, 機張 方面조에서는 結彌部曲으로 기록되어 있다.

密城郡	密陽都護府	部曲 15ㄱ : 歸化 牢山 穿山 ⁹³⁾ 豆也保 伊冬音 今音勿 ⁹⁴⁾ 楮代 烏丁 平陵 古買 谷良村 破西防 近皆 陽良 仇知山 鄉 3ㄱ : 來進 雲幕 薪浦 所 3ㄱ : 陰谷 (磁器所 1 陶器所 1)
昌寧郡	昌寧縣	部曲 1ㄱ : 薪文 鄉 1ㄱ : 城山 所 1ㄱ : (磁器所 1)
桂城縣	靈山縣	部曲 3ㄱ : 馬川 王岐音 吉谷 鄉 1ㄱ : 烏加伊 所 3ㄱ : 退谷 水多伊 (磁器所 1)
靈山縣		
晉州牧	晉州牧	
岳陽縣	岳陽縣(晉州牧屬縣)	部曲 15ㄱ : 花開 薩川 加次禮 於牙 針谷 栗谷 釜谷 鱗潭 松慈 ⁹⁵⁾ 月牙 大也川 有疾 溟玆 晉成 金陽 鄉 7ㄱ : 松谷 福山 角山 轉伊山 老浦 平西山 突山 所 14ㄱ : 伐大 水曲 火谷 大谷 水大谷 葛谷 (魚梁所 2 鹽所 1 磁器所 3 陶器所 2)
永善縣	永善縣(晉州牧屬縣)	
班城縣	班城縣(晉州牧屬縣)	
江城郡	丹城縣	部曲 2ㄱ : 松界 文乙
丹溪縣		
河東郡	河東縣	所 4ㄱ : (魚梁所 3 鹽所 1)
泗州	泗川縣	所 3ㄱ : 觀海谷 (鹽所 2)
鎭海縣	鎭海縣	鄉 1ㄱ : 富山 所 3ㄱ : (鹽所 3)
昆明縣	昆陽郡	部曲 2ㄱ : 有實 金陽 鄉 1ㄱ : 多音 所 7ㄱ : 蒲谷 盤龍 (鹽所 3 磁器所 2)

93) 『高麗史』 권57, 地理2 密城郡조의 細註 기록에서는 고려시대에 守山部曲이 守山縣이 된 것으로 기록하였고,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6, 密陽都護府 屬縣조에서 守山縣은 고려 이전에는 穿山部曲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서는 고려시대에 守山縣의 전신이었던 부곡을 穿山部曲으로 보고자 한다.

94) 今音勿部曲은 『慶尙道地理誌』 密陽都護府조에서는 今勿於部曲으로 기록되어 있다.

95) 松慈는 『世宗實錄地理誌』 晉州牧조에는 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0, 晉州牧 古跡조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 部曲으로 간주했다.

宜寧縣	宜寧縣	部曲 2곳 : 正骨 丐勿谷
新繁縣	新繁縣(宜寧縣屬縣)	鄉 2곳 : 砥山 藏谷 所 6곳 : 楮旨 釜谷 桐谷 弓谷 (磁器所 1 陶器所 1)
陝州	陝川郡	部曲 2곳 : 坐伊 奴兀
冶爐縣	冶爐縣(陝川郡屬縣)	鄉 1곳 : 末谷 所 3곳 : 樸山 (磁器所 1 陶器所 1)
嘉樹縣	三嘉縣	所 3곳 : 緜峴 吐村 (磁器所 1)
三岐縣		
山陰縣	山陰縣	部曲 1곳 : 皆品 所 1곳 : 松谷
感陰縣	安陰縣	所 1곳 : 加乙山
利安縣		
草溪縣	草溪郡	所 2곳 : 代如谷 (陶器所 1)
居昌縣	居昌郡	鄉 1곳 : 丐居
加祚縣	加祚縣(居昌郡屬縣)	所 1곳 : (陶器所 1) 莊 1곳 : 永丁
含陽縣	咸陽郡	部曲 2곳 : 功安 高安 所 2곳 : 馬川 義吞
固城縣	固城縣	部曲 10곳 : 坤義 海濱 道善 珍餘 丘墟 竹林 博達 活村 跪村 鉢山 鄉 6곳 : 曲山 鹿鳴 魚禮 保寧 積珍 義宣 所 ⁹⁶⁾ 7곳 : 鴨帖[銀] 石智[銅] 遊息[銅] 丐次浦[銅] 達帖[茶] (鹽所 2)
南海縣	南海縣	所 1곳 : 丐山
蘭浦縣		
平山縣		
巨濟縣	巨濟縣	部曲 3곳 : 河清 古丁 竹吐 鄉 2곳 : 末斤 德海 所 4곳 : (鹽所 4) 莊 1곳 : 鍊汀
鵝洲縣		
松邊縣		
溟珍縣		

부곡제 지역에 관한 기록은 조선시대의 지리지들에 남아 있으므로, 이 기록들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부산·경남의 부곡제 지역을 파악할 수 밖에 없다. 조선시대의 지리지 중 부곡제에 관한 기록을 가장 충실히 남긴 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부곡제 지역에 관한 기록은 속현 항목에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표 28>에서는 그 속현들을 지배하던 주현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96) 固城縣에 소속된 5개의 所인 鴨帖 石智 遊息 丐次浦 達帖의 끝에 있는 []의 내용은 소의 생산 기능을 전해주는 『慶尙道地理誌』 固城郡조의 기록이다.

파악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시대는 고려중기부터 진행된 부곡제 지역 혁파가 한층 가속화되었던 시기였으므로, 전성기 시절인 고려시대 부곡제의 전모를 온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표 28>에 나타난 부산·경남의 부곡제 모습은 소멸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 28>에 나타난 부산·경남의 부곡제 지역을 집계하면, 鄉 38개, 部曲 80개, 所 90개, 莊 2개로서 합계는 210개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9> 部曲制 지역의 전국, 부산·경남 분포

범위	鄉	部曲	所	莊	處	합계
전국	431	145	275	14	34	899
부산·경남	38	80	90	2		210

고려시대 부산·경남 지역의 군현 42개를 기준 수치로 삼아 평균치를 계산하면, 고려시대에 부산·경남 지역에는 1개 군현 당 대략 5개 정도의 부곡제 지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검토한 바를 요약하여 맺음말로 삼는다.

고려시기 부산·경남 지역에는 縣 이상의 지방단위가 45개가 있었다. 界首官이 1곳, 領郡·領縣이 7곳, 屬郡·屬縣이 37곳이었다. 이 수치는 顯宗 9년을 기준으로 편성된 『高麗史』 地理志에 나타난 郡縣을 집계한 것이다.

고려초부터 고려말까지 전개된 부산·경남 지역 군현의 변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領郡, 領縣의 主屬관계 형성 시기와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7개의 영군, 영현이 계수관과 주속관계가 형성된 시기는 成宗 14년이 3곳(金州 密城郡 固城縣), 현종 9년이 3곳(梁州 南海縣 巨濟縣), 현종대 1곳(陝州)이다. 영군, 영현 중에서 속현이나 部曲으로 강등된 사례가 3곳이 있었다. 현종 9년과 원간섭기에 각각 속현이 된 固城縣과 梁州, 忠烈王 원년에 部曲이 된 密城郡이 여기에 속한다. 일시적으로 다른 군현과 병합된 사례도 3곳(梁州 固城縣 巨濟縣)이며, 다른 군현으로 치소를 일시 옮긴 僑郡도 2곳(南海縣 巨濟縣)이 있었다.

부산·경남 지역의 37개 속군·속현의 변동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단위의 위상이 승격한 경우는 21곳이었다. 속현→주현이 1곳, 속현→주현과 동시에 개명이 있었던 경우가 2곳이 있었다. 그리고 監務현→주현이 4곳, 속현→감무현

이 9곳, 속군→감무현이 3곳, 속현이나 부곡에서 감무현으로 승격하면서 속현을 예속시킨 경우가 각각 1곳씩이었다. 지방단위의 위상이 강등된 곳은 1곳이었다.

주현에서 속군으로 강등되면서 개명되었던 경우가 1곳이었다. 主屬관계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는 5곳 7회, 단순 개명이 되었던 경우가 1곳이었다.

한편 아무런 변화도 없이 고려말까지 원래 주현의 속현으로 그대로 존속한 경우도 13곳이 있었다.

조선초기 地理志들에서 나타나는 部曲制 지역의 전국적 분포는 향이 431개, 部曲이 145개, 所가 275개, 莊이 14개, 處가 34개로서 모두 899개로 집계된다. 부산·경남의 부곡제 지역을 집계하면, 鄉 38개, 部曲 80개, 所 90개, 莊 2개로서 합계는 210개이다.

핵심어 ; 고려 부산 경남 지방제도 郡縣 部曲制 界首官 主縣 屬縣

참고문헌

- 림건상, 『조선의 부곡제에 관한 연구』, 1963 ; 『임건상전집』, 해안, 2001.
- 朴宗基, 『高麗時代 部曲制 研究』, 서울대 출판부, 1990.
- 朴宗基,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 具山祐, 『高麗前期 鄉村支配體制 研究』, 해안, 2003.
- 이정신,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 所 연구』, 해안, 2013.
- 박종진, 『고려시기 지방제도 연구』, 서울대출판문화원, 2017.
- 具山祐, 「고려시기 부곡제의 연구성과와 과제」 『釜大史學』 12, 1988.
- 具山祐, 「고려시기 계수관의 지방행정 기능과 위상」 『역사와 현실』 43, 2002.
- 윤경진, 「고려전기 界首官의 운영체제와 기능」 『東方學志』 126,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 김광철, 「고려시대 합포 지역사회」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 구산우,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지방행정구조」 『港都釜山』 20,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4.
- 김광철, 「고려후기 밀양 지역사회의 변동과 治所 이동」 『石堂論叢』 41, 동아대 석당연구소, 2008.
- 김광철, 「고려후기 거제 지역사회의 변동과 巨濟縣의 이동」 『石堂論叢』 46, 동아대 석당연구소, 2010.
- 구산우, 「고려시기 面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분석」 『한국중세사연구』 30, 2011.
- 김광철, 「고려시대 경남지역의 군현 편제와 지역문화」 『한국중세사연구』 34, 2012.
- 구산우, 「고려시기 金海의 治所城과 새로운 面 자료의 소개」 『역사와 경계』 85, 2012.
- 심혜영·김준형, 「진주의 강역과 하부조직의 시기별 변화」 『南冥學研究』 39,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3.
- 구산우, 「金海 鳳凰洞에서 출토된 高麗 治所城의 기와 명문」 『한국중세사연구』 40, 2014.
- 구산우, 「晋州 平安洞에서 출토된 高麗·朝鮮前期의 기와 명문」 『역사와 경계』 101, 2016.
- 구산우, 「金海 大成洞 東上洞에서 출토된 高麗 治所城의 기와 명문」 『한국중세사연구』 45, 2016.
- 서성호, 「고려 특수행정구역 사람들의 문화·경제적 면모」 『고려 역사상의 탐색』, 집문당, 2017.
- 박종진, 「계수관의 기능과 위상」, 앞의 책.

박종진, 「'밀성군지역'의 성립과 지리적 특징」, 앞의 책.

구산우, 「고려시기 김해의 지방행정구조」 『한국중세사연구』 54, 2018.

「고려시기 부산·경남 지역 지방제도의 성립과 변동」 토론문

정 은 정 (부산대)

1. 논문의 총평

선생님은 고려시대 지방제도 향촌사회사 최근 금석문 자료에 천착하여 고려중기 전후로 방면제가 시행된다는 학계에 귀한 연구를 진행 중이십니다. 학문적 후속세대인데다 지방제도 향촌사회사 분야가 아닌 개경 경기체에 주목한 토론자로서는, 필자의 논문을 평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부담입니다. 논문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서술도 없기에 따로 지적할만한 사항 도 없습니다. 물론 고려의 5도양계 계수관의 구조와 운영, 주속현 공간구조, 향촌사회사 분야에서, 공간으로서 부산경남을 적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한 서술입니다. 토론자로서는 군현제 전반에 대한 통상적 질문 몇가지를 제기함으로써 맑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크게 고려시대 부산경남지역의 지방제도 성립과 변동을 다루어 광역행정단위 속 개별 주속현의 변화상을 검토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부산경남의 군현편제에 대한 연구는 적잖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시기 부산경남 지방제도 성립과 변동에 관한 정치하고 새로운 서술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평자의 과문인지 사실 독자적인 부분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려시대 부산경남이라는 지역을 총체적 집중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라는 점은 의미가 높습니다.

논문은 크게 1장 부산경남지역의 군현편제, 2장 부산경남지역의 군현변동 3장 부산경남지역 부곡제 편제의 구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우선 공간 감각의 편의를 위해 현재의 권역을 고려시대 부산경남의 군현영역에 대비한 수고로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고려시기의 전후 혹은 고려시대 그 자체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부산 경남의 군현제 성립은 현종 연간, 변화의 시기는 원간섭기 왜구침입 전후입니다. 전체 서술에서 시기를 나누는 대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제도 성립과 변동의 틀에서는 속현에서 주현으로의 승격과 폐합을 고려사 지리

지 승람의 기록만을 검토하여 단순 비교하였습니다. 그 외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지리지 속찬지리지 문집, 지역 읍지를 참작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또하나 부산 경남지역 계수관 영군 영현 속군 속현의 형성과 변동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 다분히 건조한 결론에 닿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그 외

① 부산경남 지역의 유일한 계수관이 진주목이어서, 서술은 계수관과 영군 영현의 변동-> 진주목 속군 속현의 변동(진주목의 직속 군현)-> 陝州 속현(진주목의 영군 영현)-> 고성현의 변화-> 남해현의 속현- 거제현의 속현-> 울주 속현-> 금주 속현-> 양주 속현-> 밀성군 속현 -> 순서를 따르고 있다. 합리적인 흐름의 서술로 보이지만, 언뜻 구체적으로 감이 잡히지 않으니 도표 혹은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② 치소성을 비정하고 제시한 바, 진주 금주 동평현 동래현 기장현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치소성 관련한 발굴성고가 누적된 가운데, 읍성 치소성의 형태분류와 위치 비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적으로 다루려는 시도에서 각 치소성과 방면 편제를 보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부산경남의 군현편제와 변동에 집중하려는 본문의 취지와는 다소 어긋나 보입니다. 만약 치소성이 부산경남지역 전역에 망라하여 발굴된 것이라면 서술이 무방하겠지만, 군현 변동과 크게 상관없어 보입니다. 속현 주현을 막론하여 치소성이 포진하는데 정작 군현내부 변동과 기능 운영상의 변화, 치소의 이전과 같은 개연성은 본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③ 광역 지방행정단위에 포함되는 군현 등의 개별 지방행정단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총합적으로 정리하면, 개별 지방제도 단위의 변화 양상에서 잘 파악하기 어려운 광역 단위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개별지방제도 단위의 변화양상, 광역 지방행정단위의 전체상은 각각 무엇을 칭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부산경남지역의 군현제 영역 안에서 내부적 군현편제의 변화를 보겠다는 의미인 듯하나, 언뜻 와닿지 않습니다. 개별지방제도와 광역지방행정단위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계수관 단위를 광역 지방행정단위, 그 아래 주현 속현 부곡제 영역을 개별지방제도 단위라고 규정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④ 부곡제 지역의 편제와 분포를 살피는 목적이 '생산물의 생산체계와 수취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는데 사실 본문에서는 관련한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전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이라 언급을 피한 듯 한데, 소략하게라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산 경남의 부곡제 지역이 어디인지, 감무 파견과 군현의 승강에 대한 절

차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산 경남지역 부곡제 편제와 분포에서는 실제 부산경남의 사례보다는 대부분의 지면을 부곡제 지역의 기원 신분제와 기능 부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축소하고 부산경남의 부곡제 편제와 변동, 공간구조에 대한 집중된 서술이 필요할 듯합니다.

⑤ 마지막으로 고려시대 계수관 단위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고려시대 계수관 영군으로 많은 속현으로 거느리다가 조선시대에 적은 수의 속군현을 지배하는 형태로 전환한다고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9개의 속군현을 거느릴 진주목은 조선에서 3개 속현만 통할하고, 고려에 12개 속현을 지배하던 합주 역시 줄고 있습니다.

그 요인을 뭐라 할 수 있을까요? > 본문에서는 적극적 해석이 없지만, 만약 속군현의 병합과 주현화 과정에 따른 것이라 친다면, 이는 공권력의 향상 구심력의 확보를 역사 지방제도사 발전의 척도로 보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할 듯 합니다. 물론 광역 운영 단위로서 계수관계가 갖는 기본적 결함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고려의 지역 자치적 동력 자율적 운영에 대한 고려 독자적 지방제도 운영상과는 괴리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 연구는 지방제도 계수관계 읍사조직 향촌사회 같은 거시적 틀을 논하는 지면이 아닙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셨기에 굳이 이 논문에 맞춘 질문이라기 보다는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려말 鄭地의 생애와 군사활동

이 소 영 (창원대)

1. 머리말	4. 觀音浦 전투와 對馬島 정벌 건의
2. 家系와 入仕	5. 김저사건, 윤이·이초사건과 政治的 肅清
3. 수군 정비와 전함 건조	6. 맺음말

1. 머리말

鄭地는 고려 말 수군의 총지휘관을 역임하며 왜구 격퇴에 앞장섰으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숙청을 당했다. 威化島 회군에 참여하여 이등공신이 되었고, 조정의 부름을 다시 받게 되지만 정계에서 물러난 1391년(恭讓王 3) 광주에서 병사하였다.¹⁾

당시 고려는 국내외적으로 변동기에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권력을 독점한 권문세족에 의한 정치적·경제적인 폐단이 발생하여 왕권이 약화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원이 멸망하고 명이 중국대륙을 지배하였으며,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해져 가는 상황이었다. 1350년(忠定王 2)부터 시작된 왜구의 침입은 이후 1392년(恭讓王 4)까지 약 40여 년 동안 이어졌다.

왜구의 침입이 갈수록 심해져 가는 시기에 정지는 수군 정비와 전함 건조로, 수군의 재정비를 위한 防倭策을 제시하며 왜구 격퇴에 큰 공을 세우면서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정지는 일평생을 수군의 지휘관으로 활약하면서 오직 왜구 격퇴를 위해 정진한 인물이었다. 그는 고려 말 무장으로 널리 알려진 李成桂, 崔瑩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고려 말 왜구 격퇴의 3대첩이라 불리는 觀音浦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본고는 고려 말 왜구 격퇴에 앞장섰던 정지에 대한 생애와 활동의 복원에 초점을 맞춰 쓰려고 한다. 정지에 관한 선행연구 논문은 지금까지 발표된 것이 3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송정현의 논문은 정지에 대한 최초의 단독 연구 논문이다.²⁾ 이 논문에서는 정지의 일대기와 군사적 활동을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왜구의 선박보다 더 견고한 전함을 건조하고, 해상에서의 해전이 가능한 수군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1) 『高麗史』 권113, 列傳26, 鄭地.

2) 송정현, 「鄭地將軍 研究」, 『호남문화연구』 25, 1997.

정지의 수군 창설을 그의 가장 큰 공로라 평가하였다. 그 평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기록들이 첨가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신성재의 논문은 海防史적인 관점에서 정지의 일대기와 수군 활동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³⁾ 전문적인 수군 양성과 당대에 개발된 무기 등과의 결합으로 기술적인 변화를 주고자 했던 정지의 방왜책에 대해 서술하였고, 투척용 화통이 관음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화약 무기였음을 밝혀냈다. 이 논문에서는 정지의 방왜책을 수군 양성에만 국한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최성욱의 논문 또한 정지의 수군 양성과 전함 건조에 대해 검토하였다.⁴⁾ 이 논문에서는 정지와 관련된 기록을 일부 지역의 전승 설화에서 찾아 반영하기도 하였다. 수군의 양성과 전함 건조 등을 중심으로 정지의 활약상을 서술하였으며, 관음포 전투에서 위화도 회군에 이르는 정지의 일대기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고려와 국제정세의 관계에 관한 부분을 주요하게 다루었고, 정지의 왜구 격퇴 활동을 서술하고 있다.

앞의 선행 논문들에서는 정지의 전함 건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 성과가 없다. 후대의 기록에 처음으로 전함을 만든 이가 왜 정지로 기록되었는지, 이러한 전함을 언제 건조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 하지만 관음포 해전 이후, 또 다른 방왜책으로 정지가 전함 건조를 하였다는 기록이 등장한다.⁵⁾ 해상 전투에서 최초로 화포, 화약무기를 사용하여 대승을 거둔 전투가 바로 관음포 전투였고,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정지였다.

아마도 이때 사용된 전함은 화약 무기를 장착한 전함이었던 것 같다. 화약 무기를 장착한 전함을 건조하고 관음포 전투에서 활용함으로써 왜구 격퇴에 큰 공을 세운 이가 정지였다. 이 점을 본고에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지의 대마도 정벌 건의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명해 보고자 한다. 왜구와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구 진압이 이뤄지지 않자 정지는 대마도 정벌을 건의했다. 아쉽게도 정지에 의한 대마도 정벌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훗날 이루어졌던 대마도 정벌의 선구자가 정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지의 생애와 활동들이 잘 정리되어, 그의 인식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家系와 入仕

정지는 1347년(忠穆王 3) 羅州에서 태어났다.⁶⁾ 『高麗史』 열전에 그는 나주사람이

3) 신성재, 「고려 말 鄭地의 海防論과 수군활동」, 『이순신연구논총』 23, 2015.

4) 최성욱, 「14세기 왜구 侵寇과 고려의 대응」, 동의대 석사학위논문, 2016.

5) 『高麗史』 권113, 列傳26, 鄭地.

라 하였다. 따라서 정지의 본관은 나주라고 할 수 있다.

① 鄭耕의 본관이 羅州이니, 고려의 名將 鄭地의 아들이다.⁷⁾

위의 『世宗實錄』 기록에 의하면 정지의 아들인 鄭耕의 본관을 나주라 하였고, 『世宗實錄』 地理志의 全羅道 羅州牧의 人物로 정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정지의 본관에 관한 『高麗史』 열전과 같은 자료가 된다.

그러나 정지의 본관을 河東이라 기록하고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⁸⁾ 또는 하동에서 나주로 分貫하여 정지의 본관이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⁹⁾ 『萬姓大同譜』의 편찬 당시, 錦城鄭氏의 자손들이 하동정씨로 還貫을 했던 터라 정지를 하동정씨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본관은 바뀔 수가 없고, 또한 합쳐질 수도 없는 것이기에 이는 의문으로 남는다.

정지의 조부는 錦城君 盛이고, 정지의 아버지는 僉議의 관직을 증직 받은 履이다.¹⁰⁾ 鄭盛은 河東鄭氏의 후손으로, 鄭碩崇의 6세손이 된다.¹¹⁾ 錦城君의 군호를 받아 나주에서 터를 잡아 살게 되었고, 이후 자손들이 그곳에 세거하게 됨으로써 나주를 본관으로 삼았던 것이다.

정지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 또한 『高麗史』 열전에 몇 줄로 전한다.

② “정지의 처음 이름이 准提이며, 나주사람이다. 풍모가 장대하고 성품이 관후했다. 어려서부터 큰 뜻을 가져 독서를 즐겼는데 책에 나오는 대의를 통달해 남들이 그의 설명을 들으면 모든 의문이 시원히 풀렸다. 또 드나들 때 항상 서적을 지니고 다녔다.”¹²⁾

위의 기록을 보면 정지의 초명은 准提인데, 이름을 地로 개명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정지가 恭愍王에게 왜구에 관한 防倭策을 꺼내 바치는 열전의 기록에서 정지의 관직이 中郎將과 淸州(速古赤)로 나타난다. 방왜책을 받아들인 왕이 정지에게 全羅道安撫使겸 倭人追捕萬戶라는 새로운 관직명을 내리는데, 관직명이 바뀌는 부분에서부터 개명이 되어 서술하고 있다. 이때부터 이름이 지로 불리었던 것 같다. 淸州로서 왕의 측근에 있었던 정지는 중랑장이라는 관직도 겸직하고 있었다. 이것이 『高麗史』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정지의 入仕 기록이다.

정지는 풍모가 장대하나 성품은 관후했다. 풍모가 장대하다는 것은 아마도 왜구를

6) 『高麗史』 권113, 列傳26, 鄭地.

7) 『世宗實錄』 권12, 世宗 3년 7월 己卯.

8) 구희서, 『萬姓大同譜』, 학문각, 1972, 496쪽

9) 중앙일보사, 『한국성씨대백과』, 1989, 1765쪽.

10) 구희서, 앞의 책, 496쪽.

11) 중앙일보사, 앞의 책, 1764쪽.

12) 『高麗史』 권113, 列傳26, 鄭地.

격퇴하던 강인한 무장으로 성장한 그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표현한 것인 듯하다. 정지는 어려서부터 큰 뜻을 가지고 독서와 학문에 정진하였고, 항상 책을 가지고 다녔다고 했다. 위의 기록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지는 집안의 과업으로 과거시험에 응시를 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여 문반으로의 진출이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조선 전기 관료들 사이에서 정지가 儒將으로 평가하는 기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③ 鄭耕의 본관이 羅州이니, 고려의 名將 鄭地의 아들이다. 雄偉하고 智略이 있음은 그 아버지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니 성품이 둔후하고 명쾌하였다.¹³⁾

위 인용문 ③은 世宗대 정지의 아들 耕의 사망을 기록한 卞言己의 부분으로, 정지를 응위하고 지략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지혜로움을 갖춘 무장으로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中宗實錄』에 의하면, 李孫이 倭變에 대해 논의하던 부분에서 정지를 儒將으로 언급하고 있다. 탁월한 신체조건과 관후한 성품으로 학문을 갈고 닦음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정지는 후대에까지 文武를 겸비한 유장으로서 평가됐던 것이다.

恭愍王대에 정지는 방왜책을 내세워 수군의 임무를 수행할 관직에 임명된다. 고려가 건국한 이후 13세기 이전으로는 왜구의 침입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1223년(高宗 10)에 처음으로 왜구의 침입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¹⁴⁾ 왜구는 경제적 약탈을 목적으로 한 무장집단이였다.

다음 표에서 보여 지듯이, 1223~1323년 100년 동안 기록된 왜구의 침입 횟수는 총 12회로, 10년에 약 1회에 지나지 않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초기 왜구의 침입 당시 선박은 2척 정도, 인원은 100명 미만의 수십 명 정도 규모로 그 행동 범위도 對馬島에 가까운 경상도 연안 일대에 한정되었으며 약탈이 끝나면 곧바로 물러갔다.¹⁵⁾ 이에 비해 14세기 후반의 나타난 왜구의 침입 양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져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왜구의 선박 규모는 작게는 20척에서 많을 경우 100~200척, 최대 500척에 이르는 대규모 선단을 구성하기도 했다.¹⁶⁾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커져 있었고, 왜구의 침략 횟수나 침략의 양상과 침략 범위 또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었다. 고종 이후 왜구의 침입 횟수에 대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 高宗 이후 왜구의 침입 상황¹⁷⁾

왕	서기	침입횟수
高宗 10년	1223	1

13) 『世宗實錄』 권12, 世宗 3년 7월 己卯.

14) 『高麗史』 권22, 高宗 10년 5월.

15) 이영, 『잊혀진 전쟁 왜구.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에스피메테, 2007. 9쪽

16) 이영,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120~121쪽.

17) 나종우, 「왜구」,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396쪽.

12년-14년	1225-27	5
元宗 4년	1263	1
6년	1265	1
忠烈王 6년	1280	1
16년	1290	1
忠肅王 10년	1323	2
忠定王 2년-3년	1350-1351	11
恭愍王 1년	1352	8
3년-4년	1354-55	3
6년-15년	1357-1366	58
恭愍王 16년	1367	1
18년-23년	1369-1374	45
禡王 1년-11년	1375-1385	351
13년-14년	1387-1388	27
昌王 1년	1389	5
恭讓王 2년-4년	1390-1392	8

왜구의 침입 횟수는 1223년(高宗 10)에서 1392(恭讓王 4)까지 170년간 총 529회에 이른다. 학계에서는 1350년(충정왕 2)의 왜구를 가리켜 ‘庚寅年の 왜구’라고 하여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사용한다. 충정왕 2년이 경인년이고 왜구의 침입이 증폭하는 기준의 시점이기 때문이다.¹⁸⁾ 왜구의 침입을 위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왜구의 규모나 양상은 단순한 약탈의 범위를 넘어서 고려의 안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발전해 나갔다.

왜구는 배를 가지고 침략하여 남해 연안에서 서해안 등지의 해안 지역에 상륙하여 노략질하며 喬桐·江華까지 침략하기에 이르러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왜구는 연해안의 백성들을 납치하여 그 일대를 황폐화시키고, 내륙까지 침략하여 고려의 군대를 격파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국가 재정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세 운송로를 약탈해 漕運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세금으로 바친 稅穀을 開京으로 운반하는 漕運船과 세곡을 海路로 조운하기 전 보관하는 漕倉이 왜구의 침략 대상이 되었다.¹⁹⁾ 개경에 가까운 지역인 京畿, 楊廣道 지역에는 조운중이거나 조창에 쌓아둔 곡식이 많은 이유로 왜구의 침입을 많이 받았다. 왜구의 약탈은 조운선에서 시작되었다. 왜구의 규모가 이렇게 커져가고 있음에도 고려의 대처 능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고려의 관료들은 끊임없이 왜구를 물리칠 각각의 계획을 모색하고 있었다. 공

18) 구산우, 「일본 원정, 왜구 침략과 경상도 지역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22, 2007, 224쪽.

19) 오종록, 「왜구의 침입 원인과 양상의 변화」, 『한국해양사3, 고려시대』, 한국해양재단, 2013, 645쪽.

민왕 23년 李禧와 鄭地가 올린 상소문은 수군의 질적 향상을 건의하면서 왜구 격퇴를 위한 수군 정비의 신호탄이 된다.

④ 1374년(공민왕 23) 檢校中郎將 李禧가 글을 올려 수전을 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왕이, “百官과 衛士 가운데는 아무도 이회 같은 사람이 없단 말인가?” 하고 탄식했다. 이에 鄭地가 자신이 만든 전략 초안을 꺼내어 바쳤다. 왕이 기뻐하며 정지를 全羅道安撫使, 이회를 楊廣道安撫使로 삼아 모두 倭人追捕萬戶를 겸하게 하였다. 당시 정지와 이회는 두세 번에 걸쳐 수십조에 달하는 전략을 올렸다. “바닷섬에서 나고 자랐거나, 해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를 등록시켜 저희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휘하게 하면 5년 내에 바닷길을 깨끗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²⁰⁾

인용문 ④에서는 정지와 이회가 두세 번에 걸쳐 수십조에 달하는 전략을 올렸는데, 그 중 하나의 개략이 바닷섬에서 자라 해전에 참여를 원하는 자들을 동원하여 전투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지가 恭愍王에게 올렸다는 단독의 계획이 기록상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정지와 이회가 함께 올렸다는 수십조에 달하는 전략의 상소문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352년(공민왕 원년) 때부터 논의가 되었던 수군의 재정비가 이들에 의해서 채택이 되었고, 이 두 사람은 각각 楊廣道安撫使겸 倭人追捕萬戶와 全羅道安撫使겸 倭人追捕萬戶에 임명되어 수군으로서 왜구 격퇴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3. 수군 정비와 전함 건조

충정왕 2년 이후부터 왜구의 침입이 본격화되자, 고려의 관료들은 왜구의 침입을 해결하기 위해 저마다의 계획을 모색하여 상소하였다. 정지와 이회가 왜구에 대한 방왜책을 처음으로 건의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이전부터 왜구 격퇴에 대한 방왜책은 꾸준히 건의되어 왔다. 1352년(공민왕 원년) 李穡은 공민왕에게 防倭策을 건의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한 내용으로는 육지에서의 수비와 해상에서의 전투를 함께 제시하였다. 두 가지 모두에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였으나 이는 당시의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왜구의 침입은 갈수록 증가하여 그 피해 정도는 심각해져 갔다. 이색의 건의 후, 20여 년이 지난 1373년(공민왕 22)에 左司議大夫 禹玄寶의 건의와 함께 방왜책은 본격화되었다.

⑤ “마땅히 함선을 만들고 병장기를 점검하여 조류를 타고 멀리 나아가 요충

20) 『高麗史』 권113, 列傳26, 鄭地.

지를 막는다면 적이 비록 물을 잘 안다고 해도 어찌 능히 우리의 함선을 날아서 넘어가겠습니까? 미리 장수를 보내어 군사를 모아 民에게 전투하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면 군기에 습관을 들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²¹⁾

禹玄寶는 위의 상소문을 통해 육지에서의 방수군이 많아도 바다에 있는 왜구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니 병선을 건조하고 무기를 정비하여 방어하자는 것과 전쟁 시 동원될 일반 백성들에게 미리 전술 훈련을 하자는 견해를 함께 건의하였다. 우현보의 상소는 이색의 건의가 수용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적극 받아들여졌다. 1359년부터 시작된 홍건적의 2번에 걸친 침입은 1362년(공민왕 11)에 와서야 진압이 되었다. 북방 정세가 잠잠해지자, 이제 고려는 왜구 격퇴에 대한 정책들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드디어 1373년(공민왕 22)에 우현보의 상소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져 선박을 제조하고 선박에 사용될 화약의 공급을 명나라에 요청했다. 수군 전투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명나라에 화약과 화기 제공을 부탁한 것이다.²²⁾ 그러나 화약의 도입과 화기의 개발은 명나라의 태도에 따라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었기에, 공민왕은 먼저 대규모 전함 건조와 수군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정지의 방왜책은 수군의 재정비를 위한 변화가 시작될 쯤 건의되었다.

정지는 수많은 해전에서 왜구를 격파하는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수군 정비를 통해, 전문화된 수군의 양성과 전술 훈련의 보급으로 수군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구와의 전투를 단번에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지도 1382년의 진포해전을 치르기 이전에는 陸戰에서 몇 번의 승리를 했을 뿐 海戰에서의 두드러진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 정지의 방왜책은 전문 수군의 양성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다.

정지가 내세웠던 방왜책에는 전문적인 수군의 양성과 더불어 전함의 건조가 있었다. 1383년(禎王 9) 정지는 觀音浦 전투 이후 각 도에 戰艦을 만들어 왜구에 대비할 것을 건의하여 허락을 받는다.²³⁾ 정지가 전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高麗史』 기록에서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난다. 열전에는 정지가 어떠한 전함을 만들어 왜구를 방비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이 빠져있다. 후대 『朝鮮王朝實錄』에 정지의 전함을 평가하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정지의 전함 건조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⑥ 全羅道 都觀察使 趙璞이 도평의사사에서 보고하였다. “죽은 判開城府事 정지가 처음으로 戰艦을 만들어서 능히 왜구를 막아내어 그 덕택으로 지금 바닷가에 있는 백성들이 옛 날과 같이 생업을 회복하였다 하오니, 그 집을 旌表하여 후세를 권장하소서.”²⁴⁾

21) 『高麗史』 권115, 列傳, 禹玄寶.

22) 『高麗史』 권44 恭愍王 22년 11월.

23) 『高麗史』 권113, 列傳26, 鄭地.

위의 인용문 ⑥에서는 정지가 처음으로 전함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또한 『太宗實錄』에는 정지가 처음으로 兵船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처음으로 전함이 만들어졌다는 기록은 정지의 전함이 기존의 전함과는 어떠한 차이를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정지가 전함을 건조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몇 척의 전함을 건조하게 되는지, 어떠한 형태의 전함을 건조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함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기존의 전함을 보수하여 전투력을 강화했다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수군의 재건에 있어서 수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전함 건조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정지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처음으로 정지가 건조했다는 전함은 아마도 화포가 장착된 전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火燭都監의 설치 이후, 해상 전투에서 전함에 화포를 장착해 싸워 큰 전과를 이뤘던 관음포 전투 이후 정지는 화포를 장착한 전함 건조에 힘을 쏟았던 것이다. 이것이 정지의 수군력 강화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었지 않았을까 한다. 이전의 전함들과는 다른형태로, 화포를 포함한 화약무기를 장착하여 새로운 전술적 운용이 가능한 전함을 건조했다는 것은 수군의 가장 큰 업적이 되었다. 그것이 후대에 와서 정지가 처음 전함을 건조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지의 화포를 장착한 전함 건조는 당대와 후대에 걸쳐 그 기여도가 상당히 컸을 것이다.

⑦ 현석규가 말하기를, “船軍의 창설이 鄭地에게서 비롯되었는데, 근일에 정지와 崔茂宣의 자손을 錄用할 것을 명하였으니, 최무선은 처음으로 火砲를 만드는 것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들이 모두 功이 있으니, 그 자손은 마땅히 빨리 敍用하여야 합니다.”²⁵⁾

인용문 ⑦에서는 정지를 船軍의 創設者라고 표현하고 있다. 선군이라 함은 읽히는 대로 해석한다면 수군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수군이라는 말이 이미 사용되어져 왔다. 그럼, 굳이 ‘선군’이라는 표현을 왜 사용하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군이 배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대를 뜻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전함 부대가 된다. 선군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선군이 가지는 포괄적인 의미 중에 전함을 포함시킨다면, 정지는 전함의 창설자가 되고, 그 전함은 앞서 말한 화약무기를 장착한 새로운 형태의 전함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 수군의 전력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 수군 전력 증강의 전기가 된 것은 화약제조 기술과 화약무기의 개발이었다.²⁶⁾ 고려는 여원연합군의 일본 원정 당시 원의 군사가 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왜구 격퇴를 위해 독자적인 화약제조에 노력을 기울였다. 명은 고려의 화약 요청에 대해 화약의 원료는 제공하기로 하였

24) 『太宗實錄』 권6, 太祖 3년 9월 甲寅

25) 『成宗實錄』 권79, 成宗 8년 4월 癸丑.

26) 김기섭, 「고려 후기 최무선의 생애와 화약제조」,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294쪽.

으나, 화약제조법은 전수하지 않았다. 崔茂宣은 명의 화약 원료를 통해 화약의 제조하는데 도움을 얻었다. 이후 최무선은 원의 염초제조 기술자였던 李元으로부터 염초제조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고 화약 제조기술을 익힌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377년(우왕 3) 판사 최무선의 건의로 火燭都監을 설립하여 화약 제조를 촉진하였다. 화약제조 성과는 3년 후 왜구의 함선이 진포에 들어왔을 때 최무선과 沈德符, 羅世 등이 나아가 왜선을 토벌했었던 진포 해전에서 그 위력이 나타났다.²⁷⁾

고려 수군의 재정비는 그 과정이 전함의 건조를 시작으로 수군의 재창설에서 화통도감의 설치의 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되어 갔다.²⁸⁾ 왜구가 완전히 평정되지는 않았지만, 고려 수군의 재정비와 화기의 도입은 왜구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정지의 방왜책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고려 말 수군의 정비는 조선 초기의 수군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 觀音浦 전투와 對馬島 정벌 건의

수군의 총지휘관인 海道元帥에 오른 정지는 왜구와의 전투에 출전하여 대부분 승리를 이끌었고, 왕으로부터 9번의 포상을 받으며²⁹⁾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 무장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였다. 해상에서 처음으로 화포를 장착한 전함을 海戰에 사용하였고, 탁월한 전술과 전략이 더해져 가장 큰 승리를 거둔 觀音浦 전투는 정지가 치른 수많은 전투 중에서도 그 意義가 다르다 할 수 있다. 대승을 거둔 관음포 전투는 고려사에서 崔瑩의 鴻山大捷, 李成桂의 荒山大捷과 더불어 왜구를 크게 격파한 3대첩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음포 전투에 대해 열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⑧ 合浦元帥 柳漫殊가 위급함을 알리자 정지는 밤낮으로 진군하였다. 南海 觀音浦에 이르러 우리 군세를 정찰하고는 아군이 약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마침 비가 내리자 정지는 智異山 神祠에 사람을 보내 기도했더니 비가 그쳤다. 정지가 하늘에 절을 하자 얼마 뒤에 바람이 아군에 유리하게 바뀌었다. 적은 큰 배 20척을 선봉으로 삼고 배마다 강한 군사 140명씩을 태우고 있었다. 정지가 진공해 먼저 그들을 쳐부수자 시체가 바다를 덮었다. 또 남은 적을 활로 쏘며 크게 적을 격파했고 화포를 쏘아 적선 17척을 불태웠다. 전투가 끝난 후 정지가 將佐들에게 “전쟁터에서 많은 적을 격파했지만 오늘처럼 통쾌한 적은 없었다.”고 토로했다.³⁰⁾

27) 『高麗史』 권134, 列傳 권47, 禡王 6년 8월.

28) 이영, 「고려말 수군의 재건과 해양 지배권의 장악」, 『동북아문화연구』 48, 2016 9월, 56쪽.

29) 『高麗史』 권113, 列傳26, 鄭地.

30) 『高麗史』 권113, 列傳26, 鄭地.

위 인용문 ⑧의 관음포 전투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왜구가 전함 120척을 이끌고 경상도로 침입해오자 合浦元帥 柳曼殊가 정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정지가 전함 47척을 이끌고 섬진에 도착하였는데, 적은 벌써 남해 관음포에 이르렀다. 왜구는 20척의 큰 배를 선봉으로 삼고 강한 군사 140명씩을 태우고 있었으나, 정지는 화포를 사용하여 17척의 왜선을 불태우며 크게 승리한다. 전투가 끝난 후 정지는 “전쟁터에서 오늘 처럼 통쾌한 적은 없었다.”고 하니, 전투 상황이 고려에 유리하여 쉽게 대승을 거두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화포를 사용한 전투가 이전의 전투 상황과 달랐음을 의미한다.

화포의 사용은 고려의 수군에게 왜구와의 해전에 대한 큰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을 것이다. 1380년(우왕 6) 鎭浦 전투에서 왜구의 선박 500척을 화공으로 격퇴하고, 1383년(우왕 9)에는 정지가 관음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화포의 사용은 수군의 승률을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진포 전투는 최무선이 만든 화약 무기들을 사용해 왜구를 全燒시켰다. 이는 육지에서 전투를 벌이며 왜구를 막아섰던 고려군이 해상에서 왜선을 상대로 水戰을 가능하게 한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진포 전투는 모든 배를 바닷물에 묶어 정박하고 있는 적선을 향한 일방적인 화포의 공격이었으므로 고려 수군의 해전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주저된다. 하지만 정지가 이끈 관음포 전투는 전함 47척으로 120척의 큰 배로 구성된 왜구의 선단과 해전에서 올린 전과는 주목할 만하다. 관음포 전투는 해전에서의 이동 표적을 화포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전투라 평가받고 있다. 특히 17척의 적선을 화포 공격으로 불태웠다는 것은 화포 공격의 효과를 잘 말해주는 부분이다. 정지가 전투에 앞서서 비를 멈춰 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과, 바람의 방향을 살핀 부분 등이 모두 불을 이용하는 화포의 사용에 여의치 않았던 것을 걱정했었기 때문인 것이다. 화포의 사용이 당시 고려 수군의 전력에 얼마나 큰 변화를 주었는지는 다음의 표를 통해 알 수가 있다.

<표2> 1373년부터 1377년까지의 대왜구 전투 승율³¹⁾

분류	건수	승/패	승율%
해전	4	승3 / 패1	승75%
적의 기습	4	승0 / 패4	승0%

<표3> 1377년부터 1392년까지의 대왜구 전투 승율³²⁾

분류	건수	승/패	승율%
해전	15	승14 / 패1	승93%
적의 기습	1	승0 / 패1	승0%

위의 <표2>은 화통도감 설치 이전의 해전 상황인데, 총 8번의 왜구와의 전투에서 3번 밖에 이기지 못하였다. 하지만 <표3> 화통도감 설치 이후, 고려 수군은 왜구와의

31) 이영, 앞의 논문, 2016, 9월, 59쪽.

32) 이영, 앞의 논문, 2016, 9월, 60쪽.

전투에서 총 16번 싸워 1번을 제외하고 모두 이기고 있다. 이는 약 93.3%의 승률에 해당한다. 화통도감 설치 이후의 해전 가운데 특히 진포 전투와 관음포 전투의 전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진포 전투나 관음포 전투 이후 왜구가 완전히 진압된 것은 아니었지만, 화포를 비롯한 화약무기를 전함에 장착한 고려의 수군은 왜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음은 분명했다. 전함 건조와 더불어 화통도감의 설치는 왜구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이후 정지는 전투 중에 얻은 병으로 잠시 관직을 떠나게 되었다. 정확한 병명은 알 수가 없으나 배를 타고 수많은 전투를 치렀던 정지는 전쟁 중에 얻은 여독이 병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병이 완쾌되자, 1383년(우왕 9) 11월에는 知門下府事에 임명되어 양광, 전라, 경상도에 각각 전함을 만들어 왜구의 침략에 대비할 것을 건의해 허락받았다. 정지는 왜구에 대한 방책을 늘 잊지 않고 있었다.

고려 조정은 왜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했음에도 왜구의 평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음 정지가 공민왕 23년에 올린 상소문에서 정지는 5년 내에 왜구를 소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없이 전장에 나섰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정지로서는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3년 뒤 정지는 왜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1387년(우왕 13)에 대마도 정벌을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⑨ “왜는 온 나라가 도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반도들이 對馬島와 壹岐島에 웅거해 가까운 우리 동쪽 변방으로 무시로 들어와 노략질을 하는 것입니다. 대군을 동원해서 먼저 여러 섬들을 공격해 그 소굴을 전복시킨 다음, 일본에 공문을 보내 빠져 달아난 적을 쇄환해 귀순시킨다면 왜구의 우환이 영원히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수군은 모두 해전에 익숙하니, 적절한 때에 순풍을 기다렸다가 기동한다면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³³⁾

정지는 상소문을 통해 왜구의 주체가 대마도를 소굴로 삼고 있으므로 그 대책도 대마도를 정벌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⁴⁾ 정지는 여원연합군의 일본 동정이 실패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였으므로 우리 수군의 전력을 내세운다면 대마도 정벌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정지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마도 정벌은 2년 뒤 朴葦에 의해 이루어진다.³⁵⁾

⑩ 慶尙道元帥 朴葦가 병선 1백 척을 거느리고 대마도를 쳐서 왜적의 배 3백 척과 廬舍를 불살라 거의 없었다. 元帥 金宗衍, 崔七夕, 朴子安 등이 잇달아 이르러 사로잡혀갔던 백성 1백여 명을 찾아 돌아왔다.³⁶⁾

33) 『高麗史』 권113, 列傳26, 鄭地.

34) 이영,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 혜안, 2011.

35) 『高麗史』, 권137, 列傳 昌王 원년 2월.

36) 『高麗史節要』 권34, 恭讓王 원년 2월.

1389년(창왕 원년)에 慶尙道元帥 朴葦가 병선 100여 척을 이끌고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여 적선 300척과 집들을 불태우고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나라 사람 100여명을 구하여 돌아오는 전과를 올렸다. 전과가 컸다는 것은 왜구의 피해도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후 왜구의 침입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정지의 대마도 정벌의 건의가 있는 뒤, 2년이 지난 후에야 정벌이 이루어진 데에는 당시 명과의 관계가 東征보다 더 시급했기 때문이다. 명과 고려는 鐵嶺衛 문제로 이전부터 서로 대립해 온 상황이었다. 이에 고려는 명과의 관계 속에 요동 정벌을 단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李成桂가 이끈 遼東征伐軍이 威化島에서 回軍함으로써 명과의 불편했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며 당시의 상황은 점차 안정이 되어갔다. 이런 상황에 힘입어 고려는 드디어 대마도 정벌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정지가 탁월한 전략가였음을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경인년 왜구의 침입 이후 고려는 단 한 번도 대마도 정벌을 시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지는 정확히 왜구의 근거지가 대마도와 일기도임을 파악했고, 동정을 건의하였던 것이다. 정지의 일본 동정이 있었던 다음해, 1388년(우왕 14), 왜구는 요동 원정에 따라 국방력이 북방으로 이동하여 남쪽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다시 침략했다. 정지의 대마도 정벌이 이루어졌다면 바로 다음해 쳐들어온 왜구의 피해는 없었을 것이었다.

고려 말 왜구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이를 위한 대응책으로 고려는 수군의 정비와 더불어 성곽 축조, 왜인들에 대한 회유책, 사신 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왜책들을 세우고 왜구 격퇴에 끊임없이 저항해 나아갔으나, 끝내 왜구 평정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대마도 정벌은 麗末鮮初의 수군의 재정비를 통한 수군력의 증강과 화약무기의 발달이 있었음으로 가능하였다. 역사적으로 정지가 제기한 대마도 정벌은 옳은 선택이었다. 정지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대마도 정벌의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아니지만, 대마도 정벌을 단행하고자 주장했던 것은 후대 조선의 대마도 정벌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정지는 왜구 침략의 근원적인 문제를 없애려고 했던 대마도 정벌의 선구자였음이 틀림없다.

5. 김저사건, 윤이·이초사건과 政治的 肅清

당시 수군의 최고 지휘자로서 큰 전공을 남긴 정지에게도 고려 말의 격동기에 따른 비운은 지나칠 수 없었다. 1388년(우왕 14) 정지는 安州道都元帥로 李成桂의 휘하에 소속되어 요동정벌군에 편성되었고, 이성계를 따라 威化島에서 回軍을 했다. 정지는 1389년(恭讓王 원년) 金佇와 邊安烈 등이 禍王을 복위시키고자 음모하다 발각된 일명 김저사건에 연루되어 외지로 유배되고, 1390년(공양왕 2)에는 尹彝·李初 사건에도 관련이 있는 인물로 지목되어 유배되었다. 위화도 회군을 통해 정권을 잡은 이성계는 정지를 이 두 사건에 연루시켜 제거하고자 했다. 정치적 역모사건에 연루된 직접적인 원

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또한 정지가 이성계의 私田改革에 반대를 했는지도 남겨진 기록이 없다. 일평생 왜구 격퇴에 앞장서며 수군의 수장으로서 조정의 관료들과 백성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정지의 존재는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을 것이고, 때문에 정지를 역모사건에 연루시켜 제거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이성계는 무장으로서의 자신과 비슷한 행보를 하고 있던 정지의 군사적 영향력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

고려 말 위화도 회군 이후 중앙 권력을 잡게 된 이성계는 사전개혁과 김저사건, 윤이·이초사건으로 이어지는 정변을 이용하여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성계는 자신의 개혁에 반대한 세력들을 제거하며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더 나아가 왕조교체를 이루며 고려 말 정치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다. 당시 고려 말 수군의 최고 지휘관으로 왜구 격퇴에만 힘을 쏟았던 정지는 이성계의 정변에 의해 유배되었고, 짧은 나이에 병사하였다.

김저사건과 윤이·이초사건은 조선 개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다. 정지가 회군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숙청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그 과정은 꼭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정지는 위화도 회군 당시 우군도통사였던 이성계와 같은 우군의 안주도도원수였다. 정지는 위화도 회군 이후에도 양광전라경상도지휘사로서 왜구의 격퇴를 위해 전장으로 나아가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이성계는 정지의 이런 명성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정지를 일련의 사건들에 연루시켜 정계로부터 제거하려 했다.

이성계가 본격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김저사건’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위화도 회군 이후 우왕이 폐위되고 창왕이 즉위하였는데, 1389년(창왕 원년) 11월에 일어난 일명 ‘김저사건’으로 이성계에 의한 정권교체가 또다시 이뤄지며 공양왕이 즉위한다. 김저사건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⑪ 前 大護軍 金佇, 前 副令 鄭得厚가 몰래 黃驪에 가서 우왕을 알현하였다. 우왕이 말하기를, “한 명의 力士만 얻어 李侍中을 해치기만 한다면, 내 뜻이 이루어질 만할 것이다. 내가 본디 禮儀判書 郭忠輔와 잘 지냈으니, 너희들은 가서 그와 도모하라.”고 하며 곽충보에게 검 한 자루를 남기며 이르기를, “이번 팔관회 날이 거사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김저가 와서 곽충보에게 고하니, 곽충보가 겉으로 승낙하는 듯 하고서는 太祖에게 급히 고하였다.³⁷⁾

위의 인용문은 김저와 정득후가 유배 중이던 우왕을 만났는데, 우왕은 이들에게 곽충보에게 칼을 전하여 함께 이성계를 제거하라 하였다. 김저는 이를 곽충보에게 알렸고, 곽충보는 이를 이성계에게 알렸다. 이것이 김저 사건의 전말이다. 김저사건은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우왕과 최영에 관련된 인물들의 숙청으로 이어진다.

37) 『高麗史』, 권137, 列傳 昌王 1년 11월.

김저사건이 일어나고 김저의 문초가 시작된 지 단 하루 만에 창왕이 폐위되고 공양왕이 옹립되었다.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없었다. 이미 계획된 틀에 딱 맞춰 들어가듯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곽충보는 이성계의 오랜 심복이었다. 후대에 실제로 곽충보는 조선의 開國原從功臣으로 책봉된다.³⁸⁾ 곽충보와 이성계의 관계를 우왕이 모를 리 없는데, 곽충보에게 이성계의 제거를 부탁하였다는 내용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政敵 제거라는 짜여진 틀에 사건의 내용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

김저는 邊安烈, 李林, 禹玄寶, 禹仁烈, 王安德, 禹洪壽 등이 우왕을 맞이하기 위해 내응했다고 자백하며,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정지 등을 비롯한 27명이 유배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건에 어찌 연루가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정지는 위화도 회군 당시 이성계와 같은 우군의 安州道元仕였다. 이성계와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그 관계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김저사건을 계기로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즉위시킨 이성계는 우왕과 창왕에 관계되는 인물들을 정계에서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였으나, 정지와 같은 무장을 제거함으로써 그 목적은 이뤄냈다. 반대세력의 숙청을 위해 연이어 1390년(공양왕 2) 5월 尹彝·李初사건이 발생하였다.

⑫ 王昉과 趙胖이 명에서 돌아와 왕에게 아뢰기를, “坡平君 尹彝와 中郎將 李初라는 자가 와서 황제께 호소하기를, 「고려의 이시중이 王璠를 임금으로 세웠는데, 왕요는 종실이 아니며 이시중의 姻親입니다. 왕요와 이시중이 군사를 움직여 장차 상국을 범하려고 모의하였는데 재상 李穡 등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쫓겨 있는 재상 등이 몰래 우리를 보내어 천자께 와서 고하는 것입니다.」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親王에게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토벌하여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³⁹⁾

위의 인용문은 공양왕 즉위를 명에 고하러 갔던 사신 왕방과 조반이 5월에 고려에 돌아와 공양왕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이를 尹彝·李初 사건이라 부른다. 윤이·이초가 명에 가서 이성계가 그의 인척인 공양왕을 즉위시키고 명을 침범하고자 하였으며, 그것에 반대한 사람을 유배를 보냈다고 하면서, 유배된 재상들이 자신들을 명에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명 황제가 고려를 토벌하도록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윤이·이초사건은 명에 다녀온 사신이 왕에게 보고한 것으로 황제의 말을 전한 禮部의 말을 사신이 듣고 와서 전한 내용이 전부였다.⁴⁰⁾ 이 사건은 외교문서에 의한 것이 아닌 전언이 당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관련 인물들이 죽거나 유배당하는 특이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성계에 의해 대대적인 반대파의 숙청이 시작되었고, 이성계는 군

38) 『太祖實錄』 권2, 太祖 원년 10월 丁巳.

39) 『高麗史』 권115, 列傳28, 李穡.

40) 이형우, 「공양왕대 윤이·이초 사건」, 『포은학연구』 18, 2016, 171쪽.

사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윤이·이초 사건의 관련자들은 특히 무장들이 많았다. 이는 곧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김저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대부분 윤이·이초 사건에도 연루되었다. 李琳, 李貴生, 鄭地, 李穡, 禹玄寶, 禹仁烈 등이 그들이다. 또한 다른 일로 유배 중이던 李崇仁과 權近도 여기에 연루되었다. 윤이·이초사건에는 당시 권력을 행사했던 권문세족들과 고위 관직자들이 연루되었고,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활동하던 당시의 무장들도 다수 연루되어 있었다.⁴¹⁾ 김종연은 왜구 격퇴 공을 세워 원수에 역임했으며, 崔公哲, 洪仁桂, 尹有麟, 陳乙瑞, 郭璇, 崔七夕 등도 모두 왜구 격퇴에 공을 세운 인물들이었다. 사건의 처리과정은 김저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제거 대상이 되면 유배를 가게 되었고, 제대로 된 국문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지는 김저사건으로 유배 중에 또다시 윤이·이초 사건에 연루되어 청주에서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였다.

1391년(공양왕 3) 정지는 회군의 공으로 이등공신이 되었고, 녹권과 토지 50결을 하사받았다.⁴²⁾ 요동정벌 당시 이성계와 같은 우군에서 안주도도원수로 출전했던 정지는 이성계의 측근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저사건과 윤이·이초 사건에 연루되며 정지는 정계에서 제거되었다. 당시 이성계의 정변에 휘말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여러 사건들에 연루되어 유배되고 국문을 당하였다. 정계에 진출한 뒤 항상 고위 관직에 임명되며, 일평생을 왜구 격퇴에 힘써온 정지는 당시 이성계에게 경계해야 할 무장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정지가 이성계의 사전개혁에 반대했었던 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왜구 격퇴의 전공을 세우며 수군의 수장으로 자리매김한 정지는 이성계에게 커다란 위협감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이에 정지는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제거되었다.

조선 건국 직후 全羅道都觀察使 趙璞은 당시 이렇게 상소하였다.

⑬ “죽은 판개성부사 정지의 공이 커서 한 때 유명하였고, 그 덕택으로 지금 바닷가에 있는 백성들이 옛날과 같이 생업을 회복하였다 하오니, 그 집을 정표하여 후세를 권장하소서.”⁴³⁾

이성계는 조박의 건의를 허락하였다. 이성계는 역성혁명을 통해 조선을 건국했던 당 위성을 백성들에게 인정받고자 민심을 포용하는 의미에서 정지와 같은 충신을 선양하고자 했던 이면이 있었다. 또 세조 때는 장군 16명의 무성묘를 세워 배향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⁴⁴⁾ 이때 정지가 포함이 되었다. 정지는 배향의 자리에 오를 만큼 그 공덕이 컸음을 후대에 인정받고 있었다. 배향은 종묘에 공신을 세웠던 사람의 신주를 모시

41) 조계찬, 「조선개국과 윤이·이초사건」,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 1987, 452쪽.

42) 『高麗史』 권113, 列傳26, 鄭地.

43) 『太祖實錄』 권6, 太祖 3년 9월.

44) 『世祖實錄』 권3, 世祖 2년 3월.

는 일로, 정지의 공신으로서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록 정변에 의해 정치적 숙청을 당했던 정지였으나, 그의 충직했던 생애는 후대에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지는 1391년(공양왕 3) 회군의 공으로 이등공신으로 선정되고, 옥에서 풀려나 명예회복에 나섰으나 光州로 은퇴를 해 政界에서 물러나 살게 되었다. 그 해 9월 判開城府事에 임명이 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병사했다. 죽을 때 그의 나이는 마흔 다섯이었다.⁴⁵⁾ 병사의 이유는 밝혀진 바가 없다. 정지는 왜구 격퇴를 위해 늘 바다에서 생활해 왔고, 수많은 전투를 치루며 쌓여진 여독을 안고 살아야했다. 아직 젊고 할 일이 많았던 장군이었지만, 고려 말 혼란기의 정변으로 옥중 생활까지 이어오다 그 복잡한 여독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후대 정지의 업적이 인정되며, ‘景烈’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그의 후손을 敍用하라는 명이 내려졌다.⁴⁶⁾

6. 맺음말

정지는 1374년 태어났으며, 본관은 나주이다. 정지는 어려서부터 큰 뜻을 품어 독서를 즐겼으며 대의에 통달했다. 항상 책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니, 후대에 儒將으로 불렸던 정지의 면모를 가늠할 수 있다. 정지가 어떠한 경로로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정지는 1374년 中郎將에 있었고, 그것이 기록상의 처음 관직이다.

공민왕 대에 李僖와 함께 防倭策을 내세우며 정지는 수군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관직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왜구의 침략은 극에 달해 약탈의 수준을 넘어 고려 조정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규모는 매우 커져 있었고, 왜구의 침략 양상과 범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었다. 이런 시기에 정지는 海道에서 나고 자란 사람을 훈련시켜 왜구와의 전투를 준비하겠다는 수군정비에 관한 상소를 하였다.

정지는 수군의 양성과 수군 훈련의 중요성을 알리며 수군의 재정비를 건의하였다. 전문화된 수군의 양성과 전술 훈련의 보급으로 수군의 전투력을 향상시켰음에도 왜구 평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지의 방왜책은 수군의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함 건조로 이어졌다. 후대의 기록에는 정지가 처음으로 전함을 건조했다고 나타난다. 이는 기존의 전함과 어떠한 차이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지가 건조했다는 전함은 아마도 화포가 장착된 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화통도감의 설치 이후, 관음포 전투에서는 처음으로 전함에 화포를 장착해 해상에서 싸워 크게 승리하였다. 관음포 전투 이후 정지는 화포를 장착한 전함 건조에 힘을 쏟았다. 이것이 정지의 두 번째 방왜책이었다.

45) 『高麗史』 권113, 列傳26, 鄭地.

46) 『太宗實錄』 권5, 太宗 3년 5월.

화포를 장착한 전함을 이끌고 해상에서의 전투 중 가장 큰 전과를 낸 觀音浦 전투는 정지의 수많은 전투 중에서도 그 의의가 다르다 할 수 있다. 탁월한 전술과 전략이 더해져 대승을 거둔 관음포 전투는 고려사에서 崔瑩의 鴻山전투, 李成桂의 荒山전투와 더불어 왜구를 크게 격파한 3대첩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지는 화약무기의 사용법을 정확히 익혀 해전에서의 관음포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하지만 정지가 왜구와의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왜구의 평정을 이루지 못하니 우왕은 이를 책망하였다. 이에 정지는 대마도 정벌을 건의했다. 정지의 대마도 정벌은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후 1389년 박위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지는 왜구 평정에 있어서 탁월한 전략가였으며, 왜구 침략의 근원적인 문제를 없애려고 했던 대마도 정벌의 선구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수군의 최고 지휘자로서 큰 전공을 남긴 정지에게도 고려 말의 격동기에 따른 비운은 지나칠 수 없었다. 정지는 1388년 安州道都元帥로 이성계의 휘하에 소속되어 요동정벌군에 편성되었고, 이성계를 따라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위화도 회군 후 이성계의 정변으로 이어지는 김저사건과 윤이·이초 사건에 연루되어 정지는 유배되었다. 정지가 정치적 역모사건에 연루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일평생 왜구 격퇴에 앞장서며 수군의 수장으로서 백성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정지의 존재는 이성계에게 경계해야할 대상이었고, 이에 이성계는 정지를 포함한 위협적인 세력을 역모사건에 연루시켜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정지는 1391년 회군의 공으로 이등공신에 선정되고, 옥에서 풀려나 명예회복에 나섰다. 그러나 광주로 은퇴해 정계에서 물러나 살게 되었다. 그해 9월 判開城府事로 임명이 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병사했다. 그의 나이 마흔다섯으로, 병사의 이유는 밝혀진 바가 없다. 정지는 왜구 격퇴를 위해 늘 바다에서 생활해 왔고, 수많은 전투를 치루며 쌓여진 여독을 안고 살아야했다. 아직 젊고 할 일이 많았던 장군이었지만, 고려 말 혼란기의 정변으로 옥중 생활까지 이어오다 그 여독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후대 정지의 업적이 인정되며, ‘경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그의 후손을 서용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참고문헌

1. 저서

- 김재근, 『우리 배의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韓國船舶史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박가영,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오중록, 『여말선초 지방군제 연구』, 국학자료원, 2014.
 이 영, 『잊혀진 전쟁 왜구,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에스피메테, 2007.
 ———,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 해안, 2011.
 중앙일보사 편집부, 『한국성씨대백과』, 중앙일보사, 1989.
 『韓國의 甲冑』, 文化財管理局, 世信文化社, 1987.
 홍영의, 『高麗末 政治史 研究』, 해안, 2005.

2. 논문

- 구산우, 「고려 말 성곽 축조와 향촌사회의 동향」, 『역사와 경제』 75, 2010.
 ———, 「고려 치소성 건설에 동원된 지방군에 관한 새로운 기와 명문」, 『木簡과 文字』 21, 2018.
 ———, 「일본 원정, 왜구 침략과 경상도 지역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22, 2007.
 김기섭, 「14세기 왜구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 『한국민족문화』 9, 1997.
 ———, 「고려후기 최무선의 생애과 화약제도」,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김당택, 「고려 말 이성계의 정적」, 『한국중세사연구』 31, 2011.
 김정자 외, 「고려시대 갑주에 대한 고찰」, 『복식』 29, 1996.
 나종우, 「왜구」,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박종기,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 『한국중세사연구』 24, 2008.
 ———, 「고려말 정치사의 전개와 변안열」, 『대은 변안열의 생애와 업적』, 지식산업사, 2013.
 송정현, 「정지장군 연구」, 『호남문화연구』 25, 1997.
 신성재, 「고려 말 정지의 해방론과 수군활동」, 『이순신연구논총』 23, 2015.
 오중록, 「왜구의 침입」, 『한국해양사3』, 한국해양재단, 2013.
 ———, 「고려 말의 도순문사」, 『진단학보』 62, 1986.
 이강욱, 「고려 말 수군체계의 정비와 성과」,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 영, 「고려 말 수군의 재건과 해양지배권의 장악」, 『동북아문화연구』 48,

2016,9월.

- _____,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 _____, 「庚寅年 倭寇와 일본의 국제정세」, 『국사관논총』 92, 2000.
- _____, 「홍무제의 화약·화포 지원과 고려 수군의 재건」, 2016,1월.
- 이형우, 「고려 말 정치적 추이와 김저사건」, 『포은학연구』 16, 2015.
- _____, 「공양왕대 윤이·이초사건」, 『포은학연구』 18, 2016.
- 임용환, 「고려 후기 수군 개혁과 전술 변화」, 『군사』 54, 2005.
- 장준혁, 「여말선초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의 대마도 정벌」,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정두희, 「高麗末期의 添設職」, 『진단학보』 44, 1977.
- 조계찬, 「조선건국과 윤이·이초사건」, 『斗溪李丙燾博士九旬記念韓國私學論叢』, 1987.
- 최성욱, 「14세기 왜구 침구와 고려의 대응」,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최정환, 「高麗 祿俸制의 運營實態와 그 性格」, 『慶北史學』 2, 1980.
- Pelliot Paul 저, 민현구 번역, 「高麗史에 실려 있는 蒙古語」, 『白山學報』 第4號, 1968.
- 한정훈, 「고려시대 ‘해항도시’나주에 관한 시론」,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9, 2018.
- 홍영의, 「고려 말 군제개편안의 기본방향과 성격」, 『군사』 54, 2002.

「고려말 鄭地의 생애와 군사활동」 토론문

이 은 아 (창원대)

최근 한반도 연안해역을 포함한 태평양 해역이 자원개발의 중요성과 더불어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이 지역을 둘러싼 각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을 방어하기 위한 각국의 군사력 또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이다. 시대를 거슬러 고려시대 외적 방어의 일환으로 수군 정비를 주장하며 화약 무기를 장착한 전함을 건조하여 전투에 활용한 정지 장군의 탁월한 전략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본 발표문은 고려 말 왜구 격퇴의 선봉에 있었던 정지 장군의 생애와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정지 장군이 제시한 방왜책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해상에서의 해전이 가능한 수군의 양성 두 번째는 관음포 해전 이후의 전함 건조 세 번째가 대마도 정벌 건의에 대한 것이다.

토론자는 고려 말 정지장군의 생애에 대하여 본 발표문을 접하며 알게 되었고 지식확장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자 발표자의 첨언을 부탁드립니다.

1. 유장으로서의 평가

후대의 기록인 『世宗實錄』과 『中宗實錄』에 정지를 儒將으로 평가하는 기록들은 조선 전기 관료들의 성리학적 관점에서 해석된 것은 아닌지 단지 품모가 웅위하고 지략이 있다 또는 어려서부터 큰 뜻을 가지고 독서와 학문에 정진하였다고 하여 儒將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전투에 임하여 전략전술 면에서 유장으로서의 면모가 보였는지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2. 공민왕 원년에 이색이 올린 방왜책이 당시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 이유

1350년(충정왕 2)의 왜구를 가리켜 ‘庚寅年の 왜구’를 고유명사처럼 사용할 정도로 왜구의 침입이 증폭되는 시기에 1352년(공민왕 원년)에 李穡이 올린 防倭策이 당시의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이것이 홍건적의 난과 같은 북방정세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공민왕 11년까지 부원세력의 처형이 계속될 정도로 부원세력의 존재가 강해서였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3. 관음포 해전 이전과 이후 전함의 차이

본 발표문에서 정지가 전함의 창설자가 되고 화약무기를 장착한 새로운 형태의 전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다른 관련 논문에 의하면 1372년(공민왕 21)부터 1374년(공민왕 23)까지를 수군정비 1차시기로 보아 이 때에 수군에게 필요한 함선, 화포, 그리고 군역의 확보 등 물질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때의 함선과 1383년(우왕 9) 관음포 전투 이후의 함선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4. 조선 건국 직후 조박의 상소

조선 건국 직후 全羅道都觀察使 조박이 정지의 공을 높이는 상소를 올릴 수 있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이유는 서술을 통해 이해할 수 있고 다만 정지의 주 활동 지역이었던 전라도 지역 자료에 어떠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조박이 상소를 올린 것인지 궁금하다.

고려 말 수군의 최고 지휘자로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정지가 1389년(공양왕 원년)의 김저사건과 1390년(공양왕 2)의 윤이·이초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고, 젊은 나이에 병사하였다. 이성계의 휘하에 소속되어 요동정벌군에 편성되었고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였던 일등 공신 정지가 정치적으로 숙청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몹시도 궁금하다. 이성계가 두려워 할 정도의 위협적인 존재라는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는 앞으로의 계속된 연구로 밝혀지길 바란다. 그리고 일평생 왜구 격퇴에 앞장서 조정의 관료들에게 신망을 얻고 백성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서술이 있는데 정지가 활동한 지역에서 앞으로 정지장군과 관련된 단편적인 비문이라도 발견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여성, 바지를 입다: 빅토리아기 합리주의 복식개혁운동

배혜정 (창원대)

1. 머리말	3. 치마바지(Divided Skirts)와 ‘합리주의복식협회’
2. ‘블루머’(Bloomers)와 페미니스트	4. 맺음말

1. 머리말

1880년대 영국에서 합리적 복식개혁을 이끈 레이디 하버튼은, 의복은 “자연이 부여한 두 다리”에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¹⁾ 크게 유별날 것 없는 이 발언은 여성용 바지를 두고 수많은 비판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나온 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빅토리아 시기 유행한 여성 패션은 바지는커녕 자연스런 여성의 몸과도 한참 거리가 먼 형태였기 때문이다. 19세기 전반기부터 가는 허리와 풍성한 치마(Romantic Style: 1828-48)를 추구하기 시작해 중엽에는 크리놀린을 이용해 최대한 치마를 부풀리는 스타일(Crinoline Style: 1848-68)이 유행을 지배했으며, 후반에는 버슬 장식으로 엉덩이를 과장되게 부풀리고 치마단이 길게 드리워진 스타일(Bustle Style: 1868-1890)이 바통을 이어받았다.²⁾ 스타일에서는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대체로 여성복은 코르셋을 비롯한 다양한 보정속옷을 겹겹이 입어 허리를 조이고 상의는 최대한 드러내면서 하의는 레이스 같은 많은 장식이 달린 폭이 넓거나 단이 긴 치마로 구성되었다.³⁾ 이는 19세기 부르주아 사회에서 의복의 계급적 성격보다 젠더적 성격이 더 두드러지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여태껏 ‘귀족의 몸’과 관련되었던 패션의 과시적 개념이 점차 잠재적으로 모든 계층의 여성에게 적용되는 ‘여성미의 이상’으로

1) *Pall Mall Gazette*, Thursday 30 April, 1885.

2) Anne Hollander, *Seeing through Clothes* (New Yor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p. 151-152.

3) Valerie Steele, *The Corset: A Cultural History*,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1, 5th printing, 2007), p. 36.

전환되어갔고⁴⁾, 이에 따라 남성복이 수수하고 간소한 데 반해, 여성복은 화려한 색상과 장식 같은 귀족 패션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 특징을 띠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코르셋이 더 조여지고 치마가 더 부풀어질수록 여성 패션에 대한 비판 역시 날로 높아져갔다. 19세기 중반 가장 먼저 집중포화를 받은 패션 품목은 길고 풍성한 치마였다. 언론에서는 남녀가 부푼 치마 때문에 멀쩡이 떨어져 담소를 나누거나 여성에게 차를 건넬 때 긴 막대기를 이용하고, 바람에 치마가 뒤집히는 광경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한 캐리커처가 곧잘 실렸다.⁵⁾ 실제로도 당시 유행하는 드레스는 여성 몸을 구속했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웠다. 치마를 부풀리기 위한 보정속옷으로 처음엔 페티코트가 허리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고, 곧 더 가벼운 케이지 크리놀린(cage crinoline)이 나왔지만 너무 커서 이동이 불편하고 쉽게 흔들렸다. 긴 치마는 바닥에 질질 끌리며 걸음걸음마다 거리의 잔해를 쓸고 다닐 정도였다. 이런 드레스를 입고 뛰는 것은 고사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위험했으며, 최악의 경우 벽난로 같은 불에 치마가 쉽게 닿아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다.⁶⁾ 처음으로 합리적인 복식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드레스의 불편함과 기이함”에 진저리가 났다.⁷⁾ 이들이 보기에 이런 치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바지의 채택이었다.⁸⁾ 일단의 개혁적인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옷에 맞추기보다는 옷을 자신의 몸에 맞춰야 한다”⁹⁾고 선언하며 ‘개혁 바지’를 대안으로 강력히 내밀었다. 이렇게 ‘바지 캠페인’은 오랜 시간 묻혀 있던 여성 패션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혔다.

본 논문은 빅토리아기 합리적 복식개혁운동 중에서도 논란과 반향을 가장 많이 일으킨 여성바지 캠페인을 시대적 맥락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이 운동을 페미니즘의 역사 속에서 재평가하는 것이다. 합리적 복식개혁운동은 여성 예측의 상징인 코르셋을 폐기하고 바지 같은 실용적인 여성복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당대 여성 패션의 문제, 나아가 여성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문제를 과감히 지적한 점에서 그 가치를 상당히 인정받아 왔다. 헬렌 로버츠(Helene Roberts)를 비롯해 많은 복식사 연구자들은 복식개혁가들의 대의에 심분 공감하며, 개혁의 대안과 목표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해도 복장개혁가들이 페미니즘의 대의를 실현했다고 봤다.¹⁰⁾ 가령, 로버츠는 빅토리아기

4) Sara Melzer and Katryn Norberg eds., *From the Royal to the Republican Body*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5) Crinoline Parody(1850) by George Cruikshank in *The Comic Almanack* (John Camden Hotten, 1870).

6) Gayle V. Fischer, “‘Pantalets’ and ‘Turkish Trousers’: Designing Freedom in the Mid-Nineteenth-Century United States,” *Feminist Studies* 23. 1 (1997), p. 111.

7) *Pall Mall Gazette*, Thursday 30 April 1885.

8) Elizabeth Stuart Phelps, *What to Wear* (Boston: J. R. Osgood, 1873), pp. 19-21.

9) Jane B. Donegan, *Hydropathic Highway to Health: women and water-cure in antebellum America* (New York, Westport, Conn., and London: Greenwood Press, 1986), p. 138.

10) Kathleen M. Torrens, “All Dressed Up with No Place to Go: Rhetorical Dimensions of the Nineteenth Century Dress Reform Movement,” in *Women’s Studies in Communication* 20 (1997), pp. 189-210; Nancy Isenberg, *Sex and Citizenship in Antebellum America*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8);

여성의 드레스가 “매우 아름다운 노예의 역할에 맞게 여성의 행동을 가다듬는 데 기여했고,” 이에 복식개혁가들은 여성의 몸을 약화시키는 의복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고자 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라고 규정한다.¹¹⁾ 윌리엄 리치(William Leach) 역시 그들에게 의복개혁을 통해 여성을 여권 운동에 끌어들이는 페미니스트라는 위상을 그들에게 부여한다.¹²⁾

하지만 이들 개혁가들이 순결 및 정숙, 모성을 대의나 목표로 내세움으로써 당대의 젠더 규범을 옹호한 ‘안티 페미니스트’라고 혹평하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데이비드 켄즐(David Kunzle)은 복식개혁가들이 빅토리아기 중산층의 청교도주의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코르셋과 타이트 레이싱을 혐오했으며, 오히려 이런 수단을 통해 성적 주체성을 드러내고 억압적인 성담론에 반기를 든 여성들을 폄하한 ‘도덕적 보수주의자’라고 비판했다.¹³⁾ 마찬가지로 벨러리 스틸(Valerie Steele)도 복식개혁운동이 순결 및 금주운동의 한 갈래로서 코르셋을 거부하고 남성적 의복을 지향함으로써 결국 여성성 및 여성 섹슈얼리티를 억압한 ‘반페미니즘 운동’이자 ‘청교도주의 운동’이라고 주장했다.¹⁴⁾

이런 후자의 연구는 복식개혁에서 섹슈얼리티 문제를 수면으로 올려 복식개혁의 다양한 의미 및 한계를 재고할 여지를 주고, 특히 여성을 패션의 희생자로만 본 연구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빅토리아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지점에서 많은 비판도 뒤따랐다. 주요한 비판 중 하나는 이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 표출이 곧 여성의 해방이라고 단정한다는 점이었다. 엘리자베스 컴스키(Elizabeth A. Komski)는 그들이 “19세기 여성에게 섹슈얼리티가 지닌 쾌락의 기회에 초점을 맞출 뿐 여성이 직면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¹⁵⁾고 비판했으며, 그레첸 리오든(Gretchen Riordan)은 극한의 코르셋을 즐긴 당대 타이트 레이서들(tight-lacers)의 말을 빅토리아기 모든 여성 경험의 증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¹⁶⁾

하지만 복식개혁가를 옹호하는 쪽이든 비판하는 쪽이든 기존 연구에는 다른 더 큰 문제들이 있어 보인다. 우선, 많은 연구들이 복식개혁가의 성향을 거의 동일시하거나

Jeanette and Robert Lauer, “The Battle of the Sexes: Fashion in 19th Century America,” *Journal of Popular Culture* 13 (1980), pp. 581-589.

11) Helene E. Roberts, “The exquisite slave: The role of clothes in the making of the Victorian woman,” *Signs* 22.4 (1977), p. 557.

12) William Leach, *True Love and Perfect Union: The Feminist Reform of Sex and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1980).

13) David Kunzle, “Dress Reform as Antifeminism: A Response to Helene E. Roberts's ‘The Exquisite Slave: The Role of Clothes in the Making of the Victorian Woman,’” *Signs* 2-3(1977), pp. 570-579.

14) Valerie Steele, *Fashion and Eroticism: Ideals of Feminine Beauty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Jazz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15) Komski, Elizabeth A. “Fashion’s Foes: Dress Reform from 1850-1900,” M. A. Thesis, The College of William and Mary(2001), p. 7.

16) Gretchen Riordan, “The Corset Controversy: Author(is)ing the Subject in/of Tight-lacing,” *Social Semiotics* 17.3(2007), p. 267.

그 차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복장 개혁가의 대열은 의사와 보건개혁가, 수치료사, 영성주의자(Spiritualists), 유토피아 공동체주의자, 금주운동가, 여권운동가 등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집결하는 곳이었다. 여성 건강의 증진이라는 공감대를 제외한다면, 이들은 개혁의 목표도 전략도 지향점도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 유행패션을 신랄하게 비판한 여성혐오주의자까지 복식개혁가에 포함한 낀들은 차치하더라도, 대다수 역사가들이 복식개혁가의 이런 차이를 크게 구별하지 않고 복식개혁의 한쪽 면만을 부각해 자기 해석의 근거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는 여성 복식개혁이 페미니즘의 대의를 실현했는지를 두고 격돌해왔지만, 문제는 여성복식개혁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양각색이었고 그 만큼 그 목표나 대안이 상당히 달랐다는 점이다. 어디에다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페미니즘적일 수도 있고, 혹은 여성 인권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바지 개혁만을 따로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바지’라는 대안은 여성의 지위 향상에 동의하는 복식개혁가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분열을 가져올 정도로 급진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어떤 복식개혁보다 큰 반발과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점에서 같은 지향점을 가진 합리적 복식개혁운동의 한 흐름으로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기존 연구는 개혁의 다면적인 지향성을 보지 못한 문제뿐 아니라 시대적 맥락을 놓치고 있다. 복식개혁가들을 페미니스트로만 보는 해석은 젠더적 관점에만 방점을 두어 개혁의 도덕적 지향성 및 계급적 한계를 간과했고, 반페미니스트로 보는 해석은 이 도덕이 당대 여성에게 가진 의미, 곧 개혁의 원동력으로서 지닌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더러 계급적 한계를 젠더적 한계로 오인했다고 생각한다. 즉, 당시 계급적으로 자유주의 성향의 진보적인 남성 지식인 및 운동가들 대다수가 젠더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듯, ‘계급’과 ‘젠더’의 범주에서 그 진보성이 불일치한 당대 ‘페미니즘’의 특징을 잡아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세 번째로, 복식개혁을 시대적 맥락 속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혁가의 주장과 지향성도 중요하지만 이 못지 않게 이에 대한 반응, 특히 백러시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바지 개혁은 빅토리아기 젠더 규범 속에서 폭넓고도 깊은 오해와 반발에 맞닥뜨렸는데, 이런 부정적 반응 및 과장 속에서 복식개혁이 사회에 던진 메시지와 과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반응을 통해 개혁의 페미니즘 성격을 방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고는 영미권에서 합리적 복식개혁을 상징했던 블루머와 치마바지 캠페인을 중심으로 앞서 제기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바지 개혁 과정을 추적하고, 무엇보다 이런 개혁 의상에 대한 반응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바지개혁운동’을 빅토리아 시대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 존재한, 곧 불가피하게 시대적 한계를 지닌 하나의 ‘페미니즘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2. ‘블루머’(Bloomers)와 페미니스트

1848년 세네카 폴즈에서 오늘날 하나의 전설이 된 세계 최초의 여성 권리 대회가 열렸다. 그런데 이 대회는 여성복식개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최초의 회의이기도 했다.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집결한 여성들은 몸을 옥죄고 부담스러운 패션을 간소화할 때가 왔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¹⁷⁾ 물론 여성복식개혁은 그 이전부터 건강개혁운동, 특히 ‘수치료(Water Cures) 운동’의 한 갈래로 닳을 올렸지만, 18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여권운동가들은 복식개혁을 여성인권운동의 중심에 두기 시작했다.¹⁸⁾ 차후 ‘의복개혁협회’(Dress Reform Association)의 대변지인 『시빌』(Sibyl)에서 루이즈 히터(Louise T. Whittier)가 “모든 사업에는 필시 미래에 달성해야 할 어떤 것의 씨앗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소망이나 발걸음, 행동이 있다”며 개혁 의상이야말로 여성에게 “건강과 자유를 줄 것이기에”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과 결부된다.¹⁹⁾ 즉 페미니스트 복식개혁가들에게 여성복 개혁은 차후 여성 지위를 개혁하는 유의미한 논리적 출발점이었다.

물론 빅토리아기 유행 패션에 대한 주요한 비판은 ‘건강과 도덕’이라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토대에 기초했다. 그래서 의사 레이철 글리슨(Rachel Brooks Gleason)은 길고 풍성한 치마와 무거운 치마 장식의 “거의 자살적”이라고 개탄하고, “코르셋 착용으로 소화불량, 폐결핵, 순환기 장애 등 다수의 질병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보건개혁가 매리 니콜스(Mary Jane Gove Nichols) 역시 치마의 과도한 무게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길바닥의 오물을 쓸” 정도로 긴 치마를 한탄했다. 의사 엘런 바먼(Ellen Beard Harman)도 무거운 의복이 근육을 약화시키고 노출된 팔은 피를 장기로 몰아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등 의복과 건강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²⁰⁾ “패션은 폭군이었고 여성은 건강을 위한 옷을 선택해야 한다”는 수치료사 헨리 포스터(Henry M. Foster)의 선언 역시 ‘건강의 문제’에 입각한 것이었다.²¹⁾

또한 복식개혁가들은 ‘도덕’ 문제를 제기해, 유행 패션이 은연중에 부도덕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여성복이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여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고 팔과 어깨 등 맨살을 드러냄으로써 남성들의 성적 상상력을 부추긴다는 것이다.²²⁾ 오랫동안 여성의 패션이 품위 없고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했던 보수주의자들처럼, 여성의 순결 담론에 기초하여 여성 섹슈얼리티에 반감을 표하는 개혁가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페

17) Helen Rappaport, “Women in Trousers — from Bloomers to Rational Dress,” <https://helenrappaport.com/footnotes/rational-dress/>

18) Susan Cayleff, *Wash and Be Healed: The Water Cure Movement and Women's Health*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10).

19) Louisa T. Whittier, “The Basis of Reform,” *Sibyl* 15 April 1858, pp. 345-346.

20) *New Graetenberg Reporter* 2 (January 1850), p. 29.

21) Donegan, *Hydropathic Highway*, pp. 137, 140.

22) Robert E. Riegel, “Women's Clothes and Women's Rights,” *American Quarterly* 15.3(1963) pp. 390-91.

미니스트 복식개혁가들은 유행 패션이 여성의 몸을 에로틱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되고 남성 폭력에 노출되는 점을 우려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페미니스트 작가 엘리자베스 펠프스(Elizabeth Stuart Phelps)의 주장처럼, 다시 젠더 차별과 여성 종속구조를 지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고 역설한다.²³⁾

페미니스트 의복개혁가들에게 유행 패션의 문제가 건강과 도덕에 반하는 지점만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패션이 “여성의 종속의 원인이자 표식”²⁴⁾이고 “쓸모 없고 비효율적이며 목적 없는 여성의 삶의 증표”이기 때문이었다.²⁵⁾ 엘리자베스 스탠튼(Elizabeth Cady Stanton)은 여성의 옷이 “여성의 상황을 완벽하게 보여준다”며 이렇게 이유를 든다.

여성이 입는 모든 옷은 자기 외부의 어떤 대상을 향한다. 여성 본인의 편안함과 편의는 결코 고려되지 않는다. 그녀는 보닛 줄부터 종이 구두에 이르기까지, 몇몇 과리의 패션 님프가 발명한 물품에 목숨 거는 희망 없는 순교자다. 딱 조인 허리와 뒤로 길게 끌리는 치마는 숨쉬기와 움직임의 자유를 그녀에게서 앗아간다. 남자가 여성의 영역을 규정하는 것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 그녀는 매번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말이다.²⁶⁾

한마디로 페미니스트들에게 여성복은 사회에서 여성의 열등한 지위에 대한 상징이자 반영이었다. 그런 옷은 여성을 “여성으로 특징짓고 이름 붙이며 광고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²⁷⁾ 따라서 페미니즘과 거리를 둔 개혁가들이 개혁 의복이 여성을 더 건강하고 훌륭한 어머니로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면, 페미니스트 복식개혁가들에게 개혁 의상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전체를 바꿀” 중대한 거점이었다.²⁸⁾

이런 유행 패션에 대한 비판 속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개혁 의상이 바로 바지 스타일의 ‘블루머’였다. 이 옷은 길고 풍성한 치마 대신, 발목을 조인 험렁한 터키식 바지 위에 무릎 정도 오는 짧은 치마를 입는 스타일이었다. 이 명칭은 미국 최초의 페미니즘 저널 『릴리』(Lily)의 편집자 아멜리아 블루머(Amelia Bloomer)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녀는 1851년부터 이 잡지에 블루머 의상을 소개하고 바지의 장점을 열렬히 홍보함으로써 블루머 창시자라는 명성과 악명을 모두를 얻게 되었지만, 문제의 블루머 스타일을 가장 먼저 입고 주변 페미니스트에게 소개한 이는 엘리자베스 밀러(Elizabeth Smith Miller)로 알려졌다. 이후 언론이 전한 바에 따르면 밀러는 어느 날

23) Elizabeth S. Phelps, *What To Wear?* (Boston: James R. Osgood & Company, 1873), p.73.

24) “National Dress Reform Association,” *Sibyl* 15 June 1860, p. 791.

25) “Dress Reform Convention,” *Sibyl* 1 July 1859, p. 577.

26) Mrs. E. C. Stanton, “Letter,” *Sibyl* 1 February 1857, p. 119.

27) Dr. James C. Jackson, “Letter,” *Sibyl* April 1863, p. 1130.

28) E. C. Stanton et al., *History of Woman Suffrage* I(Rochester, New York: Susan B. Anthony and Charles Mann Press, 1881), p. 841.

정원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긴 치마에 완전히 혐오감을 느끼고 블루머를 입기 시작했다고 한다.²⁹⁾

하지만 블루머가 유명세를 떨치기 훨씬 전부터 여성용 바지는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판탈렛(pantalets)’이나 ‘판탈롱(pantaloons)’³⁰⁾이라고 불리는 여성용 바지가 출현했고, 성인용으로는 비록 단명하나 19세기 내내 어린 소녀들이 짧은 치마와 함께 입는 옷이 되었다.³¹⁾ 그리고 19세기 초부터 유럽의 여러 여학교에서 미용체조 같은 체육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고, 이때 체육복으로 판탈롱을 채택한 사례도 있었다.³²⁾ 미국의 한 유토피아 사회주의 공동체에서는 1820년대에 이미 유니폼 형태로 풍성한 바지 위에 짧은 드레스를 걸쳤고 몇몇 종교 공동체에서도 바지 형태의 의복을 입고 있었다. 특히 1840년대부터 봄을 이룬 수치료 시설에서는 블루머와 거의 유사한 옷이 환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이들 수치료사들은 1950년대 복식개혁운동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 가장 활발히,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복식개혁을 이끈 세력 중 하나였다.³³⁾ 한편, 터키 바지는 18세기 중반 유럽과 중동지역 간에 무역이 활발해진 이후 이국적인 면모에 반한 유럽의 패셔너블한 젊은 남녀들이 레저복과 가면 무도회복으로 즐겨 입던 것이었다.³⁴⁾ 그리고 여배우들은 무슬림 여성의 역을 맡을 때 터키식 바지를 입었고 휴양지 같은 곳에서도 바지를 착용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³⁵⁾

이처럼 바지의 채택이 페미니스트 의복개혁가의 창의적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블루머 캠페인의 결정적 차이는, 어린 소녀가 아닌 성인 여성이, 그것도 체육관이나 휴양지 같은 특정 장소가 아닌 공공장소와 길거리에서 바지를 입고 활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밀러와 스탠튼, 블루머, 그림케(Grimké) 자매, 루시 스톤(Lucy Stone) 같은 여권운동가들이 ‘공공연히’ 바지를 입은 최초의 여성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복식개혁에서 ‘블루머’는 여성 건강을 위한 편리하고 실용적인 의상인 동시에 여성 몸의 자유를 최대화한 ‘해방 의상’이었다. 이 개혁 의상은 코르셋이나 크리놀린 같이 몸을 구속하는 보정속옷으로부터 허리를 해방했고, 치마 길이를

29) Frances E. Russell, “A Brief Survey of the American Dress Reform Movements of the Past, with Views of Representative Women,” *Arena* 6 (1892), p. 326.

30) 팬츠(pants)는 pantalets이나 pantaloons의 약칭이자 구어체에서 쓰는 말이다.

31) Patricia C. Warner, “The Gym Suit: Freedom at Last,” in *Dress in American Culture*, ed. Patricia A. Cunningham and Susan V. Lab (Bowling Green, Ohio: Popular Press, 1993), p. 141-42.

32) Anne Wood Murray, “The Bloomer Costume and Exercise Suits,” *Waffen und Kostumkunde* 24 (1982), pp. 113-15.

33) Patricia A. Cunningham, *Reforming Women's Fashion, 1850-1920* (Kent & London: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2003), p. 51.

34) Cunningham, *Reforming Women's Fashion*, p. 37.

35) Amy Kesselman, “The Freedom Suit: Feminism and Dress Reform in the United States, 1848- 1875,” *Gender and Society* 5.4(1991), pp. 496-97

줄이고 바지를 입으로써 사지를 자유롭게 만든 ‘자유의 의상’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블루머 복식개혁은 “단순히 짧은 치마와 바지가 아니라 의복 전체의 차림새와 구조에서 철저하고 급진적인 개선”을 추구한 것이다.³⁶⁾ 이후 스탠튼은 “2년간 나는 얼마나 믿기 힘든 자유를 누렸던가! 족쇄를 풀어버린 포로처럼 나는 진눈깨비와 눈과 비를 헤치며 활기차게 걷고, 산을 오르고 울타리를 뛰어넘고 정원에서 일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있었고 실제로 필요한 어떤 이동도 가능했다”고,³⁷⁾ 그 옷이 준 해방감을 떠올렸다.

이런 자유로움을 느낀 여성이 그만은 아니었다. 『릴리』와 『시빌』에는 블루머를 채택한 여성들의 명단과 경험담이 빈번히 실렸다. 환자를 방문할 때 가운데처럼 블루머를 입은 의사부터 결혼예복으로 블루머를 선택한 신부까지 적지 않은 여성이 집밖에서도 개혁 의상을 입는다고 전했다.³⁸⁾ 물론 남편의 반대와 주변의 비웃음을 토로하는 여성도 있었지만, 오히려 굳센 결의를 다지거나 주위의 긍정적인 반응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다. 가령, 자신을 ‘블루머주의자(Bloomerite)’라고 밝힌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저기서 정말로 진정한 블루머주의자를 볼 수 있다. 그들은 사라지기는커녕,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곳에는 유행이나 인기보다는 건강과 편안함, 편리함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 블루머를 입으면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되려 블루머주의자가 되고 싶어하고 이 옷을 처음 만든 사람들에게 감사해한다.³⁹⁾

이와 유사하게 오하이오 출신의 한 여성은 거의 1년 반 동안 블루머를 입었지만 비웃음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며, 다른 여성들이 “반대를 너무 두려워하고 결의와 강단이 부족한 탓에” 블루머를 채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불러머가 처한 상황을 진단했다.⁴⁰⁾

그러나 이런 독자들의 블루머 지지 발언은 블루머를 향한 반격에 대한 대응이자 포기의 징조였다. 실제로 블루머를 입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여성들은 따가운 시선과 휘파람, 야유, 비웃음 등을 감수해야 했고 이런 비난이 때로는 물리적 형태를 띠기도 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한 복식개혁가는 몇 블록이나 따라오며 돌과 진흙을 던진 사람과 씨름해야 했다.⁴¹⁾ 주류 언론은 이런 상황을 더 부추겼다. 블루머가 ‘우스꽝

36) “Dress Reform.” *Sibyl* 1 February 1860, p. 703.

37) Elizabeth Cady Stanton, *Eighty Years And More: Reminiscences 1815-1897* (New York: T. Fisher Unwin, 1898), p. 200.

38) Judith Ann Fuller, “Artistic Reform Dress in Wisconsin Collections: 1880-1890” (M. A.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 1977), pp. 119-20.

39) “Bloomerism,” *Lily* 4, Oct. 1852, p. 85.

40) *Lily* 28, February 1853.

41) Lois Banner, *American Beau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p. 4.

스럽고 추하다’는 외모 품평부터⁴²⁾ 바지를 입은 여성은 “반은 남자 반은 여자인, 어느 성에도 속하지 않는 혼종”⁴³⁾이라는 조롱, 복식개혁가들을 기존 사회질서를 파괴하려는 무정부주의자 취급하는 힐난⁴⁴⁾ 등 블루머와 복식개혁가를 향한 비난은 거칠고 집요했다. 페트리샤 마크스(Patricia Marks)가 밝혔듯, 당대 풍자작가들은 패션의 추종자를 비난할 때는 “여성스럽게 되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 탓으로 돌리며 봐주듯 부드럽게 풍자한” 반면, 복식개혁가를 상대할 때면 훨씬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 풍자와 조롱을 훨씬 더 신랄하게 퍼부었던 것이다.⁴⁵⁾ 결국, 기존 젠더 질서와 주류 담론을 ‘감히’ 거스른 블루머는 그런 반격과 비난에 무릎 꿇고 유행복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그런데 복식개혁가 전체를 ‘반페니스트’로 규정하는 연구자들은 바지 개혁의 ‘실패’ 요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 스틸은 개혁의상이 대다수 여성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복식개혁가들이 도덕성에 얽매어 에로틱한 매력을 억누르고 의복의 미적인 요소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⁴⁶⁾ 다시 말해, 복식개혁가들은 개혁 의상의 기준을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덕’에 두고, 남성의 욕정을 제어하기 위해 여성복에서 여성성과 섹슈얼리티를 배제시켰다는 말이다.⁴⁷⁾ 그래서 복식개혁은 순결 및 금주운동의 한 갈래로서 반 페미니즘적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⁴⁸⁾

스틸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사실, 많은 복식개혁가들이 일종의 ‘순교자’로 자처하며⁴⁹⁾ 금주운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유행 패션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해 여성을 지배하고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데 사용하느라 수단이라고 여겼다.⁵⁰⁾ 그리고 바지가 포함된 개혁 의상이 덜 선정적이고 더 정숙하며 품위 있는 옷으로서 남성의 성적 욕구와 공격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다.⁵¹⁾ 스탠튼 역시, ‘정숙한 여성들은 결혼 안에서나 밖에서나 거칠고 정열적인 남성의 요구에서 벗어나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고 이로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 훨씬 더 순결하고 수준 높은 삶을 살며 죄 많은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생각과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⁵²⁾ 즉, 이들은 여성 섹슈얼리티를 다룰 때 ‘여성에게 가해지는 위협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⁵³⁾

42) Joan Severa, *Dressed for the Photographer* (Kent, Ohio: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95), 274-75.

43) “The Rights of Women-Syracuse Convention,” *New York Times* 15 October 1852, p. 3.

44) “Women’s Rights Convention.” *New York Times* 2 August 1852, p. 4.

45) Patricia Marks, *Bicycles, Bangs, and Bloomers*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0), p. 151.

46) Steele, *Fashion and Eroticism*, pp. 156-57.

47) Steele, *Fashion and Eroticism*, p. 146.

48) Steele, *Fashion and Eroticism*, p. 147.

49) “Report of the Proceedings of the Dress Reform Convention,” *Sibyl* 1 February 1857, p. 113.

50) Leach, *True Love and Perfect Union*, pp. 243, 249.

51) Kowski, “Fashion’s Foes,” p. 3.

52) Stanton et al., *History of Woman Suffrage*, p. 841.

하지만 19세기 페미니스트를 비롯한 여성개혁가들의 도덕성 주장을 두고, 단순히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주류담론 중 하나로만 치부하기에는 복잡 미묘한 지점이 있다. 대체로 중상류층 출신인 개혁가들이 도덕적이고 경건한 여성을 이상화한 부르주아 젠더 이데올로기를 체화한 것은 어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자신의 계급성을 그대로 안고 여성운동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오랜 세월 ‘여성은 사악하다’라는 여성혐오적 젠더 규범에 맞서, 그들이 앞세운 도덕적 우월성은 엘리트 여성의 명예이자 권위의 기반이었다. 또 그렇기에 이런 여성의 덕성은 여성의 지위를 개혁하기 위한 토대이자 힘의 원천이기도 했다. 즉 여성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주장하려면 여성의 명예와 덕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 남성과 동등한 고등교육 실현을 목표로 여성대학을 설립하려는 여성교육운동가들 역시 여성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많은 비판에 맞서는 대응책으로 관습적인 여성의 가치와 미덕을 전면에 내세웠다. 거튼칼리지(Girton College)를 세우고 캠브리지 대학 진입을 시도한 에밀리 데이비스(Emily Davies) 역시 여학생들의 품행을 늘 강조했는데, 여학생들이 추문에 휩싸이면 여성교육운동이 큰 타격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탓이다.⁵⁴⁾ 낸시 아이젠버그(Nancy Isenberg)가 주장한 것처럼, 복식개혁가들은 반 페미니스트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큰 도덕적 발판’을 여성에게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⁵⁵⁾

게다가 블루머에 대한 반응과 논란의 주요 맥락을 따라가 보면 섹슈얼리티 억압과 관련된 도덕성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복식개혁가들 스스로 개혁의복의 품위와 도덕성에 상당히 신경을 썼고 또 호평하는 쪽에서는 옷이 가진 실용성 및 건강 이외에 단정하고 정숙한 요소를 높이 샀지만⁵⁶⁾, 오히려 반대하고 비판하는 쪽의 시각에서 개혁의상은 여성스럽지 못하기에 ‘비도덕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요 비판은 도덕성 그 자체보다는 ‘바지’가 갖고 있는 함의, 곧 남성성으로 수렴되었다. 바지는 반대자들에게 남성성과 남성 지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바지를 입은 여성은 곧 ‘부도덕성’과 더불어, 눈에 거슬리는 ‘젠더 질서의 파괴자’였다. 가령, 루시 스톤의 개혁지지 연설을 비평한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의 기사는 그녀를 “양식과 공동체, 의무를 저버리고 여성 권리에 중독된 자”이자 “판탈롱이라는 트로피”를 거머쥐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안녕”을 뒤흔드는 위험인물이라고 비난한다.⁵⁷⁾

이와 더불어 블루머를 입은 여성은 페미니즘을 지향하든 그렇지 않든 대중의 눈에

53) Ellen Carol DuBois and Linda Gordon, “Seeking Ecstasy on the Battlefield: Danger and Pleasure in Nineteenth-century Feminist Sexual Thought,” in *Pleasure and Danger: Exploring Female Sexuality*, ed. Carole Vance (Boston an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4), p. 31.

54) Mcdermid, Jane, “Women and Education”, in *Women's History: Britain 1850-1945*, ed. June Purvis (London: UCL Press, 1995), p. 112.

55) Isenberg, *Sex and Citizenship*, pp. 15-16.

56) Cunningham, *Reforming Women's Fashion*, pp. 39-40.

57) “Rights and Wrongs,” *New York Times* 20 April 1853, p. 4.

는 공히 급진주의자로 비쳤다. 여성의 재산권과 참정권을 주장하며 여성권리대회나 관련 회의에 참석할 때 페미니스트들이 자주 입던 의상이 블루머였던 탓이다. 이에 블루머는, 특히 여권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페미니즘이라는 급진운동의 상징으로 눈에 띄는 표적이 되었다.⁵⁸⁾ 그리고 이런 반감의 이면에는 젠더 위계질서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놓여 있었다. 수많은 풍자만화는 블루머를 이용해 이런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뿌리 깊은 공포를 겨냥하고 부추겼다.⁵⁹⁾ 이는 남성복장을 한 여성은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성의 권력을 쟁취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했다.⁶⁰⁾ 전쟁 비유까지 서슴지 않는 또 다른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여성의 권리가 “확보된다면 남성의 권리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들”에 대항하여 ‘전선’을 지킬 것을 명한다. 그런데 남성 군단이 여성들에게 분노하며 일치단결하게 된 것은 여성들이 입은 “우리의 두 갈래로 갈라진 옷”인 바지임을 분명히 한다.⁶¹⁾

물론 복식개혁가들은 ‘바지’를 이용해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을 해체할 의도가 없었다. 『릴리』에서 개혁 복장을 한 블루머 여자에게는 “적들이 비난하는 남성적인 외모가 하나도 없다”고⁶²⁾ 독자들을 안심시킨 것처럼, 페미니스트 복식개혁가들은 ‘여성성’을 내세워, 남자처럼 옷을 입는다는 비난에 맞섰다. 그들의 의복개혁은 새로운 여성성을 재구성하는 것이지 남성성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성과 남성권력의 상징인 ‘바지’를 통한 개혁은 여성의 몸과 마음의 해방을 추구함으로써, 사적 영역으로만 한정시킨 당대의 성역할과 성규범에 반기를 든 것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순결과 정숙을 강조한 도덕성이 아니라, 여성답지 못하다는 ‘비도덕성’이 복식개혁가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식의 반격이 얼마나 강했던지, 유행복을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여긴 페미니스트들조차 블루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과 지인의 만류와 압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개혁 의상이 여성의 지위 개선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⁶³⁾ 실제로 여성권리대회에서 청중과 이를 보도한 언론은 페미니스트의 메시지보다 외모에 더 관심을 집중했고,⁶⁴⁾ 앞서 보았듯 블루머는 의도와 달리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및 혐오를 상당히 키웠다.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페미니스트 복식개혁가들은 페미니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복식개혁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나의 전략을 포기했다고 해서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스톤은 여성이 인권을 소유하고 지위가 향상되면 의복개혁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한

58) Lori Duin Kelly, “Bipeds in Bloomers: How the Popular Press Killed the Dress Reform Movement,” *Studies in Popular Culture* 13.2(1991), p. 68.

59) Cunningham, *Reforming Women's Fashion*, p. 42.

60) Komski, “Fashion's Foes,” p. 8.

61) “Women's Rights Convention.” *New York Times* 2 August 1852, p. 4.

62) *The Lily* 4 December 1852, p. 99.

63) Cunningham, *Reforming Women's Fashion*, p. 33.

64) Riegel, “Women's Clothes and Women's Rights,” p. 394.

다.⁶⁵⁾ 이는 여성참정권운동가들이 개혁 의상을 버리고 긴 치마로 돌아갔다고 비난한 일부 복식개혁가들⁶⁶⁾을 향한 변명이자 포기할 수 없는 페미니즘에 대한 신념 표명이었다. 또한복식개혁 전체가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일렀다. 개별적으로 바지를 계속 고수한 이들이 있었고, 속옷개혁 등 다소 온건한 방식으로 복식개혁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바지 캠페인은 영국에서 부활할 것이었다.

3. 치마바지(Divided Skirts)와 ‘합리주의복식협회’(Rational Dress Society)

영국에서 바지 캠페인은 좀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영국의 복식개혁이 내세운 바지는 치마바지로, ‘나뉘진 치마’라는 말에서 연상되듯 블루머보다는 유행 패션을 훨씬 더 의식한 의상이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1880년대와 1890년대 복식개혁가들이 의복에서 미학과 패션성을 중시한 상황을 반영한다. 19세기 중반의 복식개혁가들도 의상의 아름다움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옷 자체가 아니라 코르셋의 압력에서 해방된 자연스러운 몸의 아름다움에 방점을 두었다. 반면에, 세기 후반의 복식개혁운동은 미적이고 예술적인 관심 속에서 의상 자체의 아름다움을 고려했다.⁶⁷⁾

다른 한편으로는 블루머의 악명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1850년대 처음 블루머가 영국에 소개되었을 때, 몇몇 언론은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신여성과 음악가, 예술가 등이 크게 환호하며 블루머 무도회까지 개최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⁶⁸⁾ 하지만 이런 환영은 거기까지였다. 『바틀리의 문집』(Bartley's Miscellany)에 실린 글은 이런 상황을 잘 정리해 놓았다. “현재까지 [블루머]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진전이 없다. 블루머 강연과 블루머 무도회가 열렸지만 둘 다 실패의 징조였다. 그것은 … 많은 우스꽝스러운 캐리커처의 소재를 제공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의상을 비난한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감히 블루머를 입고 나온 사람들에게 흔히 행해지는 상스럽고 저속한 공격에도 반대한다.”⁶⁹⁾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세기 후반 복식개혁가들은 유행 패션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한 것이었다.⁷⁰⁾

65) Lucy Stone, “Letter,” *Sibyl* 1 July 1857, p. 198.

66) 리디아 헤스브룩은 “이 정도의 야유와 비웃음에도 자신의 입장을 지킬 정신과 용기가 없다면, 필시 입법자들과 싸우거나 교회와 국가의 권력자들과 전쟁을 벌이거나 투쟁을 할 상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Lydia Hasbrouck, “Lucy Stone and Women's Rights.” *Sibyl* 1 January 1858, p. 290.

67) Loretta Clayton, “Becoming Modern: Reforming Women's Dress in Victorian England and America,” in *Gender and Victorian Reform*, ed. Anita Rose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08), p. 181.

68) Murray, “Bloomer Costume,” 107-8.

69) “Bloomerism, or the Female Invasion,” *Bartley's Miscellany* 30 (1851), p. 644.

또한 이 시기 복식개혁은 이전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복식개혁을 주도하는 단체가 설립되어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강연을 열고 글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수상 전시회를 개최하여 개혁 의상의 홍보를 넘어서 개혁 의복의 적극적인 디자인과 제작까지 유도했다.⁷¹⁾ 그 중심에 있던 단체가 바로 치마바지를 주장한 <합리주의복식협회>(Rational Dress Society)였다. 이 협회는 1881년 복식개혁에 관심을 가진 중상류층 여성들이 레이디 허버튼(Lady F. W. Harberton)과 미세스 킹(Mrs. E. M. King)을 각각 회장과 서기로 삼아 결성한 단체로 영국에서 조직적인 복식개혁의 출발을 처음으로 알렸다. 협회의 대변지 『가제트』(Gazette)에 매번 실린 단체의 목적은 “개인의 취향과 편의에 따라, 건강과 편안함, 아름다움을 고려하여 옷 스타일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이런 목적에 맞지 않아 추천될 수 없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행패션에 반대하는 것”이었다.⁷²⁾

이처럼 영국의 바지 캠페인의 출발점 역시 유행 패션에 대한 비판이었음은 변함없었다. 치마바지의 창안자 레이디 허버튼은 유행복을 입고 여성이 걸을 때 “무릎에 2파운드에서 6파운드까지 무게가 추가”되고, 이는 “여성이 2마일을 걷는 데 남성이 4마일을 걷는 근력을 사용한다는 뜻”⁷³⁾이라고 한탄하며 이렇게 천명했다.

현재 우리 복장은 예술에도, 건강에도, 실용성에도 죄를 짓고 있다. ... 어떤 땀질도 소용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출발이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너무 나약하다면, 차라리 포기하는 편이 낫다. ... 딸들을 해방시킬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용기가 부족해서 딸들에게 무거운 짐을 남겼다는 굴욕적인 반성을 하면서 말이다.⁷⁴⁾

미세스 킹 또한 ‘여성의 복식보다 더 큰, 현재 여성의 열등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⁷⁵⁾고 진단하며, 여성복의 주요 목적은 “스스로를 절단하고 고문하는 대가로 건강과 안위, 편의성을 가장 무자비하게 희생하여” 외모를 꾸미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신랄히 비판했다.⁷⁶⁾

이런 비판의식 속에서 ‘건강과 편안함’에다 ‘아름다움’까지 고려하여 이 협회가 디자인한 개혁의상이 다름 아닌 치마바지였다.⁷⁷⁾ 1885년 『지식』(Knowledge)지에는 생

70) Komski, “Fashion’s Foes,” p. 5.

71) 의복 개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린 영국 단체로는 Rational Dress Society와 그 단체에서 분리 독립한 Rational Dress Association, 의복의 미학적 측면에 주로 관심을 가진 Healthy and Artistic Dress Union 등이 있었다.

72) Rational Dress Society’s Gazette 1 Apr. 1888, p. 1.

73) Viscountess Harberton, *Reasons for Reform in Dress* (London: Hutchings & Crowsley, 1884), p. 6.

74) Harberton, *Reasons for Reform in Dress*, pp. 17-18.

75) *Glasgow Herald* 9 November 1882.

76) E. M. King, *Rational Dress; or The Dress of Women and Savages* (London: Kegan Paul, Trench & Co., 1882), p. 4.

77) 1882년 3월 <전국건강협회>(National Health Society)의 박람회에서, <합리주의복식협회>는

소할 독자를 위해 ‘일반적인’ 옷과 다른 ‘이중 치마(dual skirts)’에 대한 <합리주의복식협회>의 설명이 실렸다. “분할 치마는 그 근거가 상당히 분명해야 한다. 이중 치마의 길이는 발목에서 1야드(야드 컵 길이)나 3/4야드 높이어야 한다. 우리 단체는 치마와 속옷이 엉덩이에 맞춰 넓은 띠로 고정되어 허리가 어떤 종류의 압박도 받지 않도록 하거나, 원한다면 치마 위 단추 구멍에 맞게 보디스에 후크나 단추를 달 것을 권한다.”⁷⁸⁾ 그리고 옷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장기도 손상되지 않고, 어떤 근육에도 경련을 일으키지 않으며 몸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⁷⁹⁾

치마바지는 형태는 좀 다르지만 ‘블루머’가 추구했던 ‘여성의 몸의 건강과 자유’라는 특성을 그대로 담은 의상이었다. 이에 블루머처럼 치마바지도 여성들에게 해방감을 충분히 주었다. 가령, 『지식』의 편집장 리처드 프록터(Richard A. Proctor)는 집안 여성들이 코르셋을 버리고 치마바지를 입은 경험담을 이렇게 전했다. “분할 치마를 몰랐다면, 그들이 입는 속옷 무게로 인해 ‘바깥 뼈대’(코르셋)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분할 치마는 하중을 4분의 3으로 줄였다. 그 옷은 더 따뜻했다. 또한 즐겁게 거리를 걷게 했다. 트리사이클링과 테니스를 비롯해 여러 야외 운동이 더 편해졌고 더 즐겁게 춤을 출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건강은 좋아졌고, 노래하는 목소리에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다.⁸⁰⁾

장원 영주부인 테일러(H. B. Taylor)도 자신의 경험을 『퀸』(Queen)지에 보냈는데, 그 얘기 속에서 블루머와 다른 치마바지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자신도 처음엔 개혁 대열에 들어서기를 상당히 망설였고 반신반의하며 치마바지를 입게 되었다고 고백한 후 이렇게 쓴다.

아직 선택하지 않은 독자분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체없이 바로 입어 보세요.’ 발걸음이 덜 지치고, 등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즐겁고, 축축한 풀로 인한 테니스 경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 블루머와는 전혀 다르지요. ... 이 옷은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혁명을 ...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⁸¹⁾

이처럼 치마바지는 상당히 두 갈래로 나뉜 선을 교묘히 감춰 바지에 대한 반감을 상당히 감소시킨 듯하다. 실제로 레이디 하버튼은 『맥밀런 매거진』(Macmillan's Magazine)에 “‘블루머리즘’은 아직도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유럽의 남성복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보다 더 부적절한 말은 없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내 얘기를 시작한다”고 했듯이,⁸²⁾ 자신의 치마바지가 블루머로 보이지 않도록

“분할 치마(치마바지)”를 처음 선보였다.

78) “Rational Dress,” *Knowledge* 16 October 1885, p. 334.

79) “Rational Dress,” *Knowledge* 16 October 1885, p. 334.

80) “Letter,” *The Times* 21 May 1883, p. 7.

81) “Letter” in *Queen* 25 July, quoted in *Lancaster Gazette* 13 August 1881, p. 2.

82) *Macmillan's Magazine* April 1881, quoted in Don Chapman, *Wearing the Trousers:*

상당히 신경 썼다. 그리고 치마바지에 대한 호평 중 상당수는 일반 치마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한 칼럼니스트는 “그 옷은 바지의 끝단만 보이고 치마가 발목 바로 위에 오는 여성용 승마복과 완전히 닮았다. … 매우 우아하게 보이고 … 그 점에서는 이전의 천박한 블루머 의상과는 상당히 달랐다. … 바지의 통을 아주 넓게 만들어서 … 모든 일상적인 상황에서 기존의 부인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⁸³⁾고 칭찬했다. 『의상과학』(*The Science of Dress*, 1885)에서 에이다 볼린(Ada S. Ballin) 역시 치마바지가 매우 교묘하게 만들어져 사람들이 일반 치마와의 차이를 모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⁸⁴⁾

이렇게 치마바지는 ‘갈라짐이 너무 교묘해서 알아채기가 어렵다’⁸⁵⁾거나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외관상 차이가 없다’⁸⁶⁾는 평을 상당히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지라는 악령’은 여기에도 따라다녔다. <합리주의복식협회>는 조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협회의 회계를 맡은 매릴러본 하와이스(Marylebone Haweis)가 이탈하는 등 내용을 겪었는데, 바로 치마바지 때문이었다. 한 기사는 이런 분열이 “치마바지”를 향한 일부 회원들의 열정 때문”이라고 못 박으며, “블루머를 부활하려는 열망으로 그 밖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이런 여성들을 일컫는 좋은 이름은 … 판탈롱주의자(Pantaloontics)일 것”이라고 블루머의 악명을 소환했다.⁸⁷⁾ 복식개혁에 동조한 남성들도 치마바지에는 동의하지 못했다. 코르셋에 대한 신랄한 비판연설로도 유명한 외과의사 프레드릭 트레브(Frederick Treves)는 강연에서 “우리 시대 복장의 모든 해악과 모순’이 패션이라는 명분으로 묵인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복식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복식개혁가들이 택한 의복과 행동에는 유감을 표했다.⁸⁸⁾ 좀 더 합리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옷이 필요했지만, 바지는 절대 아니었던 것이다.

한 신문의 주간논평자는 여성복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래서 “레이디 하버튼의 제안이든 미세스 킹의 제안이든 이들이 제시한 대안에 전반적인 거부감이 있는 탓에, … 어떤 스타일의 치마바지가 합리적 의복으로 발표된다 해도 아마 소수만이 택할 것이고 블루머 의상처럼 잠깐 반짝이다 사라질 것”⁸⁹⁾이라고 내다봤다. 권즐과 스틸이 주장하듯, 치마바지 또한 에로틱한 요소 같은 패션의 미학이 여전히 부족했던 것일까? 스틸은 “<합리주의복식협회>가 전시한 ‘합리적’ 의상이 일반적인 유행복의 다소 평이한 버전처럼 보이지만, 대체로 매력적이지 않은 옷으로 인식되었다”⁹⁰⁾고 평가했다.

Fashion, Freedom and the Rise of the Modern Woman (Stroud: Amberley Publishing, 2017)(kindle ebook), chap. 10.

83) *World*, quoted in *Huddersfield Daily Chronicle* 13 October 1881, p. 4.

84) Ada S. Ballin, *The Science of Dress in Theory and Practice* (London: Sampson Low, Marston, Searle & Rivington, 1885), pp. 184–85.

85) *Lancet*, quoted in “Rational Dress,” the *Star* (St. Peter’s Port) 3 July 1883, p. 4.

86) *Aberdeen Journal* 17 February 1883.

87) “Fun,” *Hull Packet and East Riding Times* 29 July 1881, p. 6.

88) *Morning Post* 20 March 1882, p. 3.

89) *Sheffield and Rotherham Independent* 2 December 1882, p. 12.

그러나 치마바지가 여성스럽지 않기에, “인기를 끌기는 도덕적으로 불가능하다”⁹¹⁾ 라는 아미티지(G. Armytage)의 단정이나, “치마바지는 일반 드레스와 거의 구별할 수 없고 … 신기할 정도로 실용적이고 편하겠지만, 누가 감히 그걸 입을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합리주의복식협회> 개혁가들은 극단으로 몰고 간다”⁹²⁾라는 『진실』(Truth) 칼럼니스트의 평가에서 보듯, 의상의 매력 그 자체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었다. 여권운동가 메리 틸럿슨(Mary E. Tillotson)에 따르면, 바지란 권력과 동의어였고 따라서 바지를 입는다는 말은 남성의 권력을 얻거나 빼앗는다는 생각과 결부되었다.⁹³⁾ 따라서 여성의 바지개혁은 ‘페미니즘’과 ‘남성성’ 둘 다를 추구하는 것으로 비쳤다. 간단히 말해, ‘바지’가 더 문제였던 것이다.

4. 결론

결국, 페미니스트 복식개혁가들이 여성섹슈얼리티와 여성성을 억압했다는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19세기 영미권의 페미니스트가 도덕성을 대의의 기초로 삼았고 섹슈얼리티의 위험성에만 주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섹슈얼리티를 거부한 이유는 섹슈얼리티를 통해 여성이 해방되기보다는 그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당대 현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미세스 킹 같은 복식개혁가들은 모든 여성을 잠재적 매춘부로 취급하는 이른바 ‘성병 방지법’에 반대했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코르셋과 유행복을 비판했다.⁹⁴⁾ 20세기 후반 미사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브래지어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펼친 페미니스트들처럼, 또 포르노그래피에 결사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처럼.

한편, ‘바지’를 선택한 복식개혁가들이 여성의 의복을 비판하고 남성 의복의 일정 요소를 지향한 것도 사실이다. 복식개혁가들은 종종 유행만 추구하는 “여성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여성혐오주의자 못지않게 비판했고,⁹⁵⁾ 반대급부로 단순하고 자유로운 복장을 입는 “남성의 문명화”를 칭찬했다. 가령, 『의복과 건강, 아름다움』(Dress, Health, and Beauty, 1878)의 저자는 의복이 장식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성의 옷은 쓸모없고 걸만 번지르르한 것들을 제거”했고 여성이 “남성의 스타일을 천천히 따라가면” 기존의 “야만적이고 유치한 취향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⁹⁶⁾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의복』(Rational Dress; or the Dress of

90) Steele, *Fashion and Eroticism*, p. 150.

91) G. Armytage, “Modern Dress,” *Littell’s Living Age* 153 (1883), pp. 166-67.

92) *Truth*, quoted in *Lancaster Gazette* 28 February 1883.

93) Mary E. Tillotson, *Progress Versus Fashion: An Essay on the Sanitary and Social Influence on Women’s Dress* (Vineland, New Jersey: n.p., 1873), p. 20.

94) Leigh Summers, *Bound to Please: a History of the Victorian Corset* (Oxford and New York: Berg, 2001). p. 6.

95) *The Rational Dress Society’s Gazette* (April, 1889), p. 2.

Women and Savages, 1882)에서 미세스 킹도 여성의 “야만적인 옷차림”이 여성 “열등성의 표시이자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야만인이나 여성’과 달리, “문명화된 남성”의 의복은 “개인적인 장식이 점점 줄고, 편안함과 건강, 편의성, 품위가 점점 더 높아져 갔다”고 말했다.⁹⁷⁾ 하지만 처음으로 여성의 권리를 주창한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을 닮고자 하거나 남성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남성만이 진정한 인간으로 대우받던 당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능하다. 이들이 남성성과 남성의 권력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남성으로서의 Men’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Men’의 권리, 곧 ‘인간의 권리(인권)’를 추구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남성이 가진 참정권을 여성에게도 부여하라고 투쟁한 서프러제트(Suffragette)처럼, 또 백인이 가진 민권을 요구하며 피흘린 흑인인권운동가들처럼.

요컨대, 바지개혁을 이끈 페미니스트 복식개혁가들은 시대적 한계를 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 페미니스트라고 평가하는 것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이들 복식개혁가들은 자신들의 제한된 자원과 틀 내에서 ‘바지’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여성의 구속된 몸과 종속된 삶을 자유롭게 하고자 했고, 무엇보다 바지를 채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주류 담론에 혹독히 비판받은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남성의 상징인 바지가 오늘날 ‘인간의 바지’가 된 오랜 세월의 길에는, 앞서 수없는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 ‘바지’를 여성의 몸과 삶 속으로 들여와 여성에게도 ‘인간의 권리’를 부여하려 한 복식개혁가들의 선구적인 분투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96) Anon., *Dress, Health, and Beauty* (London: Ward, Lock & Co., 1878), p. 123.

97) King, *Rational Dress*, pp. 3, 4, 25.

「여성, 바지를 입다:
빅토리아기 합리주의 복식개혁운동」 토론문

김 정 화 (부경대)

독일의 비상사태법과 의회 외부 저항운동

- 나치 역사의 기억과 시대인식이 이끈 대결과 투쟁 -

정 대 성 (부산대)

1. 머리말	
2. 비상사태법의 등장과 비판의 대두	4. 1968년 5월 - 최종 대결과 그 결과
3. 대연정과 비상사태법 반대투쟁의 심화	5. 맺음말 - 의미와 전망

1. 머리말

나치 독일이 패망한지 채 15년이 되지 않아, 서독은 나치 과거의 악몽과 결부되는 법안을 둘러싼 오랜 대결의 소용돌이가 닳을 올린다. 1960년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비상사태법’(Notstandsgesetze) 제정 시도가 여론의 비판과 반대를 야기하고, 결국은 독일 68운동이 사활을 건 거대한 투쟁과 대결의 장이 펼쳐진다. 68운동이 ‘비상사태법 반대캠페인’의 이름으로 추동한 그 저항과 대결은 1968년 5월 법안 통과로 종결되었지만, 서독 사회를 중대한 시험대에 올렸다. 그것은 한편으로 역사의 기억과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제기이며, 다른 한편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역할과 기능을 지켜내고 그 한계를 진단하는 과정과 방법의 배움이기도 했다.

‘비상사태법’은 전쟁이나 여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부에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로, 정부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심지어 파업 노동자에 맞서 군사적인 수단까지 동원할 수도 있었다.¹⁾ 1960년 기민당 내무장관의 법률 초안으로 시작한 법안 제정 시도는, 63년과 65년에도 ‘의회 외부’에서 작동하는 비판적 여론에 영향 받은 사민당의 반대 속에 각각 실패한다. 66년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의 대연정 성립 후 비상사태법의 통과노력이 경주되자, 68운동의 상징적 조직인 ‘의회외부저항운동’²⁾(APO: Außerparlamentarische Opposition)으로 결집한 비판

1) Heike Krüger, “Die Notstandsgesetze im Spiegel ihrer Zeit”, Martin Löhnig, Mareike Preisner and Thomas Schlemmer, *Reform und Revolte* (Tübingen, 2012), pp.325~338 가운데 pp.327~329.

2) APO는 1966년 대연정의 출범에 맞서 의회 밖에서의 비판과 저항의 목적으로 호소된 상징적 연합조직이자 운동으로, 독일 68운동의 중심점이자 그 운동을 대변하는 이름이기도 했다. 대연정을 비판한 다양한 정치세력과 노조 및 학생단체가 포함된 APO의 대표 세력은 독일사회주의

진영과 격한 대결이 펼쳐졌다.³⁾ 법안 찬성자들은 비상사태시 연합국이 서독에서 보유한 이른바 ‘유보권’(Vorbehaltsrechte)을 없애고 정상적인 주권 국가를 회복해야 한다는 논거에서 출발했다. 서독 당국이 비상사태와 관련된 입법을 통해 연합군 병력의 안전을 보장할 방침을 마련해야 연합군의 그 권한이 해소되었다.⁴⁾ 모든 주권 국가가 보유한 비상사태 선포권 등이 점령국의 수중에 있는 셈이지만,⁵⁾ 서독은 역사적 경험 때문에 전후 비상사태 관련 규정을 기본법에 포함시키지 못했다.⁶⁾ 바이마르헌법 제48조가 비상사태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무효화하고 긴급명령으로 통치하는 길을 열어놓아 나치와 히틀러 독재로 나아간 역사가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따라서 비상사태법은 의회외부저항운동(APO)로 결집한 비판자들의 눈에 ‘나치법’이나 ‘독재법’⁷⁾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고, 결국 의회를 “정부의 감시견”으로 만드는 지름길이었다.⁸⁾ 분노한 학생 청년들뿐 아니라 지식인들도 이 법을 통해 민주주의가 과두제로, 그리고 결국에는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우려했다.⁹⁾ APO는 격렬한 항의와 저항을 통해 법률 도입 저지에 힘썼고, 1968년 5월은 직접행동을 앞세운 숭한 시위와 나란히 대학 점거가 꼬리를 물고 저항과 대결의 정점을 이루었다.¹⁰⁾

사실 비상사태법을 둘러싼 충돌은 당대의 그 격렬성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일종의 “잊혀진 테마”였다.¹¹⁾ 그러다가 역사학계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로 꼽히는 미하엘 슈나이더(Michael Schneider)의 책이 나왔다. 슈나이더는 노동조합과 사민당의 역할을 중심에 놓고 비상사태법 반대운동의 진행과정과 이를 둘러싼 갈등의 지형을 상세하게 드러내었다.¹²⁾ 또한 보리스 슈페르놀(Boris Spornol)은 비상사태법 반대캠페인

학생연합(SDS)와 군축캠페인(KfA), 공화주의 클럽(RC) 등이었다. 정대성, 「독일과 프랑스 68혁명의 결정적 사건과 5월의 폭발」, 『역사학보』 238 (2018.6), 373~406 가운데 382쪽 주)33.

3) Krüger, “Die Notstandsgesetze”, pp.329~338 참조.

4) Christoph Kleßmann, *Zwei Staaten, eine Nation: Deutsche Geschichte 1955-1970* (Göttingen, 1988), p.245, 주) 143.

5) Dennis L. Bark and David R. Gress, *Democracy and Its Discontents 1963-1988* (A History of West Germany, Vol. 2) (Oxford, 1993) [데니스 L. 바크, 데이빗 R. 크레스 저, 서지원 역, 『도이치 현대사 2 - 변화와 모색』, (비봉출판사, 2004), p.349].

6) Kleßmann, *Zwei Staaten*, p.245f 참조.

7) Stefanie Pilzweiger, *Männlichkeit zwischen Gefühl und Revolution: Eine Emotionsgeschichte der bundesdeutschen 68er-Bewegung* (Bielefeld, 2015), p.214.

8) Rob Burns and Wilfried van der Will, *Protest and Democracy in West Germany: Extra-Parliamentary Opposition and the Democratic Agenda* (London, 1988), p.11.

9) Kleßmann, *Zwei Staaten*, p.249f.

10) 정대성, 「민주주의의 위기와 독일 68운동」, 125쪽. 이미 당대에 비상사태법을 겨냥한 자료들이 즐줄이 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Friedrich Schäfer, *Die Notstandsgesetze : Vorsorge für den Menschen und den demokratischen Rechtsstaat* (Köln, 1966); Deutscher Gewerkschaftsbund, ed., *Notstand: Der DGB zur Notstandsgesetzgebung* (Düsseldorf, 1967); Helmut Schauer, ed., *Notstand der Demokratie: Referate, Diskussionsbeiträge u. Materialien vom Kongress am 30. Okt. 1966 in Frankfurt a. Main* (Frankfurt, 1967) 등을 참조.

11) Adolf M. Birke,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fassung, Parlament und Parteien* (Berlin, 1997), p.110.

을 ‘나치 과거’ 문제와 연결하면서, 그 비판의 선봉에 선 저명한 대학교수 5명을 중심으로 분석했다.¹³⁾ 한편, 비상사태법의 준비 주체인 서독 연방내무부를 중심으로 그 법의 변화 과정을 다룬 마르틴 디벨(Martin Diebel)의 최신 연구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눈에 띈다.¹⁴⁾ 디벨은 독일의 비상사태 권한을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인 1940년대 말부터 비상사태법의 변모를 추적해 1968년 5월 비상사태법의 통과까지의 지형을 상세히 그려낸다. 그 속에서 비상사태법 도입을 준비하는 내무부 주체들의 논거와 주장, 그리고 외적인 압력을 통한 영향과 법안 내용의 변화를 분석해 나간다.¹⁵⁾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제각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68운동과 APO 진영의 비판과 저항에 방점을 두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반면, 68운동의 대표적 연구자인 볼프강 크라우스하르(Wolfgang Kraushaar)는 그 50주년인 2018년에 내놓은 책에서 APO 및 68운동에 집중하며 비상사태법 반대캠페인을 다룬다. 그는 법안 반대 투쟁이 68운동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위상이 큰 캠페인이었다고 강조하나, 주로 2차 문헌에 의존하며 막상 체계적인 분석은 결여한 아쉬움을 남겼다.¹⁶⁾ 게다가 그는 당시 운동진영의 비상사태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두려움이 결국은 일종의 “히스테리”¹⁷⁾이자, 나치가 정권을 잡은 연도를 빗댄 “새로운 [19]33년의 유령”¹⁸⁾이었다고 말하며 APO 저항의 의의를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강하다.¹⁹⁾ 그리고 비상사태법의 법률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하인리히 오버로이터(Heinrich Oberreuter) 역시 통과된 비상사태법을 연방의회의 “새로운 창조물”이자 “법치국가적인 해법”²⁰⁾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기에 “비상사태의 독재자”와 “헌법적인 독재”²¹⁾는 없다고 보는 반면, 반대캠페인을 APO 진영의 과민반응이라고 평가하는 점에서 유사한 입장이다.

12) Michael Schneider, *Demokratie in Gefahr? Der Konflikt um die Notstandsgesetze: Sozialdemokratie, Gewerkschaften und intellektueller Protest (1958-1968)* (Bonn 1986).

13) Boris Spornol, *Notstand der Demokratie: Der Protest gegen die Notstandsgesetze und die Frage der NS-Vergangenheit* (Essen 2008).

14) Martin Diebel, »Die Stunde der Exekutive«: *Das Bundesinnenministerium und die Notstandsgesetze 1949-1968* (Göttingen, 2019). 이 책은 “1945년 이후 독일 내무부 역사” 시리즈 가운데 2번째로 나왔다. Friederike Brühöfener의 서평 참조(*German History*, Vol.38, Issue1, March 2000, pp.175~177 가운데 p.175).

15) 그래서 그의 분석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사료는 그들과 관련된 각종 문서와 개인적 파일 및 공적인 발언 등이다.

16) Wolfgang Kraushaar, *Die blinden Flecken der 68er Bewegung* (Stuttgart, 2018), pp.135~148.

17) Ibid., p.146

18) Ibid., p.135.

19) 이런 평가는 그가 2008년에 내놓은 연구서의 관련 부분과 별 다르지 않다. Wolfgang Kraushaar, *Achtundsechzig. Eine Bilanz* (Berlin 2008), pp.163~175.

20) Heinrich Oberreuter, *Notstand und Demokratie. Vom monarchischen Obrigkeits- zum demokratischen Rechtsstaat* (München, 1978), p.281.

21) Ibid., p.282.

본고는 이러한 독일 학계의 기존 연구를 감안하며, 비상사태법에 맞서는 의회 외부의 저항운동을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진단할 것이다. 그 속에서 APO의 반대투쟁이 ‘근거 없는 히스테리’가 아니라 역사적 및 당대적 인식에서 길어 올린 ‘시대정신에 입각한 대응과 비판’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나아가, ‘역사적 책임과 기억의 무게’에 입각한 APO의 의회 외부적 저항은 의회 공간에 대한 경고와 감시를 통해 그 법의 반복된 수정과 변화에 기여한 ‘의미 있는 압력’이었음이 밝혀질 것이다.

2. 비상사태법의 등장과 비판의 대두

비상사태법을 둘러싼 논쟁과 저항의 역사는 사뭇 독일적이다. 여타 나라에서도 국가 위기의 비상사태와 국가긴급권을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를 둘러싼 대결이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²²⁾ 1960년대 서독의 사회, 정치 지형을 뜨겁게 달구며 유례를 찾기 힘든 대결의 소용돌이를 야기한 그 풍경은 독일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라는 문제 속에서 배경과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비상사태법에 대한 반대와 저항의 역사는 나치 과거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나치 과거 (청산)문제에 대한 각성과 분노를 빼고 그 충돌의 격렬성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²³⁾

사실, 서독 초대 총리인 아데나워(Konrad Adenauer)시기에 실질적인 나치 범죄 규명 및 청산 작업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1958년, 동유럽에서 학살에 가담한 나치 ‘울름 특공대 재판’(Ulmer Einsatzkommando-Prozess)과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²⁴⁾ 나치 경력자들의 정부 요직 활동이 대표적인 증거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는, 나중에 68운동의 핵심조직으로 올라서는 ‘독일사회주의학생연합’(SDS)이 1959년 서베를린에서 주최한 ‘속죄하지 않은 나치 사법부’ 같은 전시회로 드러났다.²⁵⁾ 나치 수용소에서 탈출한 경험이 있는 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인식도 유사했다. 나치 범죄라는 “그 악몽이 독일보다 잘 감지되지 않는 곳도, 잘 얘기되지 않는 곳

22) 우리 학계에서는 ‘긴급조치법’으로도 불리지만 본고에서는 ‘비상사태법’이라고 칭한다. 왜냐하면 군사쿠데타로 탄생한 우리 제4공화국 헌법에서, 법치국가 사상 유례가 없는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긴급조치법’과의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상사태법’은 박정희 독재 정권하의 긴급조치와는 달리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 위기의 비상상황을 대비한 일면 ‘정상적인’ 법률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국가 ‘비상사태시’에 부여되는 ‘국가긴급권’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긴급권제도와 각국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김철수, 『헌법학』 상, (박영사, 2008), 180~196쪽 참조. 독일의 ‘비상사태법’ 및 그 해설은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idelberg, 1995)[콘라트 헤세, 계획열 옮김, 『통일 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428~452쪽 참조].

23) Norbert Frei, *1968: Jugendrevolte und globaler Protest* (München, 2017), pp.77f 참조.

24) Kleßmann, *Zwei Staaten*, p.181.

25) Frei, *1968*, p.79f.

도 없다”²⁶⁾는 그의 진단은 당대 지식인과 학생들의 판단 기준이 될 만했다.

비상사태법의 역사는 사실 1949년 건국 및 기본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지만, 앞서 말한 이유로 서독 초기 ‘기본법심의회’(Parlamentarische Rat)는 비상사태에 대한 법 규정을 단념했다.²⁷⁾ 195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준비되던 비상사태법은 1960년 1월 내무장관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가 최초로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이른바 ‘슈뢰더 초안’은 야당 사민당의 반대로 좌초할 운명이었다. 슈뢰더가 내놓은 <기본법 보완을 위한 법 초안>에 따르면, 서독의 “자유민주적 근본 질서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 비상사태에 대한 항목 115a가 기본법에 포함된다.²⁸⁾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기본법의 “5조와 8조, 9조, 11조, 12조”에 보장된 근본적인 권리인 ‘의견표명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주거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었다.²⁹⁾

‘슈뢰더 초안’은 비상사태법의 도입 논거가 연합국이 전후 서독에서 보유한 이른바 ‘유보권’ 해소라고 못 박았다.³⁰⁾ 1954년 서독이 연합군과 맺은 ‘독일 조약’(Deutschland-Vertrag)의 5조 2항에 따르면, 연합국은 내외적 비상사태가 서독에서 발생할 경우 특별한 권한을 보유했는데 그와 관련해 이렇게 말한다. “3개국 열강이 서독에 진주하는 병력에 대한 안전의 보호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보유하고나 행사한 권리”를 즉각적으로 해소하려면, 독일 정부가 “입법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전권을 보유함으로써 공적인 안전과 질서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맞서는 능력을” 확보하고, 3개 열강 군대의 “안전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책을 마련하는 상황” 필수적이었다.³¹⁾ 즉 비상사태법은 전쟁이나 다른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직 점령국들 수중에 있던 특별 권한을 서독 정부에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연합군의 유보권을 해소해야 진정한 주권 국가가 된다고 주장이 법 도입의 명분이었다.³²⁾

26) Hannah Arendt, “Besuch in Deutschland 1950. Die Nachwirkungen des Naziregimes,” in: Marie L Knott, ed., *Zur Zeit. Politische Essays* (Berlin, 1988), p.44.

27) Peter Borowsky, “Große Koalition und Außerparlamentarische Opposition”, in: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1998), Heft 258, p. 18 (<https://www.bpb.de/izpb/10098/grosse-koalition-und-ausserparlamentarische-opposition?p=all>). 바이마르헌법 48조는 다음과 같다. “독일 국가에서 공공의 안정과 질서가 교란되거나 그럴 위협에 처하면, 대통령은 그 안정과 질서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Oberreuter, *Notstand und Demokratie*, p.310. 김철수, 『학설관례 헌법학(상)』, 184~185쪽; 고문현 「독일의 비상사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66집, 2014, 377~402 가운데 379쪽, 주)1도 참조.

28) Bundestags-Drucksache III/1800; <http://dipbt.bundestag.de/doc/btd/03/018/0301800.pdf>, p.2.

29) Ibid.

30) Ibid., p.3.

31) Ibid.

32) Kleßmann, *Zwei Staaten*, p.245f 참조. 사실, 이 논리는 이웃 프랑스나 영국 같은 여타 나라들에서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역사의 부담과 그 부담의 기억이 가하는 압력과 우려였다. 즉, 법안의 ‘필요성’과 비판의 ‘정당성’이 충

결국, 비상사태법의 뒤늦은 도입 시도는 역사적 경험과 결부된 서독 초기 역사가 빚어낸 일이었다. 하지만 ‘슈뢰더 초안’은 역사의 무게와 부담을 감안하는 고민이 별로 없었다. 법안을 준비하던 내무부 담당자들은 초기 법률안을 통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기본권뿐 아니라 의회의 권한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보장하려고 노력했고, 이는 ‘행정부의 비상 지시권’이나 ‘연방군의 국내 투입’ 등의 형태로 그 법안에 반영되었다.³³⁾ 심지어 나치시기에 걸맞은 구상도 등장한다. 나중 60년대 중반에 SDS의 공격 받은 루돌프 토이카(Rudolf Toyka)와 볼프 기젤러(Wolf Gieseler)를 비롯해 나치당원 경력을 가진 몇몇 내무부 담당자들과 관련된다. 이들은 반역자와 상습범뿐 아니라 초빙 노동자와 외국인을 넘어 독일 노동자마저 잠재적인 안보 위협 세력으로 보았을뿐더러, 국가 안위를 위해 법원 지시 없이도 구금하거나 특별한 억류 캠프를 도입하는 것까지 고려했다.³⁴⁾ 이는 초창기 비상사태법의 구상이 나치 시기의 발상법과 다르지 않았고, 차후 반대 진영의 논리가 결코 터무니없는 사실이 아님을 의미한다.

여하튼, 내무장관 스스로가 이 법을 “비상사태는 [...] 행정부의 시간이다”³⁵⁾라고 말한 대로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지고 다양한 시민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었다. 게다가 연방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나치의 권력 장악과 결부되는 바이마르헌법과 닮기도 했기에 그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³⁶⁾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연방의회에서 2/3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노조가 근본적으로 반대했기에 사민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³⁷⁾ 노조의 반대 이유는 분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비상시에 정부가 노동조합의 파업권과 단결권을 제한하고 파업 노동자에 맞서 심지어 군사적인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⁸⁾ 같은 해 10월 금속노조가 그 법에 맞서 “파업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수단으로”³⁹⁾ 싸우겠다고 결의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렇게 ‘슈뢰더 법안’은 빛을 보지 못했다.

1963년 1월 새 내무부 장관 헤르만 호체를(Hermann Höcherl)이 제출한 법안은 더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 1962년 가을의 ‘슈피겔 사건’ 때문이었다. 10월 26일 주간 『슈피겔』에 대한 수색과 발행인 루돌프 아우크슈타인(Rudolf Augstein)의 체포로 시작된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부 권력 남용’의 전형처럼 비쳤다. 슈피겔 사건은 “비상사태법이 통과되면 우리 민주주의와 자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낱낱

돌하는 지점에는 ‘과거와 경험, 그리고 기억과 책임’의 문제가 교차하고 있었던 것이다.

33) Diebel, »Stunde der Exekutive«, p.82.

34) Ibid., pp.112~120 참조.

35) *Verhandlungen des Deutschen Bundestages* 1960, Bd. 47, p.7177.

36) Spornol, *Notstand der Demokratie*, p.19.

37) Kleßmann, *Zwei Staaten*, p.246f.

38) Krüger, “Notstandsgesetze”, p.328f.

39) Ibid., p.329.

이 보여주었다”⁴⁰⁾는 비판의 목소리는 일견 자연스러웠다. 그 사건은 “비상사태법 맞보기”로 비치기 십상이었다.⁴¹⁾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제출된 것이 이른바 ‘회해를 초안’(Höcherl-Entwurf)이었다. 물론 새 법안은 얼마간의 변화가 있었다. 우선 내외적 비상사태를 구분하고, “연방의회 의원 20명과 연방상원의원 10명으로 구성”되어 ‘긴급의회’(Notparlament)로 기능할 “[긴급]위원회”([Notstands]ausschuss)가 처음 도입되면서 의회 기능의 가능성과 장을 열어두었다.⁴²⁾ 하지만 위급 상황에서 연방 총리의 동의로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고,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동일하고 ‘정부의 비상 지시권’을 비롯한 행정부의 특별한 위치에도 변함이 없었다.⁴³⁾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국가권력의 강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⁴⁴⁾ 즉, 기존의 방점과 강조는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해들은 노조뿐 아니라 외부에서까지 비판을 불러왔다. 나중 의회외부저항운동(APO)의 양대 주축이 될 독일사회주의학생연합(SDS)과 ‘군축캠페인’(KfA: Kampagne für Abrüstung) 및 교회 대표까지 그 법에 반대하고 나섰다.⁴⁵⁾ 비판은 계속된다. 역시 APO의 구성원이 될 ‘인도주의 연합’(Humanistische Union)이 64년 12월에 모든 연방의회 의원들을 향해 비상사태법 반대 호소문을 냈다.⁴⁶⁾ 그런 상황에서 연방 법사위 소속 사민당 의원 프리드리히 쉐퍼(Fried Schäfer)는 새 법안을 놓고 의 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1933년에서 1945년까지의 나쁜 경험이 오늘날에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충격”을 남겼고, “국가의 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 감호’의 가능성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⁴⁷⁾ 이는 그 법안의 골간에 여전히 바이마르 및 나치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음을 비판하는 동시에 여론의 압력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입법 시도는 의회 내에서 좌초했다.

1965년 5월 정부는 이른바 ‘벤다 초안’(Benda-Entwurf)을 내놓았다. 이전 초안들과 상당히 구별되는 것이었다. 내무장관 에른스트 벤다(Ernst Benda)에 따르면, 비상사태는 더 이상 ‘행정부의 시간’이 아니었고, 의회가 “국가의 안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했다.⁴⁸⁾ 사민당이 줄곧 반대해온 행정부의 “비상 지시 권한”이 사라지고,⁴⁹⁾ 기본권

40) Die Redaktion, “Zur Notstandsgesetzgebung”, in: *Blätter* 7 (1962), p.928.

41) Sozialistischer Deutscher Studentenbund (SDS) Bundesvorstand (BV), Rundschreiben No. 1 (1962.10.31), in: *APO und soziale Bewegungen-Archiv* in Berlin, SDS-BV, *Spiegel-Affäre*, 1962, p.1f

42) Bundestags-Drucksache IV/891: <http://dipbt.bundestag.de/doc/btd/04/008/0400891.pdf>, p.2.

43) Ibid., pp.2~4.

44) Ibid., p.5.

45) Krüger, “Notstandsgesetze”, p.330.

46) Ibid.

47) Diebel, »Stunde der Exekutive«, p.149.

48) Krüger, “Notstandsgesetze”, p.331.

침해의 조건과 범위도 새로 규정되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연방의회의원 2/3와 연방 상원의원(참사회 성원) 1/3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Gemeinsame Ausschuß)가 비상사태법의 통과를 책임진다.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공동위원회가 모이지 못하는 경우 연방정부가 법의 제정을 담당할 수 있지만, “공동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⁵⁰⁾ 나아가 기본법에 보장된 의견 표명의 자유(5조)도 서독이 처한 “위험의 방어를 필요한 정책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만 제한이 가능하고, 집회(8조) 및 결사의 자유(9조) 역시 “서독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 금지 혹은 제한될 수 있는 형태로 더 엄밀히 규정되었다.⁵¹⁾

따라서 비상시 계획된 ‘언론 검열’, ‘편지와 전화의 감시’, ‘연방주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시 권한’ 등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사민당의 견해차가 극복 불가능은 아니었다. 하지만 앞서 살핀 노동조합 안팎의 비판과 항의에 직면한 사민당의 일부가 등을 돌렸다.⁵²⁾ 사민당 입장에서는 같은 해 9월에 예정된 연방의회 선거를 감안하면 특히 노동조합의 비판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에 실망한 기민당은 선거전에서 사민당을 “노동조합의 포로”라고 비난했다.⁵³⁾ 4월, 베를린에서 SDS와 사민당 청년조직 ‘사민주의학생연합’(SHB)를 비롯한 여러 학생단체의 수뇌부도 비상사태법 반대 공동성명을 내어, 모든 대학에 10만장의 반대 유인물을 뿌리고 천개의 플래카드를 내걸겠다고 공언했다. 다음 달 프랑크푸르트에서는 SDS를 비롯한 11개 청년 및 학생단체의 주도로 ‘비상사태법 반대 행동위원회’가 결성되었다.⁵⁴⁾ 1960년대 중반부터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학생운동 진영도 그 법에 대한 비판의 대오에 본격적으로 가담한 것이었다. 여하튼 6월 24일 연방의회 표결에서 법 제정에 필요한 2/3를 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⁵⁵⁾

3. 대연정과 비상사태법 반대투쟁의 심화

49) Diebel, »Stunde der Exekutive«, p.154.

50) Ibid., p.154f. Bundestags-Drucksache IV/3494: <http://dipbt.bundestag.de/doc/btd/04/034/0403494.pdf>, p.2ff 참조.

51) Ibid., p.4f.

52) Borowsky, “Große Koalition und Außerparlamentarische Opposition”, p. 18.

53) Michael Schneider, *Kleine Geschichte der Gewerkschaften* (Berlin, 2000), p.312.

54) Thomas P. Becker and Ute Schröder eds., *Die Studentenproteste der 60er Jahre. Archivführer - Chronik - Bibliographie* (Köln, 2000), p.98f.

55) Krüger, “Notstandsgesetze”, p.331. ‘벤다 법안’의 이러한 변모를 오버로이터는 “비상사태의 의회화”(Parlamentarisierung des Notstandes)라고 규정한다. Oberreuter, *Notstand und Demokratie*, p.209. 하지만 이런 평가는 의회가 비상사태를 주도한다는 의미로 읽히기 쉬운 대목이기에,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비상사태에서 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민당의 계속된 입법 노력과 나란히 비상사태법에 대한 거부와 비판의 파고도 높아져갔다. 1966년 5월 8일, 다시금 SDS와 SHB 등의 4개 학생조직이 공동 성명서를 제출해, 다음날 시작되는 독일노총(DGB)의 연방 정기총회에 법안 반대를 확고히 하도록 요구했다. “오직 노동조합과 지식인들의 공조 활동을 통해서만 비상사태법으로 인한 기본법 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⁵⁶⁾ DGB 연방총회는 호응이라도 하듯 법안 반대를 분명히 선언했다. 비상사태법이 “민주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조의 집회와 결사 및 파업의 권리를 위협”하기 때문이었다.⁵⁷⁾

같은 해 8월, KfA(군축캠페인)와 SDS의 발의로 ‘민주주의 비상사태 감시국’(KND: Kuratorium Notstand der Demokratie)이 금속노조(IG Metall)의 본거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설립되었다.⁵⁸⁾ 감시국에는 학자와 저술가, 종교인 및 노동조합 최고 간부들이 소속되었는데,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과 마르틴 발저(Martin Walser)를 비롯해, 물리학자 막스 보른(Max Born)과 세계교회협의회 의장 마르틴 니뮐러(Martin Niemöller) 등을 망라했다.⁵⁹⁾ 한편, SDS도 9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모든 비상사태 입법에 맞서 투쟁한다”고 천명했다.⁶⁰⁾ 10월 20일, 대연정의 가시화 속에 KND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민주주의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조직한 대형 행사는 “대학생과 학자 및 노조가 함께한 통일적인 저항”의 정점을 기록하며 비상사태법에 대한 거대한 비판의 장이 되었다.⁶¹⁾ 2만 명이 집결한 이날의 종결 집회에서 KND 실무위원회 의장인 법학자 헬무트 리더(Helmut Ridder)가 폐막 연설을 하며, 비상사태법에 대한 노조의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⁶²⁾ 또한 금속노조 위원장 오토 브레너(Otto Brenner)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를 비롯해 작가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Hans Magnus Enzensberger) 같은 여러 분야의 유명인이 연단에 올랐다. “우리는 반격을 시작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라고 포문을 연

56) Becker and Schröder eds., *Studentenproteste*, p.107.

57) DGB Bundesvorstand, Protokolle des 7. ordentlichen Bundeskongresses des DGB in Berlin, 9-14. Mai 1966, Düsseldorf, Anhang p.12f., 237f., Schneider, *Demokratie in Gefahr?*, p.170에서 인용.

58) Borowsky, “Große Koalition und Außerparlamentarische Opposition”, p. 18.

59) Ibid.; Krüger, “Notstandsgesetze”, p.332.

60) Becker and Schröder eds., *Studentenproteste*, p.113.

61) Michael Schneider, “Der Konflikt um die Notstandsgesetze”, in: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8/1986, pp.482~494 가운데 p.490.

62) Joachim Perels, “Wider die Umwandlung von Macht in Recht. Zum Tod von Helmut Ridder (1919-2007)”, in: *Kritische Justiz* 2007, pp.196~198 가운데 p.196 (<https://www.nomos-elibrary.de/10.5771/0023-4834-2007-2-196/wider-die-umwandlung-von-macht-in-recht-zum-tod-von-helmut-ridder-1919-2007-jahrgang-40-2007-heft-2>). 감시국 실무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리더는 1967년 10월 24일 본에서 열린 감시국의 연례 대회에서 비상사태법 반대투쟁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연설했다. (https://www.blaetter.de/sites/default/files/downloads/zurueck/zurueckgeblaettert_200711_1.pdf).

철학자 블로흐는 역사와 미래를 호명하며 이렇게 연설을 마무리했다. “[바이마르헌법] 제48조와 함께한 낡은 사람들은 이미 과거를 잃어버렸지만, 비상사태법과 함께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⁶³⁾

이런 여세를 몰아 공장에서도 비상사태법 반대위원회들이 등장하고, 베를린 자유대학(FU)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다양한 향의 시위가 조직되었다. 1966년 말 결국 대연정이 출범하자, 여러 노조와 대학생 조직, 평화운동가 단체, 교수와 목사를 망라하는 다양한 반대 세력이 APO(의회외부저항운동)의 이름하에 집결해 비상사태법 반대운동의 구심점으로 올라선다.⁶⁴⁾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어(Kurt Georg Kiesinger)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의 결성은 의회 내 유의미한 야당의 부재 속에, 행정부 강화를 뜻하는 비상사태법에 대한 반감을 높이며 서독 공론장의 여론을 더 달구었다. 당시 경제상황의 상대적 침체와 극우 독일민족민주당(NPD)의 선거 성공 및 주 의회 입성은 바이마르공화국 말기의 악몽을 일깨우고, 그 시기에 대한 유비(類比)가 여론을 무겁게 눌렀다. 비상사태법 제정을 위해 대연정이 결성되지는 않았지만, 법안 통과는 새 정부의 핵심 사안임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⁶⁵⁾

앞선 ‘벤다 초안’을 골간으로 대연정 내부에서 초당적인 12인 위원회가 법안 작업을 진행한 결과, 내무장관 파울 뤼케(Paul Lücke)가 67년 4월 6일에 새로운 법률안을 제출했다.⁶⁶⁾ 이른바 ‘뤼케 초안’(Lücke-Entwurf) 역시 연합국의 ‘유보권’ 해소를 위해 비상사태법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비상사태법을 통한] 기본법의 보완은 무엇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강국이 점령기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는 비상사태권을 독일 헌법질서의 규정을 통해 대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⁶⁷⁾ 뤼케의 내무장관 재임 동안(1965-1968) 법안과 관련된 내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다. 뤼케는 사회정치적인 반대에 대한 그간의 ‘대결적 입장’을 내려놓고 ‘국가권위주의적인 도그마’에서 물러났다. 그 결과 내무부의 관련자들은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관련 행사에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았다.⁶⁸⁾ 뤼케 법률안은 그런 변화의 바람이 담긴 것이었다. ‘더 강화된 자유화 및 민주화의 경향’을 담아 새 법안에서 ‘행정부의 시간’은 “전체 인민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공언되었다.⁶⁹⁾

63) Siegwald Lönnendonker and Tilman Fichter, eds., *Freie Universität Berlin 1948-1973. Hochschule im Umbruch, Teil IV: Die Krise (1964-1967)* (Berlin, 1975), p.355f; Burns and van der Will, *Protest and Democracy*, p.108.

64) Krüger, “Notstandsgesetze”, p.332.

65) Schneider, “Der Konflikt um die Notstandsgesetze”, p.490; Hans Boldt,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Band 2: Von 1806 bis zur Gegenwart* (München, 1990), p.330. 1960년대 중후반 NPD의 선거 성공과 그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정대성, 「민주주의 위기와 독일 68운동」, 129~134쪽 참조.

66) Boldt,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p.332f.

67) Bundestags-Drucksache V/1879: <http://dipbt.bundestag.de/doc/btd/05/018/0501879.pdf>, p.12.

68) Diebel, »Stunde der Exekutive«, p.159f.

하지만 법안은 그런 희망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⁷⁰⁾ 뤼케 법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방어를 위한 강제 복무’, ‘비상 의회로 기능할 공동위원회의 결성’, ‘내적인 비상사태에서 경찰력을 병력으로 투입’, ‘정부의 비상 지시권 포기’, ‘기본권의 제한’ 등이었다.⁷¹⁾ “전체 인민”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노동조합은 특히 파업권과 관련된 91조 4항을 맹비난했다. 비상사태시, “노동조건과 경제적 조건의 보존과 향상을 위한” 파업이라는 기본적 노동자의 투쟁 권리를 이른바 ‘적법한 파업’에만 한정했기 때문이었다.⁷²⁾ 게다가 노조는 ‘공동위원회’가 정부의 도구로 이용될 여지와 더불어, 의무복무를 통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과 내적 비상사태시 병력 투입도 비판했다. 노조를 넘어서는 APO 진영 전체의 비판도 홍수를 이루는 가운데 KND(민주주의 비상사태 감시국)는 ‘공동위원회’가 “순수한 행정부 독재를 위한 사이버 의회적인 무화과 잎”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⁷³⁾ 이렇게 67년 봄과 초여름은 새로운 비상사태법 초안을 둘러싼 논쟁과 비판의 파고가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6월 초 서독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적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독재자 이란국왕의 국민방문에 항의하는 서베를린 시위에서 경찰이 극히 폭력적인 진압 도중 대학생 베노 오네조르크(Benno Ohnesorg)를 쏘아 숨지게 한 ‘6월 2일 사건’이었다.⁷⁴⁾ 비판자들의 눈에 이 사건은 ‘행정부의 과잉대응’이자 비상사태법을 선취한 사건으로 비쳤다. 비무장한 시위 학생의 ‘사살’⁷⁵⁾은 전국적인 분노를 유발하고 반대 진영을 한층 강화시켰다. 학생들에게 그 사건은 비상사태법 통과 이후의 시나리오로 보였고 법안이 APO의 파괴 수단이 될지 우려했다.⁷⁶⁾ 운동의 급진화가 급물살을 타며 비

69) Ibid., p.175.

70) 다양한 의회외부적인 비판에 직면해서 결국은 변모를 거듭한 비상사태법은 특히 뤼케 장관 시기(1965-1968)에 두드러지게 변화한다. 물론 1962년 ‘슈피겔 사건’과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냉전의 고조가 일종의 영향을 미치고 비상사태법에 대한 대중의 지식이 커지면서 이미 회흐를 장관 시기(1961-1965)에 대화와 협상이 불가피해 지지만, 진정한 변화는 뤼케-법안에서 돋보인다.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노동조합과 좌파 지식인 및 대학생 반대자들로 이루어진 APO의 비판이었다. 즉 ‘민주주의 비상사태 감시국’을 중심으로 한 APO의 격렬한 비판의 결과, 국가적 비상사태법의 수십 년간의 전통적 내용이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형태의 법이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Diebel, »Stunde der Exekutive«, pp.159~174 참조. 디벨은 APO의 비판 및 저항과 나란히 동독의 선전도 법의 내용 변화에 기여했다고 본다.

71) Schneider, “Der Konflikt um die Notstandsgesetze”, p.490; <http://dipbt.bundestag.de/doc/btd/05/018/0501879.pdf>.

72) Bundestags-Drucksache V/1879; <http://dipbt.bundestag.de/doc/btd/05/018/0501879.pdf>, p.3. Schneider, *Demokratie in Gefahr?*, p.203도 참조.

73) Ibid., pp.203~205 참조 및 인용은 p.205.

74)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대성, 「독일 68운동의 ‘공공역사’ I: 대학생 베노 오네조르크 추모조형물」 『독일연구역사와 문화』 32 (2016. 08), 205~219쪽 참조.

75) 2012년 1월 독일 검찰과 『슈피겔』이 새로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정당방위 주장과는 달리 경찰이 희생자의 바로 뒤에서 ‘사형집행’하듯 쏘았고 이런 ‘진실’은 체계적으로 은폐되었다. “Aus kurzer Distanz,” in: *Der Spiegel*, Nr.4, (2012.1.23.), pp. 36~45 가운데 p. 42.

76) Spornol, *Notstand der Demokratie*, p.77ff; Burns and van der Will, *Protest and Democracy*, p.110.

상사태법을 둘러싼 대결과 비판도 더 날이 섰다.⁷⁷⁾ SDS 지도자로 APO 전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던 루디 두치케(Rudi Dutschke)는 “공개적으로 토론만 되던 비상사태법이 [...] 국민방문에서는 실행되었다”고 비판했다.⁷⁸⁾ 대연정에서 빠진 자유민주당(FDP) 정치인 한스 엠데(Hans Emde)도 “우리 코앞의 비상사태법과 연결해보니” 경찰의 태도는 “아주 끔찍하다”고 쏘아붙였다.⁷⁹⁾

대학생 오네조르크의 죽음은 6월 13일 ‘튀케 초안’의 연방의회 1독회와 결부되어 저항과 비판의 물결을 드높였다. 가령, 6월 동안 ‘부활절행진운동’(Ostermarschbewegung)만 해도 독자적으로 350개의 도시에 비상사태법을 다루는 ‘정보실’(Informationssstände)을 설립하고, 약 500건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법률적 변화를 다루는 1200여권의 책을 팔고 2백만 장의 관련 팸플릿을 뿌렸다. 부활절행진운동을 비롯한 APO 활동가들이 보기에 경찰의 오네조르크 사살은 서독에서 민주주의의 파괴가 이미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론적으로만 예측된 민주주의 역행의 과정이 이 사건으로 명백해진 듯했다. 이제 비상사태법의 저지는 “서독의 재민주화”로 가는 도정의 핵심 목표로 올라섰다.⁸⁰⁾ 두치케는 7월의 『슈피겔』 인터뷰에서 비상사태법이 자유대학에서 준비 중인 ‘대항대학’(Gegen-Universität) 혹은 ‘반(反)대학’의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⁸¹⁾

대학생의 죽음을 동반한 ‘6월 2일 사건’을 가능한 비상사태법의 결과로 파악한 APO의 저항은 이제 비상사태 입법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목표를 가장 전면에 내세웠다.⁸²⁾ 1967년 여름은 서독 전역이 그야말로 각종 비상사태법 반대 행동의 물결로 출렁였다. KND의 지역 행동위원회가 전국 곳곳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프랑크푸르트와 아우쿠스부르크, 뮌헨 같은 곳의 행동위원회가 지역 거점 역할을 해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노르트라인-베르스팔렌 같은 주에서는 지역 위원회들이 ‘민주주의 비상사태 주별 감시국’으로 결집했다.⁸³⁾ APO 진영 내 지식인 그룹의 대표 격인 교수들의 반대와 항의 목소리를 주도한 쪽은 법학자와 정치학자였다. 1967년 11월, TV와 라디오로 중계된 최초의 비상사태법 관련 청문회에서 KND 실무위원회 의장인 법학자 헬

77) Diebel, »Stunde der Exekutive«, p.176.

78) Spornol, *Notstand der Demokratie*, p.78.

79) Ibid.

80) Pavel A. Richter, “Die Außerparlamentarische Oppositio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66 bis 1968”, in: Ingrid Gilcher-Holtey, ed., 1968. *Vom Ereignis zum Gegenstand der Geschichtswissenschaft* (Göttingen, 1998), pp.35~55 가운데 p.48.

81) Rudi Dutschke, “‘Steine sind ohnmächtig’: Gespräch mit Manfred W. Hentschel”, Georg Wolf, ed., *Wir Leben in der Weltrevolution* (München, 1971), pp.83~99 가운데 p.92.

82) Jung, *Kampf gegen das Presse-Imperium*, p.125. 하지만 이 6월 2일 사건으로 인해 또 하나의 기획이 탄생했는데, 서베를린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배를 하고, APO가 볼 때 조작적인 보도로 학생들에 대한 박해분위기를 고조시킨 슈프링어 콘체른에 맞선 ‘반슈프링어 캠페인’이었다. Ibid. 슈프링어 언론제국에 맞선 이 캠페인은 이후 ‘비상사태법 반대캠페인’과 더불어 APO의 쌍두마차를 이룬다.

83) Spornol, *Notstand der Demokratie*, p.78.

무트 리더와 나란히 정치학자 볼프강 아벤트로트(Wolfgang Abendroth)와 오이겐 코곤(Eugon Kogon)이 의회 및 정부 대표들에 맞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⁸⁴⁾ 거기서 노조 대표인 루트비히 로젠베르그(Ludwig Rosenberg)도 비상사태시 복무 의무 및 불만족스러운 파업권의 확보 등을 이유로 반대를 분명히 했다.⁸⁵⁾ 수도 본의 연방의회에서 개최된 청문회의 목적은 비상사태법에 대한 객관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반대파들에게 공식적인 장을 제공해 의회외부에서 폭발하는 반대운동을 의회 내로 끌어들이려는 것이었다.⁸⁶⁾ 물론 그런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반대자들은 청문회가 비상사태법을 위한 “알리바이 같은 행사”라고 비판하거나,⁸⁷⁾ 다른 한편으로 청문회의 성사 자체가 “성공적인 반대”의 결과라고 보았다.⁸⁸⁾ 청문회가 열린 11월, 기존 학술활동에 맞서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창출하고 함부르크와 뮌헨, 프랑크푸르트, 보훔, 하이델베르크 등으로 급속히 번져간 ‘비판대학’(Kritische Universität)의 핵심 주제도 바로 비상사태법 문제였다.⁸⁹⁾ 베를린의 ‘APO-문서고’에 보관된 자료들은 ‘비상사태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⁹⁰⁾

여하튼, 청문회에 참석한 지식인들뿐 아니라 SDS와 여타 노조 비판자들이 보기에, 새로운 법률 초안이 국가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얼마나 결별했는지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⁹¹⁾ 무엇보다 비상시 연방정부의 힘이 효과적인 의회 역할을 여전히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았다. 가령 ‘공동위원회’가 동독의 ‘국가평의회’(Staatsrat)처럼 기능해 비상시 의회의 역할을 넘겨받아 정부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그런 맥락이었다.⁹²⁾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연방의회의 소수 야당으로서 APO의 저항과 유사한 목소리를 낸 자유민주당(FDP)이 기본권 침해와 국가 권력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파업권 보장을 확실히 하는 독자적인 비상사태법 초안을 제출하며 압력을 행사한다. 의회 내부의 이런 비판은 의회 외부적인 압력의 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고, 연방의회의 법사위와 내무 위원회는 ‘뤼케 법안’의 수정작업을 위한 수차례의 회의를 개최한다.⁹³⁾

1968년 봄, 기민기사련과 시민당은 대연정의 틀에서 비상사태법의 공동 초안 및 통과에 합의한다. 이런 상황은 반대 진영의 새로운 저항 동력으로 작용하는데, 같은 해

84) Kraushaar, *Achtundsechzig*, p.166.

85) Diebel, *»Stunde der Exekutive«*, p.179.

86) Oberreuter, *Notstand und Demokratie*, p.216f; Spornol, *Notstand der Demokratie*, p.80f.

87) Krüger, “Notstandsgesetze”, p.333.

88) Spornol, *Notstand der Demokratie*, p.81.

89) 정대성, 「민주주의 위기와 독일 68운동」, 127쪽.

90) *APO und soziale Bewegungen - Archiv* in Berlin.

91) Diebel, *»Stunde der Exekutive«*, p.180.

92) *Ibid.*, p.181.

93) *Ibid.*, p.181f.

4월 11일 부활절 목요일에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난다. SDS 및 APO의 핵심 인물인 두치케가 서베를린 백주대로에서 극우 성향의 노동자 요제프 바흐만(Josef Bachmann)의 총에 맞는다. 두치케는 그 신나치 청년에게 “무질서의 화신”이자 “혁명적인 악”에 다름 아니었다.⁹⁴⁾ 두치케가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동안, 서독 전역에서 바리케이드가 세워지고 가두투쟁을 동반하는 거대한 저항이 일어난다. 시위와 저항의 주된 목표는 두치케와 운동 세력에 대한 비방과 폭력행위를 사주했다고 지목된 보수 거대 언론사인 ‘슈프링어 언론출판 제국’의 서베를린 본사와 각지의 인쇄소였다. 슈프링어사(Axel Springer Verlag)에서 나오는 신문의 배포를 저지하려는 ‘슈프링어 봉쇄’가 곳곳에서 결행되었다. 두 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를 낳은 이 사건은 ‘부활절 소요’ 혹은 ‘부활절 봉기’로 역사에 이름을 올린다.⁹⁵⁾ 하지만 그간 불 지피진 비상사태법 반대운동의 효과도 슈프링어 언론제국을 향한 분노와 뒤섞여 나타났다. 가령 “슈프링어 신문 - 비상사태 신문”이나 슈프링어의 “언론 테러와 비상사태법”⁹⁶⁾에 대한 시위 호소 전단은 두치케에 대한 충격 테러를 야기했다고 지목된 슈프링어사와 비상사태법을 연결시키고 있었다.

이 부활절은 격동은 양면적인 효과를 낳았다. 물론 슈프링어사와 비상사태법이 쌍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지만, 4월 내내 이어진 시위와 저항의 공격 목표는 주로 슈프링어 언론제국이었기에 잠시 비상사태법 반대는 뒷자리로 물러났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부활절 봉기’는 대규모 시위와 분노가 거리를 휩쓸고, 바이마르시기 이후 처음으로 가두투쟁이 재현되며, 이어지는 5월의 비상사태법 반대 총력투쟁에 일종의 동력을 제공하기도 했다.

4. 1968년 5월 - 최종 대결과 그 결과

68년 5월, 반대의 물결은 거대한 저항의 합성과 상상력 넘치는 행동으로 점철되며 최고조를 이루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와 집회에 참가해 비판과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거리연극과 더불어 다양한 직접행동을 연출하며 연대의 어깨를 걸었다. 그 결과 비상사태법의 최종 통과가 시도될 5월의 대결은 ‘뜨거운 저항’으로 들끓으며 주목

94) Burns and van der Will, *Protest and Democracy*, p.112. 바흐만은 “더러운 공산주의자 돼지 새끼!”라는 말을 뱉고 두치케의 오른쪽 뺨과 머리와 어깨에 총알 3발을 쏘았다. 7년형을 선고받은 히틀러 추종자 바흐만은 1970년 2월 24일 감옥에서 자살한다. Jung, *Kampf gegen das Presse-Imperium*, p.240.

95) 두치케 암살기도 사건과 부활절 봉기에 대해서는 정대성, 『68혁명』, 89~92쪽 참조.

96) Heinz Grossmann and Oskar Negt, eds., *Die Auferstehung der Gewalt. Springerblockade und politische Reaktion in der Bundesrepublik* (Frankfurt a.M., 1968), p.76f.

할 만한 결집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5월의 첫날 서독 도처에서 열린 ‘메이데이 집회’에서부터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령 2만 명이 집결한 함부르크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APO의 성원들은 비상사태법을 비판하고,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시민당 연사들에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⁹⁷⁾

둘째 주 들어서도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행사와 시위가 빈발했다. 5월 7일, 전날 비상사태법에 맞선 학생총회가 열린 함부르크대학에서⁹⁸⁾ SDS 회원들이 비상사태 상황을 가정하고 “비상사태-해프닝”을 연출했다. 곤봉으로 무장한 “대학 규찰대” 소속 유니폼을 입고 “이것은 비상사태다!”라며 명령을 내리고 불응자를 체포하고 교수들을 연구실에서 끌어내는 등 학내에서 시작된 연출된 직접행동은 인근 카페와 가게 및 백화점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연방의회가 비상사태법에 동의한다면 ‘이런 광경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쓰인 유인물을 보행자에게 배포했다.⁹⁹⁾ 상상력 넘치는 직접행동이였다. 이튿날 본(Bonn)에서는 비상사태법 통과에 반대해 500명의 목사와 교회 직원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동반된 현수막에는 “1933년 수권법 - 1968년 나치법”, “나치법에 맞서 기본법을 지키자” 같은 구호가 휘날렸다.¹⁰⁰⁾ 9일, 프랑크푸르트의 오페라 광장에서 비상사태법을 조롱하는 거리연극이 열렸고,¹⁰¹⁾ 마인츠에서는 학생과 교수들이 법안 반대 농성토론회를(Teach-in) 개최해 “민주주의가 비상사태국가로 전도될 것”을 우려했으며, 본에서는 55명의 교수들이 “연좌시위 전문가”를 동반하고 시위를 벌였다.¹⁰²⁾

결정적인 장면은 5월 11일에 펼쳐졌다. 이날 연방의회가 위치한 수도 “본으로의 집결행진”(Sternmarsch auf Bonn)은 10만 인파가 운집한 거대한 시위와 집회로 폭발한다.¹⁰³⁾ 서독 곳곳에서 버스와 특별기차, 자가용 편으로 술한 비상사태법 반대자들이 본으로의 저항의 도정에 올랐다. 도착 후 세 곳의 집결지에서 시내로 행진한 다음 본 대학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린다. “모든 민주주의자의 의무는 비상사태국가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다”¹⁰⁴⁾라고 적힌 거대한 플래카드 아래서, KND 서기인 헬무트 샤우어(Helmut Schauer)와 SDS 연방의장 카테 볼프(KD Wolff)를 비롯해 금속노조 수뇌부 게오르크 벤츠(Georg Benz)와 작가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 같은 APO의 대표인

97) Wolfgang Kraushaar, *Die 68er-Bewegung International: Eine illustrierte Chronik 1960-1969, III: 1968* (Stuttgart, 2018), p.203f.

98) Becker and Schröder eds., *Studentenproteste*, p.190.

99) Wolfgang Kraushaar, *1968: Das Jahr, das alles verändert hat* (München, 1998), p.142.

100) Kraushaar, *68er-Bewegung International*, p.260.

101) Ibid., p.263.

102) Ibid., p.265.

103) Brown, *West Germany and the Global Sixties*, p.239.

104) Ingrid Gilcher-Holtey, *Die 68er Bewegung: Deutschland·Westeuropa·USA* (München, 2001)[잉그리트 길허홀타이 지음, 정대성 옮김, 『68운동 - 독일·서유럽·미국』(들녘, 2006), 114쪽].

물들이 열정적인 비판연설을 쏟아냈다. 거대한 성공이자 APO가 추동하는 비상사태법 반대파가 이루어낸 ‘평화적인 저항의 절정’을 상징하는 대규모 집회였다.¹⁰⁵⁾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날 독일노총(DGB)이 도르트문트에서 단독 집회를 개최하며, APO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비상사태법은 없다”라는 모토로 진행된 시위 집회에서 ‘기존 형태로 제출된 법안’에 대한 비판과 거부가 천명되는 동안, 수도 본으로 가서 “APO와 어깨를 걸자”는 호소가 누차 외쳐졌지만, 노총과 APO의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⁰⁶⁾ 슈나이더는 이를 두고 “의심할 나위 없이 노조가 APO에서 퇴각을 완수한 것이다”라고 평가한다.¹⁰⁷⁾ 하지만 이를 ‘노조 전체의 APO로부터의 퇴각’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급단체로서의 독일노총(DGB)이 이날 독자적인 행보를 했음은 분명하고 이후 총파업도 거부했지만¹⁰⁸⁾, 비상사태법에 맞서는 산발적인 총파업 지지와 경고 파업 수행에서 드러나듯 여전히 APO와 함께하며 어깨를 거는 노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항의와 저항의 행동은 거세게 꼬리를 물었다. 13일 함부르크에서는 수업거부가 결행되고, 다음날 마인츠에서 2천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¹⁰⁹⁾ 연방의회의 비상사태법 2독회가 예정된 15일, 이를 전 교수들의 연대 선언에 힘입은 프랑크푸르트 대학생들은 학교를 점거하고 상상력을 동원해 독일 국가(國歌)를 이렇게 바꿔 불렀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사상의 자유도 저항도 모른다. 비상사태의 나라가 되기 전에 우리가 구해내자. 늦기 전에 비상사태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해내자.”¹¹⁰⁾ 대학생이 ‘학업 파업’을 결의하는 동안 프랑크푸르트 39개 공장에서는 1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경고파업이 수행되었고, 3천명의 중등학생이 수업거부와 거리 행진으로 응답했다.¹¹¹⁾ 이날 15일 하루에만 수많은 도시에서 시위와 집회, 파업과 봉쇄, 수업거부 등을 망라하는 각종 저항 행동이 펼쳐졌다. 수도 본을 비롯해 서베를린과 뮌헨, 보훔, 괴팅엔, 브레멘, 프라이부르크, 카셀, 슈투트가르트, 만하임, 뉘른베르크, 바트 고데스베르크 등 독일 전역이 비판과 저항의 물결로 뒤덮였다.¹¹²⁾

시위와 비판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연방의회에서 이들간의 논쟁을 거쳐 비상사태법이 2독회를 통과한 16일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명 교수들이 법안에 맞선 투쟁의 지지를 호소하고,¹¹³⁾ 다름슈타트에서는 5백 명의 학생과 조교 및 교수가 시위를 벌이

105) Kraushaar, 1968, pp.146~149; Spornol, *Notstand der Demokratie*, p.84f; Schneider, *Demokratie in Gefahr?*, p.245ff; Jung, *Kampf gegen das Presse-Imperium*, p.294; Kleßmann, *Zwei Staaten*, p.249.

106) Kraushaar, *68er-Bewegung International*, p.269.

107) Schneider, *Demokratie in Gefahr?*, p.245.

108) 정대성, 「독일과 프랑스 68혁명의 결정적 사건과 5월의 폭발」, 397쪽.

109) Becker and Schröder eds., *Studentenproteste*, p.193.

110) »1968 - Das Jahr der Revolution« (München, 2008) [Audio-CD, Track 8, 4분 55초경부터].

111) Kraushaar, *68er-Bewegung International*, p.274.

112) Ibid., p.275ff; Becker and Schröder eds., *Studentenproteste*, p.193f.

113) Kraushaar, 1968, p.156.

며 사민당 의원들에게 비상사태법 3독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도록 요구했다.¹¹⁴⁾ 18일과 19일에도 뮌헨과 뒤셀도르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울렸고, 19일 마르부르크에서는 “이 땅에서는 비상사태보다 배고픔이 낫다”라는 창의적인 모토로 89명의 학생들이 48시간 항의 단식투쟁을 시작했으며, 20일과 21일 역시 서베를린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APO 성원들이 주도한 항의와 시위 장면이 펼쳐졌다.¹¹⁵⁾

22일 프랑크푸르트 학생들은 집단행동에 돌입해 연좌시위(Sit-in)로 대학 정문을 봉쇄한다. ‘대학 안으로 들어가려면 시위중인 비상사태법 반대자들을 밟고 지나가라’는 선언과 다름없는 날선 직접행동이었다. 정문 위에 걸린 “이 출입구로 들어가는 사람은 나치의 동조자다”라는 문구에도 학생들이 비상사태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실히 드러났다.¹¹⁶⁾ 베를린 시위대가 편찬 플래카드의 내용 “비상사태 1848, 1933, 1968”¹¹⁷⁾ 역시 당시 비판자들의 생각을 분명히 보여준다. 1848년의 혁명적 위기 상황과 1933년 나치 집권의 위기가 다시금 1968년에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22일, 마인츠 학생 시위와 브레멘의 54시간 단식투쟁을 비롯해, 26일까지 프랑크푸르트와 뮌헨, 튜빙겐, 하노버 등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¹¹⁸⁾

5월 27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이 다시 점거되고, 시청 앞에서는 1만 5천명이 참가한 대규모 ‘비상사태법 반대집회’가 열린다. 베를린과 보훔, 함부르크와 하노버, 쾰른, 뮌헨 등에서도 학생들은 저항의 깃발을 들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공동시위와 총파업을 호소한다. 총파업 지지와 찬성 표명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실제로 인쇄 및 제지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다. 연극 「미스 줄리」를 중단한 테아터 암 투름(TAT)처럼 여러 도시의 극장이 진행 중인 공연을 중단하고 비상사태법 반대 선언서를 낭독하거나 항의 토론을 벌이는 한편, 극장 밖에서도 법안을 겨냥한 거리연극이 펼쳐져 시위와 저항의 무대를 급속히 넓혀갔다.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학생들이 비판의 무기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동안, 뮌헨 학생들은 비상사태법의 본질이 ‘나치법’임을 주장하듯 나치 친위대의 유니폼 행진을 직접 재현한다.¹¹⁹⁾ 이렇게 5월의 독일은 비상사태법을 저지하려는 분노와 저항의 열기가 하늘을 찔렀다. 5월 마지막 주에 관련 시위와 집회, 파업과 봉쇄, 연좌시위, 진입시위(Go-in), 농성토론회 등이 펼쳐진 저

114) Kraushaar, *68er-Bewegung International*, p.282.

115) Ibid., pp.285~290 인용은 p.286; Becker and Schröder eds., *Studentenproteste*, p.194f.

116) Ingrid Gilcher-Holtey, *1968: Eine Zeitreise* (Frankfurt a.M., 2008)[잉그리트 길혀홀타이 지음, 정대성 옮김, 『68혁명, 세계를 뒤흔든 상상력』, (창비, 2009), 114쪽].

117) Brown, *West Germany and the Global Sixties*, p.82.

118) Kraushaar, *68er-Bewegung International*, pp.291~299.

119) 길혀홀타이, 『68혁명』, 118~119쪽. 5월 25-28일 독일 전역의 극장에서 펼쳐진 비상사태법 반대 행동과 연출에 대해서는 Kraushaar, *68er-Bewegung International*, pp.297~299 참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비상사태법 반대 ‘거리연극’에 대해서는 Walter Gödden, *1968: Pop, Protest und Provokation in 68 Stichpunkten. Ein Materialienbuch* (Bielefeld, 2017), pp.419~438 참조.

항의 마당에 이름을 올린 도시는 30개나 되었다.¹²⁰⁾ 총 수십만 명이 비상사태법에 맞서 50개 넘는 도시에서 반기를 든 ‘분노의 5월’은 “APO의 절정”(Apogee of the APO)으로 각인되었다.¹²¹⁾

그럼에도, 5월 30일 연방의회는 수많은 비판과 반대를 물리치고 끝내 비상사태법을 통과시킨다.¹²²⁾ 그러자 APO가 이끈 의회 외부 저항의 실패를 말하는 목소리도 울렸다. 물론 APO가 법안 저지라는 “원하는 결과를 낳는 데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¹²³⁾ 하지만 적잖은 법 조항이 APO 진영의 격렬한 반대와 저항에 힘입어 온건한 형태로 수정되었다. 가령 비상시에도 노동자들의 최후의 투쟁 무기인 파업권이 보장되었으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근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국민 저항권’이 기본법에 새로 추가되었다.¹²⁴⁾ 이런 결과 자체가 APO의 ‘부분적 성공’¹²⁵⁾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 법률을 둘러싼 수년간의 갈등 속에 대립과 대결뿐 아니라 비판과 압력을 통한 소통과 변화의 과정도 포함된 결과였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가 슈나이더는 비상사태법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을 ‘서독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졸업시험’이라고 평가한다.¹²⁶⁾ 그래서 APO가 수행한 치열하고 격렬한 비상사태법 반대투쟁은 ‘일정한 성공’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오랜 논의와 논쟁, 대화와 타협, 그리고 무엇보다 ‘의회 외부’에서의 지속적인 비판과 저항의 과정을 거치며 내용이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대처방법이 일일이 규정되는 등 독일 비상사태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징적 유형으로 주조되었다. 나아가 어떤 비상사태의 발생에서도 의회민주주의의 권력분립 원칙을 관철해, 연방의회가 비상사태의 선포와 종언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고, “기본권의 제약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¹²⁷⁾

노조가 계속 우려했던, 파업 노동자에 맞서는 병력투입은 최종 통과된 법안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노조도, 노조의 목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운 시민당도 만족하게 되었

120) Kraushaar, *68er-Bewegung International*, p.305; Becker and Schröder eds., *Studentenproteste*, p.196~200.

121) Brown, *West Germany and the Global Sixties*, p.238f. 5월 동안 베를린에서 벌어진 시위와 집회 등에 대해서는 사료집 Siegwald Lönnendonker and Tilman Fichter, eds., *Freie Universität Berlin 1948-1973. Hochschule im Umbruch. Teil V: Gewalt und Gegengewalt (1967-1969)* (Berlin, 1983), pp.91~99, 307~314 참조.

122) Kraushaar, *Achtundsechzig*, p.163.

123) Timothy Scott Brown, “1968 in West Germany: the anti-authoritarian revolt”, *The Sixties: A Journal of History, Politics and Culture*, 2014, Vol. 7, No. 2, pp.99~116 가운데 p.101.

124) Krüger, “Notstandsgesetze”, p.336f. Karrin Hanshew, *Terror and Democracy in West Germany* (New York, 2014), pp.65~67도 참조.

125) Kraushaar, *Achtundsechzig*, p.174.

126) Schneider, *Demokratie in Gefahr?*, p.280; Kleßmann, *Zwei Staaten*, p.250.

127) 김용일, 「국가긴급권으로서의 계엄에 관한 비교학적 연구」, (동국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38쪽.

다. 비록, “노동조건과 경제적 조건의 유지와 촉진”을 위한 투쟁으로서는 용인되고 정치투쟁 형태로서의 파업은 배제되었지만, 결정적인 대목은 기본법 수준에서 파업이 인정되었다는 점이다.¹²⁸⁾ 이는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할 만하다. 기본권으로 성립되지 않는 정치적 파업의 문제는 일반적인 저항권의 허용을 통해 해결되었다. 기본법 20조의 4항에 새로 신설된 ‘민주적인 저항권’은 모든 독일인에게 자유롭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설 권리를 보장했다.¹²⁹⁾ 하지만 ‘저항권’은 “권위주의적인 채찍”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보너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¹³⁰⁾ 게다가 연방정부가 내적인 비상사태의 해소를 위해 투입한 병력과 경찰이 헌정 질서에 맞서게 될 경우, 저항권이 소용없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¹³¹⁾ 최고 심급인 전체 국민에 대한 국가 권력의 종속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하튼 슈나이더는 시민 저항권과 노동자(파업)투쟁권(9조 3항)의 확보를 의회 외부적인 저항과 내부에서의 압력이 낳은 ‘중요한 성과’라고 보았다.¹³²⁾ 사실,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 내무부 초안에 견주면 1968년 5월에 통과된 법은 ‘국가 권위주의적인 사고의 패배’로 볼 만하다. 법안 통과 당시 국방장관이자 좌초된 ‘슈뢰더-초안’(1960)의 주인공인 슈뢰더의 투표 기권과 불만에서도 잘 드러난다. 비상시 노동자 투쟁권의 보장 및 기본법 침해의 최소화 등은 그가 보기에 의회 외부적인 저항과 내부의 비판이 관철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최종 법안을 통해 서독은 “전통적으로 견지된 행정부의 비상사태 권한과의 최종적인 결별”을 완성했던 것이다.¹³³⁾ 또한 기민당 의원 막스 슐체포어베르크(Max Schulze-Vorberg)가 법안이 “너무 약하다”¹³⁴⁾고 기민기사련 의원 가운데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의회의 통제 하에 놓였지만 연방군의 국내 투입이 여전히 가능했다(87a 조항). 또한 비상사태와 관련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유지 되었지만 (“비상사태의 의회화”) 비판점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다. 즉 외적인 비상사태의 경우에만 의회적 통제가 가능했고 내적인 비상사태에는 행정부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대신, 행정부 대리 기능을 할 수도 있는 연방상원(Bundesrat)만 비상사태 통제기관으로 적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본법 91조에 따르면 내적인 비상사태의 경우는 여전히 “행정부의 시간”이다. 국내적 소요의 경우 연방이 언제부터 개입이 필요할지는 오직 “연방정부의 헌법적인 재량권” 속에 놓여 있었고, 지금도 놓여있기 때문

128) Diebel, »Stunde der Exekutive«, p.184f.

129) Ibid., p.185.

130) Ibid.; Düx, *Überblick*, p.537.

131) Otto E. Kempfen, “Notstandverfassung und Widerstandsrecht”, in: *Blätter für internationale und deutsche Politik* 13(1968), pp.579~588 참조.

132) Schneider, *Demokratie in Gefahr?*, p.266f.

133) Diebel, »Stunde der Exekutive«, p.188. 최종적으로 확정된 법안 전문은 <http://www.documentarchiv.de/brd/1968/grundgesetz-notstandsgesetze.html> 참조.

134) Kraushaar, 1968, p.171.

이다.¹³⁵⁾ 그런 측면에서 오버로이터가 “비상사태 정부의 의회화”로 인해 비상사태법에 “더 이상 행정부의 시간은 없다”¹³⁶⁾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여하튼 디벨이 말하듯, 변화를 거듭하며 1968년 통과된 법안은 ‘완전한 행정부의 시간’을 탈피해 “독일 비상사태법의 전통과 결별했다.” 비상시에도 의회의 기능이 작동하고, 기본권 제한도 최소한으로 축소된 이유는 “격렬한 공적인 토론과 논쟁” 및 저항이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탓이었다. 디벨은 이 영향력이 “노동조합 같은 강력한 민주적 반대세력과 사민당의 정치력”에서 나오고, “전통에 사로잡혀 국가주의를 신봉하던 내무부가 결국 패배한 것”이라고 평가한다.¹³⁷⁾ 물론, 노동조합과 사민당의 정치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반대세력’의 중심이 노동조합에만 머물지 않는다. 노조의 반대가 사민당을 움직였지만, 상당부분의 노조 조직도 포함한 APO의 위력적인 시위와 저항을 빼고 ‘비상사태법 반대세력’의 무게를 말하기 어렵다. 수도 본으로의 집결행진에서 독일노총(DGB)이 APO와 다른 행보를 보이지만,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적잖은 개별 노조는 APO의 일부였던 탓이다. 그 결과 사민당과 노조 스스로도 전체로서 APO 진영의 압력을 받았고, 총체로서 APO의 비판이 핵심인 것이다.

결국, 그 법안에 맞선 APO의 ‘히스테리’(크라우스하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당한 일인바, APO의 저항이 중심축으로 작용한 “사회정치적인 ‘과도한 긴장’”¹³⁸⁾과 그로 인한 여론의 관심과 견제를 통해 비상사태법의 내포와 외연을 민주적인 테두리로 가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민주적인 울타리’는 결국 의회 외부적인 비판과 저항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5. 맺음말 - 의미와 전망

여타 국가들의 비상사태법의 존재와 형태를 감안하면 독일의 법은 입법부와 헌법재

135) Diebel, »Stunde der Exekutive«, p.191f; <http://www.documentarchiv.de/brd/1968/grundgesetz-notstandsgesetze.html>

136) Oberreuter, *Notstand und Demokratie*, p.282.

137) Diebel, »Stunde der Exekutive«, p.194. 물론, 디벨도 법안을 준비한 내무부의 변화에는 사회 조건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1950년대 말부터 사민당과 노조가 이루어낸 ‘비판적 여론’이 중요했지만, 이후 상당수 노조가 포함된 APO의 압력행사를 통해 내무부 내에서 “반의회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이며 관헌국가적인 잔재에, 자유주의적이고 합법적인 민주주의의 안정성으로 맞서는” 흐름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적인 배움의 과정은 ‘자율주행적인 것’이 아니었다. “노조의 저항과 대학생 및 지식인의 항의”와 비판이 중요했는데, 이런 압력이 없었다면 “비상사태법은 다른 형태를 띠었을 것”이었다. Ibid., p.198.

138) Ibid. 디벨이 보기에 사회정치적인 비상사태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한편으로 “역사적인 행운”이자, 그것을 실행하려면 뛰어넘었어야 할 “높은 합법국가적인-민주적인 울타리의 결과”이다. Ibid., p.199.

판소의 권한을 유지하고 ‘행정부나 국가수반의 독재’를 제어하는 형태였다. 그런 대목에서 비상사태법 반대 진영의 두려움과 걱정은 ‘유령이자 히스테리’는 아닐지라도 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반대측의 준거는 무엇보다 역사적인 것이었다. 히틀러와 나치 독재의 참혹이 불과 2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사태법을 제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사실 우려할 만한 것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저항과 우려의 결과 법안은 ‘입법부의 위상’을 승인하고 유지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또한 초창기 ‘국가 권위주의적 도그마’의 고수에서 반대 세력과의 ‘대화 및 소통’으로 이행했다. 물론 이 이행은 내무부 자체의 자발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반대와 압력 및 저항을 통한 일종의 “강제된 적응”¹³⁹⁾의 문제였다. 즉 법안 준비 주체인 내무부의 장관 및 담당자들은 ‘시대의 변화’, 즉 의회 외부의 거대한 압력과 저항이라는 흐름 속에서 적응을 강제 받았고, 그 결과가 누차 ‘수정된 법안’이었던 것이다. 이는 6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비상사태법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APO의 ‘거대한 전투’와 어우러져 내무부 및 대연정의 후퇴와 수용 및 변화로 귀결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적 관점에서 법안 통과는 패배라기보다, 68운동 전체의 핵심 추동력으로 작용한 ‘위대한 거부’¹⁴⁰⁾였다. 물론 법률안 통과와 더불어 그 캠페인의 조직적 저항의 중심은 와해되었지만, 솔한 항의와 저항은 결국 양보와 후퇴를 이끌어내며 법률안 자체의 수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비상사태법 반대캠페인은 결국 68운동 전체를 추동하는 ‘저항의 전동축’으로 기능했다.

결국, 역사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하고자 하는 ‘거리의 저항’이 ‘행정부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반대진영의 두려움은 ‘유령도 히스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의 무게에서 배우는 준엄한 저항이었고, 그 저항의 깃발은 ‘입법부의 시간’을 지키는 결과로 귀착되었던 것이다!

139) Ibid., p.157.

140) Herbert Marcuse, *One-Dimensional Man* (Beacon: Boston 1964)[독일어판: *Der eindimensionale Mensch* (Berlin, 1967)], 박병진 역, 『일차원적 인간』(한마음사, 2009); Jakob Tanner, “‘The Times They Are A-Changin.’ Zur subkulturellen Dynamik der 68er Bewegungen,” Ingrid Gilcher-Holtey, ed., *1968 - Vom Ereignis zum Gegenstand der Geschichtswissenschaft* (Göttingen, 1998), pp.207~223 가운데 p.209.

「독일의 비상사태법과 의회 외부 저항운동 - 나치 역사의 기억과 시대인식이 이끈 대결과 투쟁 -」 토론문

이 용 일 (대구교대)